

2001年度 農林部 政策研究課題

學會研究資料 第2輯

# 通商關聯法 國際比較研究

연구책임자 : 황 적 인

2002. 4.

농림부 도서실



0001000



# 제 출 문

##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 “通商關聯法 國際比較研究”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7월 4일

2002-6

|                   |
|-------------------|
| 농림부 자료실           |
| 등록번호: 1000        |
| 등록일: 2002년 8월 28일 |
| 기증:               |

연구책임자 : 황적인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 머 리 말

「통상관련법 국제비교연구」의 농림부 정책연구과제는 2001. 11. 1.에 결정되었다. 오늘날 통상관계법은 國際經濟法이라는 새로운 法分野에 속하고 있다. 2차대전말에 이 분야에는 갓트 등 소수의 협정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간의 상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이동으로 생기는 각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제협정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경제법은 분야가 광범위하므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4개분야(세이프가드·반덤핑·보조금 상계관세·미통상법 301조)를 추려서 가급적 평이하게 기술하였다.

이상 4개분야에 관해서는 우선 多者간 조약으로 國際協定이 체결되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각국은 먼저 성립한 國際協約에 바탕을 두고 국내법을 제정하지만 나라마다 국내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정의 이행법인 국내법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원래 연구용역의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술할 수 없었으나, 제한된 時日중 최대한 개성있는 보고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는 우선 보고서에 있는 4개 분야를 읽고, 분야별로 국내에 있는 國際經濟法개론서(崔昇煥교수·徐憲濟교수)와 비교하여 보충하여 이해하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거나 그 동안 법개정이 행하여진 것을 보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고서 끝에 기재된 「通商法律」에 있는 논문을 읽기를 바란다. 국제경제법은 법개정이 잦은 분야이다.

4개분야의 한국법의 내용은 崔昇煥교수의 동의를 얻어 출처를 표시하고 이 논문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설명서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이는 松下滿雄교수의 글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저작물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 끝으로 연구용역을 준 農林部당국과 이 논문작성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 보고서가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2. 7. 2

서울법대 명예교수실에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黃迪仁

# 목 차

|                                    |    |
|------------------------------------|----|
| 제 1 장 緊急輸入制限措置 .....               | 1  |
| 제 1 절 갓트상의 세이프가드 .....             | 1  |
| 제 2 절 갓트의 규정 .....                 | 4  |
| I. 1994년 갓트의 규정 .....              | 4  |
| II. 갓트 제19조 1 (a) .....            | 5  |
| III. 세이프가드協定 .....                 | 7  |
| 1. 調査節次 (3조) .....                 | 7  |
| 2. 세이프가드措置 (5조) .....              | 8  |
| 3. 暫定的인 세이프가드措置 (6조) .....         | 9  |
| 4. 期間 (7조) .....                   | 9  |
| 5. 重大한 損害의 認定 (4조) .....           | 10 |
| 6. 報復措置 (8조) .....                 | 11 |
| 7. 通報와 監視 .....                    | 12 |
| 8. 紛爭解決 .....                      | 15 |
| IV. 갓트 19조와 세이프가드協定과의 관계 .....     | 15 |
| V. 評價 .....                        | 17 |
| 제 3 절 미국에 있어서의 Escape Clause ..... | 19 |
| I. Escape Clause의 기본적 성격 .....     | 19 |
| II. Escape Clause의 내용 .....        | 21 |
| III. Escape Clause의 發動 節次 .....    | 25 |
| IV. 大統領의 救濟措置 .....                | 27 |
| V. 大統領의 決定에 대한 議會의 權限 .....        | 29 |
| VI. 大統領의 決定에 대한 司法審査 .....         | 30 |
| VII. Escape Clause 발동의 사례 .....    | 31 |
| VIII. 國際收支  옹호를 위한 措置 .....        | 33 |

|       |                            |    |
|-------|----------------------------|----|
| 제 4 절 | EU의 緊急輸入制限                 | 35 |
| I.    | 개 요                        | 35 |
| II.   | 調査節次                       | 36 |
| III.  | 損害判定의 基準                   | 36 |
| IV.   | 緊急輸入制限 措置                  | 37 |
| V.    | 輸入監視制度                     | 39 |
| VI.   | 司法審査                       | 39 |
| VII.  | EU 緊急輸入制限의 發動狀況            | 40 |
| VIII. | EU 加盟國에 의한 一方的 緊急輸入制限措置 發動 | 41 |
| 제 5 절 | 캐나다·호주에 있어서의 緊急輸入制限措置      | 41 |
| I.    | 캐나다에 있어서의  긴급수입제한          | 41 |
| II.   | 호주에 있어서의 緊急輸入制限            | 43 |
| 제 6 절 | 일본에 있어서의 輸入管理法規와 緊急輸入制限制度  | 44 |
| I.    | 概 觀                        | 44 |
| II.   | 緊急輸入制限                     | 45 |
| 1.    | 概 要                        | 45 |
| 2.    | 外國換 및 外國貿易法·輸入貿易管理令        | 46 |
| 3.    | 緊急關稅                       | 50 |
| 4.    | 輸入割當制度와 緊急關稅制度의 關係         | 51 |
| III.  | 輸入規制와 營業의 自由               | 52 |
| 1.    | 日本憲法 22條 1項에 정한 營業의 自由     | 52 |
| 2.    | 營業의 自由에 관한 判例原則            | 53 |
| IV.   | 輸入規制와 WTO/갓트協定             | 55 |
| 1.    | 憲法 98조 2항에 정한 條約遵守義務       | 55 |
| 2.    | 西陣(니시진) 넥타이 소송사건 판결        | 56 |
| 제 7 절 |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62 |
| I.    | 총 설                        | 62 |
| II.   |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상의 緊急輸入制限制度      | 62 |
| 1.    | 意 義                        | 63 |

|                                      |     |
|--------------------------------------|-----|
| 2. 不公正貿易行爲의 調査 .....                 | 63  |
| 3. 産業被害調査 .....                      | 64  |
| 4. 産業競爭力影響調査 .....                   | 64  |
| 5. 其他 .....                          | 65  |
| <br>                                 |     |
| 제 2 장 덤핑의 防止 .....                   | 93  |
| 제 1 절 概要 .....                       | 93  |
| 1. 덤핑이란 .....                        | 93  |
| 2. 갓트 6조 .....                       | 94  |
| 3. 덤핑은 불공정무역(不公正貿易)인가? .....         | 96  |
| 4. 덤핑에 적용되는 법규 .....                 | 99  |
| <br>                                 |     |
| 제 2 절 國際반덤핑協定 .....                  | 101 |
| I. WTO協定에 포함되는 國際반덤핑協定 .....         | 101 |
| 1. 概要 .....                          | 101 |
| 2. 國際AD協定の 構成 .....                  | 102 |
| II. 덤핑의 決定 .....                     | 102 |
| 1. 덤핑의 定義 .....                      | 102 |
| 2. 輸出國 國內市場에서 原價이하의 價格으로의 販賣 등 ..... | 103 |
| 3. 構成輸出價格 .....                      | 105 |
| 4. 價格比較 .....                        | 106 |
| III. 損害決定 .....                      | 111 |
| 1. 損害 .....                          | 111 |
| 2. 輸入數量 및 價格 .....                   | 111 |
| 3. 損害의 集積 .....                      | 112 |
| 4. 損害의 指標 .....                      | 112 |
| 5. 因果關係 .....                        | 113 |
| 6. 損害의 염려 .....                      | 114 |
| 7. 解説 .....                          | 114 |
| IV. 國內産業 .....                       | 116 |
| V. 調査節次 .....                        | 118 |
| 1. 調査 .....                          | 118 |

|  |     |
|--|-----|
| 2. 證 據 .....                             | 120 |
| 3. 解 說 .....                             | 121 |
| VI. 暫定措置 .....                           | 122 |
| VII. 價格約束 .....                          | 123 |
| VIII. AD稅의 賦課와 徵收 .....                  | 124 |
| 1. AD稅額의 最高限度 .....                      | 124 |
| 2. Duty as a Cost의 禁止 .....              | 124 |
| 3. 未調査者에의 課稅 .....                       | 125 |
| 4. 遡及效 .....                             | 125 |
| 5. AD세의 存續其間, 再審査, 價格約束 .....            | 126 |
| 6. 解 說 .....                             | 126 |
| IX. 司法審査 .....                           | 127 |
| X. 第3國을 위한 AD措置 .....                    | 128 |
| XI. 協議 및 紛爭解決 .....                      | 128 |
| XII. 迂回防止措置 .....                        | 130 |
| 1. 迂回防止措置란 .....                         | 130 |
| 2. EC 部品課稅事件 .....                       | 131 |
| 3. 던켈合意案에 있어서의 迂回防止措置 .....              | 131 |
| 4. 迂回防止措置의 國際AD協定상의 合法性 .....            | 133 |
| 제 3 절 WTO의 國際반덤핑 協定과 主要國에서의 반덤핑 法規 ..... | 135 |
| I. 主要國에서의 반덤핑 法規 .....                   | 135 |
| II. 美國의 반덤핑法 .....                       | 135 |
| 1. 價格比較 .....                            | 136 |
| 2. 損害決定 .....                            | 139 |
| 3. 調査節次 및 課稅上の 諸問題 .....                 | 140 |
| 4. 迂回防止措置 .....                          | 141 |
| 5. 1916년 반덤핑法 .....                      | 143 |
| III. EU의 반덤핑法 .....                      | 143 |
| 1. 迂回防止措置 .....                          | 143 |
| 2. 價格比較 .....                            | 145 |
| 3. 調査節次 .....                            | 146 |



|                               |     |
|-------------------------------|-----|
| 4. Duty as a Cost .....       | 147 |
| IV. 日本의 반덤핑법 .....            | 147 |
| 제 4 절 한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      | 148 |
| I. 關聯法規와 執行機關 .....           | 148 |
| II. 發動要件 .....                | 148 |
| III. 賦課節次 .....               | 149 |
| 1. 조사개시 .....                 | 149 |
| 2. 豫備調査와 本調査 .....            | 150 |
| 3. 暫定措置 .....                 | 150 |
| 4. 덤핑防止關稅의 賦課 .....           | 151 |
| 5. 價格約束과 再審査 .....            | 151 |
| 제 3 장 補助金·相計措置 .....          | 153 |
| 제 1 절 概說 .....                | 153 |
| 제 2 절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 | 154 |
| I. 補助金の 定義 .....              | 154 |
| II. 補助金の 特定性 .....            | 154 |
| III. 禁止補助金 .....              | 155 |
| IV. 相計 가능한 補助金 .....          | 155 |
| V. 相計 불가능한 補助金 .....          | 156 |
| VI. 調査節次 .....                | 156 |
| VII. 通報·協議·紛爭解決節次 .....       | 156 |
| 제 3 절 美國에 있어서의 相計關稅 .....     | 157 |
| I. 法令의 概要 .....               | 157 |
| II. 從來의 判例 .....              | 157 |
| 제 4 절 EC의 相計關稅制度 .....        | 163 |
| 제 5 절 한국에 있어서의 相計關稅制度 .....   | 164 |

|                                      |     |
|--------------------------------------|-----|
| I. 關聯法規와 執行機關 .....                  | 164 |
| II. 發動要件 .....                       | 164 |
| III. 賦課節次 .....                      | 165 |
| 제 4 장 미국 通商法 301조에 기한 一方的 措置 .....   | 167 |
| 제 1 절 미국 통상법 301조 .....              | 167 |
| I. 沿革 .....                          | 167 |
| II. 概要 .....                         | 168 |
| III. 報復대상이 되는 外國政府의 不公正慣行 .....      | 171 |
| IV. 差別的 適用 .....                     | 172 |
| V. 損害要件의 不要 .....                    | 173 |
| VI. 不當·不合理·差別的의 意義 .....             | 173 |
| VII. 調查節次 .....                      | 175 |
| VIII. 美日半導體協定과 美國의 對日制裁 .....        | 176 |
| IX. 美國政府에 의한 301조에 기한 對日制裁와 갓트 ..... | 179 |
| X. 수퍼 301조와 美日構造協議 .....             | 181 |
| XI. 美日自動車·部品協議 .....                 | 182 |
| XII. 美國通商法 301조에 관한 패널 報告書 .....     | 184 |
| 제 2 절 EU 貿易障害規則 .....                | 185 |
| 제 5 장 韓國의 對外通商法 .....                | 189 |
| I. 概觀 .....                          | 189 |
| 1. 世界貿易機構協定履行에 관한 特別法 .....          | 190 |
| 2. 對外貿易法 .....                       | 194 |
| 3. 關稅法 .....                         | 194 |
| 참고문헌 .....                           | 197 |



# 제 1 장 緊急輸入制限措置 (세이프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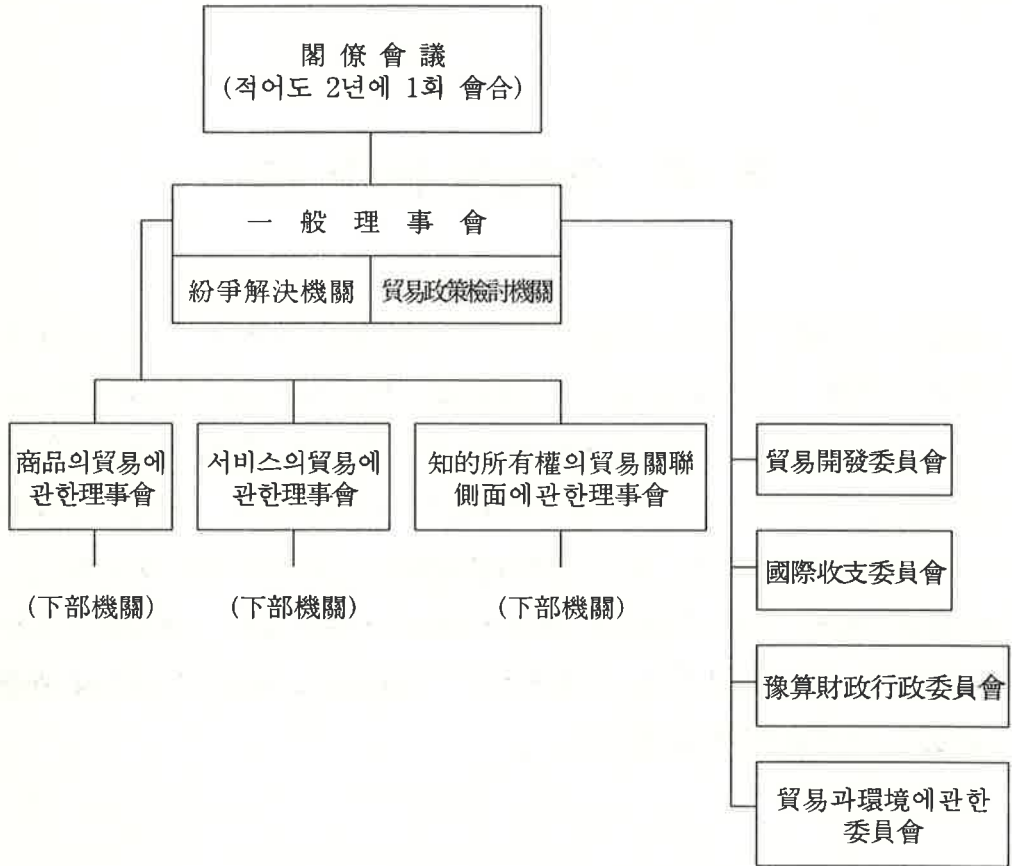
## 제 1 절 갓트상의 세이프가드

韓國은 1947년의 GATT와 1995년의 WTO協定の 양자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1947년에 성립한 GATT<sup>1)</sup>이며, 다른 하나는 1994년의 GATT인데, 이것은 종래의 GATT(1947년의 GATT) 및 「世界貿易機關을 설립하는 마라케쉬 協定」(WTO設立協定) 중의 「物品의 貿易에 관한 多角的 協定」(ANNEX 1A)에 포함되어 있는 13개 協定 중의 하나인 「1994년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1994년의 GATT)이다.

---

1) 1947년의 GATT는 1994년의 GATT에 의하여 WTO체제의 테두리내에 편입되었으나 WTO 발효후 1947년의 GATT는 경과적으로 3년간은 존속하였으나, 그 후 종료하여 소멸하였다.

# 世界貿易機關 (WTO) 機構



## WTO協定과 附屬協定の 關係

世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케쉬 協定 本文 (WTO 設立協定)

- 物品의 貿易에 관한 多角的協定 [부속서 1A]
  - 1. 1994년의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1994년의 갓트)
  - 2. 農業에 관한 協定
  - 3. 衛生植物檢疫措置의 適用에 관한 協定(SPS)
  - 4. 纖維 및 纖維製品(衣類를 포함)에 관한 協定
  - 5. 貿易의 技術的障壁에 관한 協定(TBT)
  - 6. 貿易에 關聯된 投資措置에 관한 協定(TRIM)
  - 7. 반덤핑協定
  - 8. 關稅評價에 관한 協定
  - 9. 船積前檢査에 관한 協定(PSI)
  - 10. 原產地規則에 관한 協定
  - 11. 輸入許可節次에 관한 協定
  - 12.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SCM)
  - 13.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
-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부속서 1B]
-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의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부속서 1C]
- 紛爭解決에 관한 規則 및 節次에 관한 諒解 [부속서 2]
- 貿易政策檢討制度(PTRM) [부속서 3]
- 複數國의 貿易協定 [부속서 4]
  - 民間航空機貿易에 관한 協定
  - 政府調達에 관한 協定

緊急輸入制限 (Safeguard)에 관해서는 1994년의 GATT 제19조 1(a) 및 WTO協定 중 「商品の 貿易에 관한 多角的 協定」(ANNEX 1A)의 13개 協定 중 하나인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을 미국·EU·일본·한국에서는 國內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를 차례로 서술한다.

## 제 2 절 갓트의 규정

### I. 1994년 갓트의 규정

1994년의 갓트는 원칙적으로 가맹국이 행하는 輸出入數量制限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輸入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關稅에 의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加盟國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讓許稅率 이상의 關稅를 부과하거나 또는 關稅 이외의 제한을 할 때도 있고, 갓트도 加盟國은 일정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輸入數量 제한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緊急輸入制限제도(세이프가드, 미국에서는 Escape Clause라고 한다)라고 한다.

갓트가 예외적으로 輸入제한 또는 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 7개 경우이다.

- 1) 公序物資(마약·외설문서 등)
- 2) 無體財産權侵害物品의 수입금지 (20조)
-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輸入制限 (21조)

- 4)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輸入制限 (12조 및 18조 B)
- 5)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특정산업확립을 위한 輸入制限 (18조 C, D)
- 6) 다른 나라의 의무위반에 대한 報復措置로서 WTO 분쟁처리기관 (DSB)의 허가를 받은 것
- 7) 이하 서술하는 세이프가드(19조)에 따른 緊急輸入제한을 발동하는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의 교섭의 결과 WTO가 성립했는데, 그 속에는 세이프가드 協定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加盟國은 이 세이프가드 協定을 실시하기 위하여 國內法을 개정하고 있다. 다음에 차례로 갓트·WTO상의 세이프가드 協定, 미국·EU·일본·한국의 세이프가드의 규정내용을 서술한다.

## II. 갓트 제19조 1 (a)

갓트 제19조 1(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締約國은 사정의 예견되지 않은 발전의 결과 및 自國이 이 協定에 기하여 지는 義務(關稅양허를 포함한다)의 효과로 인하여, 生産品이, 自國의 영역내에 있어서 同種의 生産品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生産品의 國內生産者에게 중대한 損害를 끼치고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증가한 數量으로 및 그러한 條件으로, 自國의 영내에 輸入된 경우에는, 그 生産品에 대하여 상기한 損害를 방지하거나 또는 救

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또는 期間내에서 그 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하거나 또는 그 讓許를 철회하거나 또는 修正할 수 있다.」

이 條文의 내용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輸入의 急增이 輸出國 또는 輸入國에 있어서 豫見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 아니면 안되고, 또한 輸入國이 갓트에 기하여 지고 있는 義務의 결과로서 輸入急增이 생겨야 한다.

2. 輸入數量이 急增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增加한 數量」이란 국내생산자의 공급에 대하여 輸入品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絶對的數量의 증가와 더불어 相對的 增加(즉 輸出品의 市場占據率의 증가)를 포함한다.

3. 輸入의 急增으로 인하여 國內産業에 대하여 「重大한 損害」(serious injury)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重大한 損害」란 反덤핑稅나 相計關稅부과의 要件인 「實質的 損害」(material injury)보다 훨씬 정도가 큰 損害이어야 한다.

4. 이러한 輸入急增으로 인하여 輸入品과 「同種의 生産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生産品」을 제조하는 國內産業에 損害가 생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 「同種의 製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製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同一제품이 아니라도 기능적으로 類似性이 있고, 고객 또는 업계에서 兩者가 代替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競爭製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갓트 19조를 원용하여 緊急輸入制限을 하는 加盟國은 輸入數量 제한을 하든가 또는 關稅를 引上(또는 關稅의 창설) 할 수가 있다. 또한 加盟國

이 이 갓트 19조를 원용하여 緊急輸入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갓트의 基本原則인 無差別平等原則에 따라야 한다.

갓트 19조를 원용하는 加盟國은 사전에 다른 加盟國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加盟國은 援用國에 대하여 代償(다른 製品에 대하여 關稅引下를 하는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 III. 세이프가드協定

이상 갓트 19조는 WTO協定 중의 하나인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이하 「協定」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 그러므로 WTO 체제하의 세이프가드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協定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교섭의 결과 타결된 것이다. 세이프가드(Agreement of Safeguards)에 관한 協定은 모두 1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調査節次 (3조)

세이프가드措置는 이미 규정되어 있고 公表되어 있는 節次에 따라 당해 輸入國의 當局이 갓트 19조에 기한 調査를 한 후에 한하여 세이프가드措置를 취할 수 있다. 調査에 있어서는 모든 이해관계 있는 當事者에 대하여 合理的인 公告를 하고, 輸入業者, 輸出業者 기타 이해관계 있는 者가 자기의 意見を 제출할 수 있는 機會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意見陳述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왜 公共의 利益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意見を 제출하는 機會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세이프가드措置 (5조)

세이프가드로서 輸入數量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입수할 수 있는 최근의 3년간의 輸入의 平均數量보다 적은 水準이하까지로 제한할 수 없다(5조 1항). 그러나 중대한 損害를 防止하거나 또는 救濟하기 위하여 다른 水準이 필요한 명백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조 1항). 세이프가드로서 輸入數量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輸入國은 輸出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輸入량을 配分하는데, 이것이 困難한 경우에는 輸出國의 과거의 代表的인 期間에 있어서 輸出實績에 따라 按分比例로 輸入량을 配分한다(5조 2항). 그러나 다음과 같이 輸入량의 特別配分(Quota modulation)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特定國으로부터의 輸入增加가 輸入增加 전체 중에서 均衡을 잃을 정도로 큰 경우에는 適用國은 종래의 輸出實績에 따라 輸入양을 할당한다는 原則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5조 2항 b). 다만 이러한 原則을 취하지 않는데 正當한 事由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原則을 취하지 않는 것이 關係當事國에 대하여 公平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관하여 세이프가드委員會와 협의하여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2항 (b)의 예를 들면, 예컨대, 美國으로 강철제품의 輸入에 있어서 과거 3년간의 代表期間 동안에 일본이 50%, 한국이 10%, 홍콩이 10%, 싱가포르가 10%, 인도가 10%, 파키스탄이 10%의 市場占據를 했다고 하고, 이 기간동안 日本으로부터 강철제품수입의 增加率이 다른 輸出國으로부터의 강철제품의 수입의 增加率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에 50 : 10 : 10 : 10 : 10 : 10 이라는 비율로 輸入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고, 일본에 대한 輸入물의 比率를 비례적으로 적



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特定國으로부터의 수입의 증가가 예외적으로 큰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것보다 보다 엄격한 量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暫定的인 세이프가드措置 (6조)

協定 제6조에 의하여 暫定措置가 인정된다. 즉 「危機的 狀況」(늦으면 國內産業에 회복할 수 없는 損害가 발생할 수 있는 狀況)이 있는 경우에는 輸入國은 暫定的으로 당해 製品의 輸入에 대하여 關稅를 引上할 수 있다. 期間은 200일 이내이고, 실시기간은 세이프가드 實施 期間에 算入된다.

### 4. 期間 (7조)

세이프가드의 期間은 원칙적으로 4년이다(7조 1항). 그러나 當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7조 2항).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의 期間은 8년을 넘을 수 없다(7조 3항). 그리고 救濟期間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救濟措置의 合計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中間시점에서 再審査를 행하고 措置의 철회 또는 완화의 進 行을 빠르게 하여야 한다(7조 4항). 또한 救濟措置의 대상이 된 製品의 輸入에 대해서는 그의 종결 후 적어도 그 救濟措置가 취해진 期間과 같은 期間이 경과할 때까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다시 발동할 수 없다. 그리고 그 不適用의 기간은 최소한 2년으로 한다(7조 5항).

## 5. 重大한 損害의 認定 (4조)

갓트 19조 및 協定에 의하여 WTO 가맹국이 세이프가드 措置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輸入의 급증으로 인하여 國內産業에 「중대한 損害」(serious injury)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重大한 損害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 (1) 重大한 損害의 인정기준

協定 4조 2항 (a)는 施行當局이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數量化가 가능한 모든 관계있는 要因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당해 製品의 수입의 增加率 및 增加量(絶對量에 있어서이든 또는 相對量에 있어서이든 지를 不問한다), 수입품의 國內市場占據率, 販賣, 生産, 生産性, 設備가동율, 利益 및 損失, 고용에 관한 水準의 변화를 평가하여 判定한다(이상 9항목이 중대한 손해의 인정기준이다).

아르헨틴 신발사건<sup>2)</sup>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으로 判定하는 경우에는 施行當局은 4조 2항 (a)에 열거한 모든 要因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要因 모두가 國內産業에 불리한 경향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컨대 國內産業의 販賣, 生産, 生産性 및 設備가동율은 내려 갔지만 利益과 雇用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施行當局은 損害로 判定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理由는 國內産業에 중대한 損害가 났는지 여부의 判定은 당해 産業이 전체로서 損害를 입고 있는지(total impairment)의 判定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위의 指標 중 어떤

2) Argentina-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Report of the Panel, 25 June 1999, WT/DS121/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AB-1999-4), 14 December 1999, WT/DS121/AB/R.

것은 損害의 징표를 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指標가 총체로서 損害의 징표를 표시하고 있으면 損害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國內産業의 뜻

「國內産業」(domestic industry)이란 會員國의 영역내에서 활동하는 同種 또는 직접적인 경합하는 製品(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의 생산자의 전체, 또는 자신들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합하는 제품의 당해 製品의 生産高의 合計가 당해 製品의 國內 總生産高의 「상당한 部分」(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生産者들을 말한다<sup>3)</sup>(4조 1항 c).

## (3) 因果關係의 존재

또한 損害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輸入急增으로 인하여 國內産業에 중대한 損害가 생겼다는 「因果關係」(causal link)의 立證을 하여야 한다(협정 4조 2항 b). 이 條文은 중대한 損害의 인정은 조사의 결과 輸入急增과 國內産業에의 중대한 損害(또는 그 우려)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損害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輸入急增 이외의 원인이 國內産業에 중대한 損害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損害를 輸入急增의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 6. 報復措置 (8조)

세이프가드措置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輸入國(가령 미국)은 輸出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세이프가드로서 취하는 措置와 같은 정도의 補償

3) 崔昇煥, 국제경제법, 2판, 법영사, 332면 참조.

(Compensation)을 輸出國(예컨대 한국)에 주도록 노력할 義務가 있다(8조 1항). 즉 세이프가드 措置를 취하거나 연장하려는 會員國은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수출국에게 讓許나 기타 의무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會員國(예컨대 미국)은 그들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보상수단”(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8조 1항).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補償的 救濟措置”(compensatory remedies)에는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나 시장접근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sup>4)</sup>

輸出國은 이 協定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報復措置(retaliatory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8조 2항). 그러나 協定 8조 3항에 의하면 輸出國이 취할 수 있는 報復措置에 제한이 있다. 즉 세이프가드가 輸入의 절대적 증가에 대응하여 취하여지고, 그 措置가 協定の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輸出國(예컨대 한국)은 輸入國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후 3년간은 報復措置를 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報復措置를 제한함으로써 輸入國은 輸出國으로부터의 報復措置를 고려하여 세이프가드의 發動을 주저함이 없이 발동할 수 있으므로 발동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 7. 通報와 監視 (崔昇煥, 국제경제법, 2001, 339-341면)

### (1) 통보와 협의

會員國은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과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 세이프

---

4) 崔昇煥, 上揭, 339면

가드조치의 적용 또는 적용 연장에 관한 결정,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자국의 법규, 관행 및 행정절차와 그 수정사항 등을 '세이프가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함)에 즉시 통보한다(제12조 1항, 4항, 6항).<sup>5)</sup> 또한 '1994년 GATT' 19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WTO 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기존의 세이프가드조치와 회색지대조치는 동 협정발효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제12조 7항). 다만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제12조 11항).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과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는 데 있어 회원국은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에 관한 증거, 관련물품과 적용조치의 정확한 기술, 계획된 조치적용일자, 예상 존속기간, 점진적 자유화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정보」(all pertinent information)를 제공하여야 하며,<sup>6)</sup> 위원회 또는 '상품무역이사회'는 세이프가드조치를

5) 1999년 '낙농제품 수입규제사건'에서 WTO 패널은 여기서 "즉시"(immediately)라는 용어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lly possible)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한국이 조사개시결정(1996. 5. 28) 이후 14일이 지난 1996년 6월 11일에 WTO에 통보한 것이나, 세이프가드조치 부과에 관한 최종결정일자(1997. 3. 1) 이후 23일이 지난 1997년 3월 24일에 WTO에 통보한 것 등은 '즉시'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12조 1항상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 Report of the Panel, WT/DS98/R, 21 June 1999, paras, 7, 134, 7, 145).

6) 특정 낙농제품(혼합분유)수입에 대한 한국당국의 세이프가드조치(수량제한조치)의 WTO협정 합치성문제로 EU가 제소한 상기 '낙농제품 수입규제사건'에서 WTO 항소기구인 한국이 통보한 '심각한 피해에 관한 증거'(evidence of

적용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2항).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회원국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국에게 관련 정보의 검토, 구제조치에 대한 의견교환,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 수준에 관한 양해 등을 위하여 '事前協議'(prior consultations)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3항). 잠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협의는 동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된다(제12조 4항).

## (2) 감 시

'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정이행과 관련한 監視體制(surveillance mechanism)를 강화하였다. 동 위원회는 본 협정의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매년 보고하여 협정개선을 권

---

serious injury)에서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a)상에 규정된 모든 피해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동협정 제12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한국은 상기 판정에 따라 2000년 5월 20일자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하였다. 우리나라는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분유와 다른 성분이 혼합된 분유(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자,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에 입각하여 1997년 3월 7일부터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4년간(1997. 3 ~ 2001. 2) 시행하기로 하고, 1997년에 혼합분유 수입쿼터 20,251톤을 배정, 이후 매년 5.7%씩 증량시켜 왔다.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김영준, "한국의 수입 혼합분유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검토," 「통상법률」 (통권 제31호, 2000. 2), pp. 121 ~ 139 ; Yong-Shik Lee, "Review of the First WTO Panel Case on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33 *Journal of World Trade* 69 (December 1999).

고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있어 본 협정의 절차적 요건의 준수여부를 판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국들간의 협의를 지원하고, 기존의 세이프가드조치와 회색지대조치의 검토와 그 단계적 폐지를 감시하고 이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며,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가 실질적으로 동등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하며, 본 협정에 따른 모든 통보를 접수 검토하여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하며 '상품무역이사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제13조 1항). 또한 위원회의 감시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WTO 사무국은 통보와 기타 관련정보를 기초로 본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매년 작성한다(제13조 2항).

## 8. 紛爭解決

'세이프가드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회원국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1994년 GATT' 22조와 23조가 통일적으로 적용된다(제14조).

## IV. 갓트 19조와 세이프가드協定과의 관계

1994년의 갓트 19조와 세이프가드協定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만일 兩者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세이프가드協定 1조는, 이協定은 1994년의 갓트 19조에 규정된 세이프가드措置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면 兩協定은 一体로 봐야 할 것이며, WTO 체제에서는 兩者간에 저촉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갓트 19조의 규정과 세이프가드協定 중의 어느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1994년의 갓트 19조에 따라 세이프가드措置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발동한 국가는 「예견하지 못한 발전의 결과」(및 통상양허의 결과) 수입이 급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協定에는 이러한 말이 없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발전의 결과 EU로부터酪農제품(우유)의 수입이 급증한 것을 입증함이 없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경우에 EU는 한국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에 있어서 갓트 19조에 규정된 要件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WTO에 제소한 경우에 패널(1심) 및 上級委員會는 1994년의 갓트와 세이프가드協定을 일체로 보아야 하고, 세이프가드발동에 있어서는 兩協定의 要件을 갖추어야 하므로 한국(발동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때에도 「豫見하지 못한 발전의 결과」 수입이 급증한 것을 立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7)</sup>

갓트 제19조에 규정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요건은 가맹국은

- (1) 예견하지 않은 발전의 결과 및 통상양허의 결과
- (2) 수입품의 급격한 증가가 있고
- (3) 국내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고
- (4) (2)와 (3)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견하지 않은 발전」의 의미에 관해서는 판례는 적다.<sup>8)</sup> 「예견하지

7) WT/DSD98/R, 21 June 1999; WT/DS98/AB/R, 14 December 1999. 또한 崔昇煥, 上掲, 330면, 註 46) 참조.

8) 미국 모자 사건



않은 발전」이란 통상양허의 시점에서 예견하지 않은 발전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통상양허 이후 수년 후에 생긴 발전의 대부분은 양허시점에서는 예견하지 않은 발전이다. 그러므로 이 요건은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되지 않는다.

## V. 評價(崔昇煥, 341-2면)

세이프가드제도가 대부분 선진수입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동 제도의 발동요건 및 절차 등이 강화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립한다는 GATT의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일이다. 특히 GATT의 자유무역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왔던 회색지대조치를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의한 회색지대조치의 주요 대상국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그러나 選別的인 數量制限을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로서 허용함으로써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UR협상의 타결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시장점유율이 3% 이하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발동금지로 빈번한 산업피해가 예상되나, 세이프가드제도의 發動要

---

Report of the Intersessional Working Party on the Complaint of Czechoslovakia Concerning the Withdrawal by the United States of a Concession under the Terms of Article XIX, GATT/CP/106, 27 March 1951.

件 및 節次가 강화된 만큼 적절한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세이프가드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상의 관련조항(산업피해구제제도, 조정관세조항 등)을 ‘세이프가드협정’과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관련 국내법의 정비시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따른 통상분쟁가능성을 감안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용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지대조치의 철폐시에는 동 협정상의 절차규정을 준수하고 철폐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산업피해 조사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이프가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고,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에 속해 있는 무역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격상하여 수량제한과 같은 수입제한조치와 조정관세부과를 결정하는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과 주요 국가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국내기업들에게 홍보·교육하여 타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비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세이프가드조치의 限時性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입안·실시하도록 한다.

## 제 3 절 미국에 있어서의 Escape Clause

### I. Escape Clause의 기본적 성격

1994년 말에 성립한 미국에 있어서의 WTO협정실시법에 의하여 미국의 통상법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면에서는 중요한 개정은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WTO협정의 일환으로 성립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자체가 다음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Escape Clause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자국법에 큰 변경을 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보다는 도리어 「Escape Clause」라는 표현용어 쪽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9)</sup> Escape Clause는 1942년에 최초로 미국과 멕시코 국가간 통상협정에서 채택된 것이고, 그 후 1951년의 「호혜통상협정연장법(互惠通商協定延長法)」, 그리고 1962년 「통상확대법(通商擴大法)」 301조, 351조 및 352조에서 규정되었으며, 이어서 1974년 「통상법(通商法)」 201조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현행법은 1974년 통상법 201조(1984년 및 1988년의 법률에 의한 수정)이다.<sup>10)</sup>

---

9) “Escape”란 갓트가 정하는 자유화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미국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관해서는 많은 해설서가 있다.

Overview of Current Provisions of U.S. Trade Law, Subcommittee on Trade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98th Cong., 2d Sess., December 4, 1984, p. 62 et seq. ; Trade Reform Act of 1974,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e, United States Senate, 93d Cong., 2d Sess., November 26, 1974 (이 報告書는, 1974년 法の 制定에 있어서 各 條項에 관한 美國議會의 立法意圖를 표시하는 것으로

Escape Clause는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이 Escape Clause는 「불공정무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공정무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출국 또는 수출국 기업은 공정한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데,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쇠퇴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구제조치를 인정하려는 것이다.<sup>11)</sup> 수입의 급증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압박을 받는 경우에 수입제한을 하는 대신에 「조정원조(調整援助)」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원조란 수입급증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원조 또는 노동자의 재고용을 위한 재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당해 국내산업의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며, 또는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수입제한 등과 비교하면 자유무역적인 것이지만 수입급증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새로운 산업전환의 전망도 없고, 노동자의 재고용도 여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 미국 예의 경우에 조정원조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고, 미국 내 산업으로서 이 조정원조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리어 Escape Clause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연히 경쟁력이 쇠퇴한 미국 내 산업을 수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국민경제적으로 손실이 많다. 그래서 미국은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包括貿易·競爭力法)<sup>12)</sup>에 의하여 개정작업이 행하여지고, 대

---

서 대단히 중요하다.)

11) 1974년 通商法の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1973年 通商法案에 있어서는, 第2部가 Escape Clause의 規定이고, 이 第2部 제목은 「公正競争에 의한 市場攪亂에 대한 救濟措置」(Relief From Disruption Caused By Fair Competition)라는 제목이었다.

통령은 수입에 대한 구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미국산업의 「적극적 조정」(positive adjustment)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인정한 것이다. 환언하면 이 개정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미국 내 산업이 수입상품과의 경쟁에 대하여 적극적 조정을 행하는 것을 돕고, 이를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적 비용보다도 사회적 이익이 더 큰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적극적 조정에는 미국 내 산업이,

- ① 합리화 등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게 하며,
  - ② 경영자원을 다른 분야에 전환하게 하는(사업전환) 것.
- 등을 포함한다.

이 Escape Clause는 불공정무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불공정행위의 입증은 필요치 않고 오히려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입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손해에 대하여서는 「중대한 손해」가 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II. Escape Clause의 내용

우선 이것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이것이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으로 되어 미국 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고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실질적 원인」이란 수입급증이 다른 원인을 모두 충족한 것보다는 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입급증이 다른 원인의 각각의 것

---

12) 이 法律은 「1988년 包括貿易·競爭力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이고, 1988년 8월 23일 레건 대통령의 署名에 의하여 發效된 것이다.

과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그 각각의 원인보다는 보다 적지는 않다는 의미이다.<sup>13)</sup>

수입급증에는 이른바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 증가도 포함된다. 즉 수입품의 수입수량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국내생산자의 공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증가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또한 수입급증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수입급증에 의하여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의 「국내산업」(a domestic industry)이란 「수입품과 동족품목 또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산업」(producing an article like or directly competing with the imported article)을 말한다.<sup>14)</sup>

수입급증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 Escape Clause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손해」에 관한 인정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의 생산시설의 유희화, 이익의 상실, 대량실업의 발생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손해의 염려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에서의 판매액의 하락, 재고의 증가 및 생산고, 이익, 임금 그리고 고용의 저하 등이 그 기준이 된다.

1984년 통상관세법(通商關稅法)<sup>15)</sup>에 의하여 이 Escape Clause의 규정에

13) 「實質的原因」이란 「重要하고 다른 어떠한 要因보다도 작지 않은」(a cause which is important and not less than any other cause) 것이라고 定義한다 (Trade Reform Act of 1974, supra, 註20), p. 120.

14) Trade Reform Act of 1974, 註 20은 「同種」(like)의 상품과 「직접 경쟁하는」(directly competing) 상품과를 구별하고, 전자는 동종동질의 상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약간 다른 상품이지만, 동일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pp. 121-122).

약간의 수정이 가하여졌다.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통상법 201조에 의하여 수입급증이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되어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경우 국내관련산업의 ①매상액의 감소 ②재고의 증가 ③생산, 이윤, 임금 또는 고용저하경향(또는 과소고용의 증대)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래에는 이 가운데 「재고의 증가」에 관해서는 수입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1984년 통상관세법 249조에 의하여 1974년 통상법 201조 (b)(2)(B)의 일부가 개정되어, 「재고」라는 경우에 수입재고에 더하여 「국내 생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각 재고」가 포함되게 확대되었다.

다음 1984년 통상관세법 249조에 의하여 1974년 통상법 201조 (b)(2)에 새로이 (D)가 추가되었다.

1974년 통상법 201조 (b)(2)에 있어서는 수입급증이 실질적인 원인으로 되어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 국내산업의 생산, 이윤, 고용 및 수입증가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개정에 의하여 어떤 경제적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손해의 부정적 요인, 즉 손해가 없다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다는 부정적 판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긍정적 요인, 즉 손해가 있다는 요인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84년 통상관세법 249조에 의하여 1974년 통상법 201조 (b)에 (7)을 추가하였다. 동 201조 (b)에 의하면,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발생의 존부(存否)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생산시설의 현저한 유희화」를 고

---

15) 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Public Law 98-573(Oct. 30, 1984).

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에 의하여 「생산시설의 현저한 유희화」에는 「공장의 폐쇄」 및 「저가동율」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것은 1984년 7월에 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을 내린 신발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sup>16)</sup>, 동 위원회는 미국 신발업계에 있어서는 공장의 폐쇄나 가동을 저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시설의 현저한 유희화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입법에 의하여 반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包括貿易·競爭力法)은 손해판정기준에 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즉, 중대한 손해판정기준으로서,

- ① 국내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시설의 유희화,
- ② 국내산업의 상당비율을 점하는 기업이 합리화이익을 올리면서 조업할 수 없는 것,
- ③ 실업의 존재 .

등을 들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종래의 규정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 개정법에 있어서는 손해판정에 있어서 위원회는 경기순환의 과정에 있어서 당해 산업의 상황을 검토하여, 수입이외의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의 경기후퇴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수요감퇴의 여러 원인을 하나로 종합하여, 이것을 중대한 손해의 한 원인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Escape Clause의 발동에 있어서는 수입급증이 국내산업에의 중대한 손해의 「실질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 이의 「실질적 원인」이란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보다 적지 않는 요인」으로 되어 있다. 그

---

16) Nonrubber Footwear, Inv. No. TA-201-50 (1984)



러나 경기의 후퇴에 수반하는 여러 원인을 하나로 통합할 때 큰 요인으로 되고, 이것과 수입급증을 비교하면 수입급증이 「보다 적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경기후퇴에 수반하는 여러 요인을 각각 하나씩의 요인으로서 수입급증이라는 요인과 비교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에서는 「중대한 손해의 염려」의 판단 기준으로서,

- ① 판매 또는 점유율의 감소, 고수준의 재고 또는 재고의 증가, 생산·이익·임금·고용의 저하,
- ② 공장 또는 설비의 근대화를 위한 자본·연구개발용 자금조달의 불가능,
- ③ 수출국에 의한 제3국에의 제품의 수출억제에 의하여 이 제품이 미국에 전환수입되는 정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③의 요인이 주목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EU,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과 수출자주규제의 협정을 맺어서 이들 나라들에 대한 수출억제를 행한 결과, 이들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일본제품이 미국시장에 전환되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이 미국산업에의 손해에 대한 「염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상법 201조 이하에 의한 Escape Clause에 관하여서는 중대한 손해 판단이 점차로 용이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III. Escape Clause의 發動 節次

Escape Clause의 조사는,

- ① 이해관계자(국내산업 또는 노동조합)의 신청,
- ② 정부기관(미국대통령, 상원재정위원회, 하원세입위원회 또는 미국통상대표)의 조치청구, 또는
- ③ 국제무역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등에 의하여 개시된다.

이 모든 신청은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개시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사개시청구가 있으면 조사가 개시된다.

조사개시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으로부터 중대한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정까지의 조사기간은 120일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중간 경에 공청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50일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조사기간은 180일로 되어 있었으나 1988년 개정에 의하여 120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1988년의 개정에 의하여 Escape Clause의 발동에 있어서 잠정적인 조치가 인정되게 되었다. 즉, 미국산업 등의 신청인은 「위기적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위기적 상황이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 어떤 잠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의 공개투표에 의한다. 표가 동수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그들 각각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대통령은 그 어느 것을 채용할 수도 있다. 손해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

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취할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권고를 구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권고에는 ①관세인상, ②관세할당, 또는 ③수입수량제한의 3가지가 포함된다.

관세인상은 대상상품의 현행 관세에 부가하여 당해상품의 가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상품에 대한 현행의 관세율이 5%라고 한다면 최고의 세율은 55%가 될 수 있다. 수입수량제한은 수입량을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수량보다도 보다 적은 수준에까지 인하시키는 안되고, 적어도 현상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상 3개의 조치권고는 그 가운데 그 어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를 결합하여 할 수도 있다.

#### IV. 大統領의 救濟措置

국제무역위원회의 권한은 수입규제의 권고를 대통령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치며, 수입규제를 하는가 여부의 결정은 대통령이 행한다. 즉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가 수입규제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조치의 권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대통령은 권고 후 60일 이내에 규제조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의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규제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규제를 거부하거나 또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와는 상이한 조치의 규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가 관세인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관세인상을 행하지 않고, 수출국정부와 수출자주규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1977년 칼라 텔레비전<sup>17)</sup> 사

건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외국제 텔레비전의 수입에 의하여 미국 텔레비전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특별관세 20% 부과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카터 대통령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정부와 수출자주규제의 교섭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둘째는,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구제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통령은 그에 대한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국제무역위원회에 다시 반려하는 경우이다.

대통령은 이상의 조치 중 그 어느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상의 조치 중에 우열관계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치의 결정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이익 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 구제조치의 기간은 최장 8년이며, 구제기간이 8년 이하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구제기간의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기간은 당초의 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하며 전체로서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3년보다도 긴 구제기간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3년째 이후에는 경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Escape Clause는 갓트 19조를 미국의 국내에서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차별 평등의 원칙에 입각되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어느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래의 예에서는 수출자주규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국과 전체 수출국가간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차별평등주의가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17) Television Receivers, Color and Monochrome, Assembled or Not Assembled, Finished or Not Finished, and Subassemblies Thereof, Inv. No. TA-201-19 (1977).

## V. 大統領의 決定에 대한 議會의 權限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권고를 거부하며 전연 구제를 하지 않든가 또는 권고와는 다른 구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여 모든 구제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권고와는 다른 구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결정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의회는 90일 이내에 상·하 양원의 출석투표의원의 과반수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는 동시 결의(concurring resolution)를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이른바 의회의 거부권(legislative veto)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1983년에 미국 최고재판소가 이민법 관련 사건에 있어서 의회가 입법으로 일정한 결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행정부의 결정을 다시 의회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었던 이민법의 규정을 위헌무효<sup>18)</sup>로 하였다. 이 판결의 결과, 통상법 201조에 있어서의 의회의 거부권 조항도 또한 위헌의 의문을 갖게 되었다.

1984년 통상관세법(通商關稅法)에 의하여 이 점에 대한 개정이 행하여졌다. 즉, 이 개정에 의하여 의회는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와는 다른 조치를 결정하거나 또는 구제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동결의」(joint resolution)의 채택에 의하여,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의회의 상원·하원공동결의는 법률안과 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

18)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Office v. Chadha, 462 U.S.919 (1983).

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발동에 대하여 다시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하등 위헌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 VI. 大統領의 決定에 對한 司法審査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의 급증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규제 등의 수입구제조치(輸入救濟措置)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즉, 미국 헌법에 있어서는 관세의 부과나 수입제한의 실시 등 국제통상에 대한 규제권한은 본래적으로는 연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다.<sup>19)</sup>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없는데도 관세를 부과하며 또는 수입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권한이탈행위로서 제소대상이 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며 또는 이것과 다른 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한이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책적 결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는 사법심사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다.

---

19) 美國憲法 1條 8節(3)

## VII. Escape Clause 발동의 사례

1974년 통상법 제정 이후 Escape Clause의 사례는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 1986년 말까지 65건의 조사안건이 있었으며, 일본제품과 관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33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 ① 특수강의 사례(1975년)<sup>20)</sup>
  - ② 지퍼 사례(1975년)
  - ③ 칼라 텔레비전의 사례(1977년)(주 17) 참조)
  - ④ 자동차의 사례(1980년)<sup>21)</sup>
  - ⑤ 특수강의 사례(1983년)<sup>22)</sup>
  - ⑥ 대형 이륜차의 사례(1983년)<sup>23)</sup>
  - ⑦ 보통강의 사례(1984년)<sup>24)</sup>
  - ⑧ 단조품(鍛造品)의 사례(1986년)
-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GATT 1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 Stainless & Alloy Tool Steel, Inv. No. TA-201-5 (1976).

21) 美日自動車協定の 詳細는, deKieffer, Antitrust and the Japanese Auto Quota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 No. 1 (1982), pp. 59-75 ;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No.47(1982) pp. 47-81.

22) Motor Vehicles and Certain Chassis and Bodies Thereof, Inv. No. TA-201-44 (1983).

23) Heavyweight Motorcycles, and Engines and Power Train Subassemblies Thereof, Inv. No. TA-201-47 (1983)

24) Carbon and Certain Alloy Steel Products, Inv. No. TA-201-51 (1984).

고 생각되는 대형 이륜차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2년 미국 대형 이륜차의 제조회사 하레·데이빗슨(HD)사가 외국제 대형 이륜차의 수입이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 미국 내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서 통상법 201조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다. 동 위원회는 1983년에 70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에 대하여서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반면에, 대형 이륜차용 엔진 및 파워트레인은 손해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5년간에 걸쳐서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구제조치를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관세할당제(關稅割當制)이었으며, 서독제품에 대하여서는 5,000대까지, 일본제품에 대하여서는 6,000대까지, 기타에 대하여서는 4,000대까지 저율관세를 부과하며,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수입에 대하여서는 초년도 45%의 추가관세(이하 점감세율이 정하여지고 있는)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이 조치가 GATT 규약상 문제가 있다 하여 협의를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 ① 수입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 ② 사전통지 및 사전협의를 행하여지지 않았다.
- ③ 45%의 추가관세는 과잉이다.
- ④ 조치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너무 장기적이다.
- ⑤ 관세할당제에 따른 배분은 실질적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차별적 제한으로 되어 있다.

는 것 등이다.

특히 이 중 중요한 것은 ⑤의 논점이다. 즉, 미국정부가 취한 이상의 조



치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수입국의 제품에 대하여 할당을 행하는 것이어서, 무차별 평등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이므로, 이 관세할당제는 실질적으로는 일본 제품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 후 HD사의 업적은 회복되고 국내제품의 출하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 VIII. 國際收支 翁호를 위한 措置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수출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에 대하여 부과금을 과하며, 또는 수입의 수량제한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이 조치는 본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 또는 Escape Clause와는 다른 근거에 입각하여 과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Escape Clause는 국내 특정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국제수지의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조치는 오히려 특정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 수입제품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있는 것이며,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전 수입품목에 대하여 과하여져야 할 것이다.

GATT 12조는 「... 惝약국은 자국의 대외자금 상황 및 국제수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조의 다음 여러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수입을 허가하는 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2항 이하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惝약국은 국제수지의 곤란에 직면한 경우에는 수입수량제한을 과할 수 있으나, 그 운용상 수입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수지

의 곤란이란 「국제수지의 기초적 불균형」을 말한다.

이 조치는 긴급수입제한 또는 Escape Clause와는 그의 목적 등에 있어서 상이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 관세 또는 수량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긴급수입제한과 일맥상통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1974년 통상법 122조에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71년에 미국정부는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전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종가세(從價稅)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의 법적근거는 대적통상법(對敵通商法)<sup>25)</sup>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의 법적근거에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YKK사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하여 미국관세법원에 제소하고, 관세법원은 미국정부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세특허항소법원은, 이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sup>26)</sup>. 그러나 긴급사태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과징금을 과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74년 통상법 제정당시에 122조를 규정하고 정부는 국제수지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최고 1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다.

---

25) Public Law 65-91, approved October 6, 1916 ch. 106, 40 Stat. 411, 50 App. U.S.C. 1-44.

26) United States v. Yoshida International, Inc. 526 F. 2d 560 (C.C.P.A. 1975).

## 제 4 절 EU의 緊急輸入制限措置

### 1. 개요

EU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은 로마조약이지만, 이의 113조에 의하면, EU 완성 후에 있어서는,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정책은 각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로서 통일적 「공통상업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에 기하여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규제에 관한 긴급수입제한도 또한 이 정책에 기하여 EU 전체로서 일원화되어 있다.

긴급수입제한에 관하여서는 EU의 규칙에 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긴급수입제한규칙은 GATT 가맹국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제3국으로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다음의 것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즉, ① 다각적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의 대상이 되는 섬유제품,  
② 국가무역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  
③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및  
④ 쿠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규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정하여져 있다. 그 첫째는 수입감시제도(輸入監視制度, surveillance measure)이며, 둘째로는 방어조치(防禦措置, protective measure)이다. 이 중 방어조치는 EU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제안에 기한 이사회결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GATT 19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II. 調査節次

EU에 있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가맹국의 신청에 의한 조사개시이다. 둘째는, 위원회에 의한 직권 조사개시인데, 위원회가 종래 이 권한을 행사하여 조사개시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EU산업은 EU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가 없고, 우선 가맹국정부에 신청하고, 가맹국정부가 조치청구를 하는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가맹국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것과 협의를 행한다. 그 결과 조사개시에 족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조사개시가 행하여진 취지를 EU 관보에 게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대하여서는 비밀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서는 그 자체는 비밀이 아닌 보고서 요약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III. 損害判定의 基準

이 규칙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으로서의 EU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수입 수량 및 수입품 가격이며, 특히 수입품 가격이 EU산업이 공급하는 제품가격을 하회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을 재고·판매하고 있는 EU산업에 대한 수입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다.

GATT 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경우에 EU산업에 대한 손해는 「중대한 손해」(serious injury)이어야 하며, 덤핑 및 보조금부수출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질적 손해」로는 부족하다.

#### Ⅳ. 緊急輸入制限 措置

손해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조사의 결과 EU산업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가 없다는 결과가 되면, 당연히 조치절차를 종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수입에 의하여 EU산업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된 경우에는 방어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공익요건」이 있고,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이 되는 때에 방어조치가 취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어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EU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조치(救濟措置)가 취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입에 의하여 EU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의 인상 내지는 신설 등의 방어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방어조치는 EU 전체를 커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가맹국 중 1개국 또는 수개국에 국한하여 방어조치가 취하여 지는 경우도 있다.

방어조치로써의 수입수량제한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은 종래의 당해제품의 수입실적보다도 적은 양까지 수입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어느 특정가맹국의 시장에 대하여서만 방어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에는, EU 역외로부터의 제품은 방어조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시장에 침입하게 되고, 그로부터 대상국시장에 침입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로마조약 115조에 의하여 방어조치대상이 되어 있는 가맹국은 대상제품에 대하여서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가맹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방어조치는 위원회, 이사회 또는 가맹국정부의 그 어느 것에 의하여 취하여질 수 있다. 우선, 규칙 1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즉시 지체없이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산업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맹국은 1개월간에 이 안전을 이사회에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다수결로써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하등의 결정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사회는 위원회의 제한에 기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16조). 가맹국은 종래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잠정적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년 말로 자유화품목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떤 가맹국에 대하여서는 자유화되고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서는 자유화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1987년

말로 이 잠정적 방어조치의 권한은 실효하게 되었다.

## V. 輸入監視制度

수입감시제도에 대하여서는 규칙 10조 및 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어떤 품목에 대하여 EU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관한 절차와 꼭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입감시제도를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수입제한이 아니고, 어느 품목에 대한 감시체제 하에 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수입감시제도가 발동되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 품목의 수입의 경우에 수입절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는 수입을 할 수 없다. 이 수입감시제도는 수입제한발동의 전 단계로써 실시되는 것이다.

## VI. 司法審査

EU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방어조치에 관하여서는 이해관계자는 EU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방어조치가 EU 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어조치에 대하여는 EU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제소인은 이른바 원고적격이 필요하지만, 명백히 원고적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해제품의 수입업자이다. 외국의 수출업자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나 아마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Ⅶ. EU 緊急輸入制限의 發動狀況

1986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1982년에 현행의 EU 긴급수입제한 규칙이 발효한 이후 4건의 발동신청건수가 있었고 그 중 1건은 부결되고, 2건은 발동되고, 나머지 1건에 대하여서는 조사중에 있다. 이 가운데 발동된 것은 ①대만 및 한국산의 식기류·가정용품의 사례(1982~83년)<sup>27)</sup>, 그리고 ② 홍콩·일본제 퀴츠(Quarz) 시계의 사례(1984년)<sup>28)</sup>이고, 이들 중 일본과 관계가 깊은 ②의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이 사건에 대한 배경으로서는, 1981년에 프랑스 정부가 홍콩제 퀴츠시계에 대해 일방적 수입제한을 하였다. 이 조치에 대하여 홍콩정부는 GATT 위반이라 하여 GATT에 제소하고 1982년에 GATT에 의하여 프랑스정부의 당해조치는 GATT 위반이라고 판정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정부는 이 일방적 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GATT 19조에 기하여 EC 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입품에 의한 손해가 있다고 결정하고, EC 이사회에 그와 같은 취지를 보고하였는데, 1984년 EC 이사회는 당해제품 수입에 의하여 프랑스산업 및 서독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

---

27)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3528/82 of 23 December 198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369/27, 29. 12. 82) ;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873/83 of 12 April 198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96/8, 15. 4. 83) ; Council Regulation (EEC) No. 2050/83 of 21 July 198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200/43, 23. 7. 83).

28)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1087/8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106/31, 19. 4. 84) ; Council Regulation (EEC) No. 1830/84 of 19 June 198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172/1, 30. 6. 84).



정하였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정부에 대하여서만 3년간을 한도로 하여, 자국시장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정부는 EC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계류 중이어서 행정지도에 의하여 수출업계에 대하여 수출의 자속을 권유하였다.

## Ⅷ. EU 加盟國에 의한 一方的 緊急輸入制限措置 發動

이상 열거한 EU 당국의 허가를 얻어 행하여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도 EC 가맹국이 일방적으로 대일 수입제한을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GATT 19조에 위반되는 것이었는데, 1986년 초엽 수치상으로는 110 품목이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일본정부는 EC 당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거듭 그에 대한 긍정적인 처방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1994년에 이르러 철폐되었다.

## 제 5 절 캐나다·호주에 있어서의 緊急輸入制限措置

### 1. 캐나다에 있어서의 긴급수입제한

캐나다에 있어서는 수출입허가법(The Export and Import Permit Act)에 의하여 내각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 품목에 대하여서는 수입의 제한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1984년에 제정된 특별수입조치법(特別輸入措置法,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29)</sup>

이에 의하면 첫째 국제수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다. 즉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밀원(樞密院) 의장은 명령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통상의 관세에 부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최고한도는 33⅓%의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는 수출입특별허가법 5조 (2)항 (b)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어떤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캐나다에서의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업자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또는 그와 같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밀원(樞密院) 의장은 그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한도 및 기간에 따라서 당해상품을 수입규제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서는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수입에 의한 국내생산업자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유무 결정은, 수입심사위원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수입심사위원회에 의한 손해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밀원(樞密院) 의장은 반드시 당해상품에 대하여 수입을 규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제한을 행할 것인가 또는 아니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특별수입조치법에 의한 수출입허가법의 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가 행하는 대(對) 캐나다 불공정관행에 대항하여 수입제한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이 개정에 의하면 「(a)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정에 기한 캐나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및 (b) 차별대우 또는 기타의 결과, 캐나다의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악

29) 캐나다의 수출입허가법 및 그에 의한 수입제한의 상세한 내용은, Patterson, Canadian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1986), p. 77 et seq.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른 나라정부의 행동, 정책 또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어떤 상품을 수입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어떤 상품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서 어떤 산업의 보호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므로, 어떤 상품의 수입이 캐나다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결정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경우에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캐나다 정부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 II. 호주에 있어서의 緊急輸入制限

호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세법(The Customs Act 1901)에 의하여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인정되고 있다.<sup>30)</sup> 호주정부에 의한 수입규제는 이 법률의 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호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즉, ①수입의 절대적 금지, ②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의 금지, ③어떤 조건 또는 제한에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의 허가이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호주 정부는 수입 허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수입허가증의 양도 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호주에서의 수입규제는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호주산업이 수입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입규제를

---

30) 호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해서는, Ryan, International Trade Law (1975), p. 228 et seq.

행하는 경우에는 호주정부는 산업원조위원회(The Industries Assistance Commission)의 당해산업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원조위원회의 조사는 수입제한을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세의 변경 및 어떤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31)</sup>

수입제한을 행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장관은 제한의 대상이 될 품목을 관세규칙(The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에 등재하여, 이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 제 6 절 일본에 있어서의 輸入管理法規와 緊急輸入制限制度

### 1. 概 觀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이라 약칭한다), 수입무역관리령(이하, 수입령이라 약칭한다) 및 관세 정율법(關稅定率法)이 수입규제의 기본적 법제이다.

외환법은 수출·수입의 수량규제를 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政令(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이 輸入令(수출에 관해서는 수출무역관리령(輸出令)이 있다)이다. 그리고 관세정율법은 긴급관세, 부당염매관세, 상계관세, 報復관세 등 이른바 특수관세에 대해서 정하고, 또한 禁製品, 지적소유권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31) Ryan, supra, 주 30), p. 235.

이밖에 그 자체로서는 수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규제의 효과를 가지는 것도 있다. 예컨대 기준인증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법률이 있고, 이에 의하여 제품의 검사기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이 정해지고 있지만<sup>32)</sup>, 이들에 의한 기준과 타국의 기준과의 상위(相違) 때문에, 타국에서 승인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일본에 있어서는 수입·발매가 허가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은 「무역의 기술적 장벽」의 문제이며, 실제상으로는 수입규제의 효과를 가진다. 나아가서 정부조달에 관한 규칙도 또한 무역에는 영향을 미친다.

독점금지법도 또한 수출입에 영향을 준다. 獨禁法은 그 자체로서는 수출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사적(私的) 협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독금법위반의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독금법의 어떤 측면은 수입에 관련되어 있다.

## II. 緊急輸入制限

### 1. 概要

일본에 있어서의 긴급수입 제한제도는 외환법·수입령에 의한 수입수량 할당과 관세정율법에 의한 긴급관세제도를 통하여 실시된다.

1994년말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말라케쉬 협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안에는 전술한 세이프가드협정도 포함되어 있다. 1994년의 갓트 및 세이프가드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 政令의 개정, 법령에 기반

---

32) 기준·인증제도에 있어서는 기준·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 편·일본의 기준·인증제도(1984년 참조).

공표 등이 행하여졌다. 일본에 있어서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제의 특징은 이것이 미국의 통상법 201조와 같이 한 개의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수량제한은 외환법·수입령(시행관청은 경제산업성), 긴급관세의 부과는 과세정률법(시행관청은 재무성)과 같이 두발 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래 세이프가드를 기동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외발 서기화한 법률을 하나의 관청이 시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에 있어서 縦割行政과 관청의 권한배분 현상에 있어서는, 현행제도와 같은 두발 서기 이외의 방법이 없을 것이다.<sup>33)</sup> 그래서 이들 실시법령에 의한 일본에 있어서의 현행 긴급수입 제한제도의 개요를 이하에서 기술한다.

## 2. 外國換 및 外國貿易法·輸入貿易管理令

외환법 52조는 「외국무역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과해지는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政令이란 수입관리령이지만, 이의 3조는 수입에 관한 사항의 공표에 관하여, 4조는 수입의 승인에 관하여, 9조는 수입의 할당에 관하여, 그리고 11조는 수입승인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2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안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확립된 헌법해석이지만, 이 정신에서 보면, 수입에 있어서도 영업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 22조에서 정하는 영업의 자유와 수입규제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검토하겠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만 지적해 둔다.

외환법 47조는 수출의 원칙에 관해서 규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화물의

33) 松下滿雄 ‘일본통상법규에 관한 고찰’ 법조시보 42권 5호(1990년) p. 15 참조.

수출은 이 법률의 목적에 합치하는 한, 최소한도의 제한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수출의 규제는 최소한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헌법 22조에서 보장되어 있는 영업 자유의 원칙과 整合하는 것이지만, 이것과의 대비에서 보면, 외환법 52조에 있어서 「화물의 수입은, 이 법률의 목적에 합치하는 한, 최소한도의 제한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수출의 제한은 최소한도가 아니면 안되지만, 수입의 제한은 최소한도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해석을 도출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戰後) 얼마 되지 않아서 외환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수출은 善」 「수입은 惡」이라는 사상 하에, 이러한 법률 체제가 생겼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법제도가 현재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점의 不整合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입령 3조는 「경제산업장관은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화물의 품목,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 할 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 기타 화물 수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것을 공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갓트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은 「기타 화물의 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것을 공표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하여 공표되고 있다.

수입관리령 4조는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될 때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제산업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1. 당해화물의 수입에 관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때,
2. 당해화물의 품목에 관하여, 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이 전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경우에 그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을 수입하고, 또는 그 선적지역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하려고 할 때,

### 3.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령 9조 1항은 「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표된 품목의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경제산업장관에게 신청하여, 당해 화물의 수입에 관계되는 수입할당을 받은 뒤가 아니면,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한다.

수입령 9조 3항에 있어서는, 동령 동조 1항에 의한 수입할당을 행하는 경우에 경제산업장관은, 「미리 당해화물에 관한 주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또한 당해화물에 관하여 주무장관에게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수입령 11조는 「경제산업장관은 외국무역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할당을 함에 있어서, 수입의 기간, 화물의 원산지, 선적지역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규정에 의하면, 화물의 수입에 관하여,

- ① 수입승인제도, 및 / 또는
- ② 수입할당제도가 실시되는 수가 있다.
- ③ 수입할당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수입에 관하여는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 ④ 수입할당 대상화물의 수입승인은 수입할당을 받은 후에만이 행해진다.
- ⑤ 수입승인 및 수입할당에 있어서는 조건이 붙여지는 수가 있다.

WTO협정에 일본은 가맹하고 있지만, 이에 수반하여 갓트 19조 및 세이



프가드협정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실시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종래에 있어서는 일본의 외환법 52조 및 수입령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에 있어서는, 갓트 19조의 내용인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에의 중대한 손해를 요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갓트와의 不整合이 있었지만,<sup>34)</sup> WTO협정에의 가맹에 수반하여, 이 점에 관해서 조치가 되어 있다.

1994년 12월 28일에 「화물의 수입의 증가에 있어서의 긴급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고시 제715호)(이하 규정이라 한다)<sup>35)</sup>이 고시되고 있다. 이것은 수입령 3조 1항에 기한 공표이며, 이 안에 갓트 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규정의 요점을 약술하면 아래와 같다.

규정 2조에 있어서는, 긴급한 수입할당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의하면, 경제산업장관은 「외국에서 가격의 저락 기타 예상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화에 의한 특정품목의 수입의 증가 … 가 있고, 당해 화물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 …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 경우에 있어서, 또한 국민경제상 긴급하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무역관리령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화물의 품목을 수입할당을 받아야 하도록 정하고 또한 수입할당을 받아야 할 기간, 당해수입할당의 총량 기타 당해화물의 수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을 공표하려고 할 때는, 다음 조문으로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여, 이하 각 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지만, 이들 내용은 세이프가드협정 내용을 국내법화한 것이다.

규정 9조는 「경제산업장관을, 전조[조사개시 규정]의 조사 …를 개시할

34) 주 33)의 문헌 14면 참조

35) 일본 관보 제1554호(1994년 12월 28일(수)) 9면 이하.

때에는, 미리 당해 화물에 관한 주무장관 및 재무장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緊急關稅

긴급관세의 규정은 관세정률법 9조이다. 이 규정도 일본의 WTO협정 가맹에 따라 개정되었다. 동법 9조에 의하면, 「외국에서의 가격의 저락 기타 예상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화에 의한 특정한 종류의 화물 수입의 증가 ... 가 있고, 당해화물의 수입이, 이것과 동종의 화물 ... 의 생산에 관한 일본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 ... 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경제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 및 기간 ... 을 지정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一.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될 지정된 화물의 전부에 대하여, 또는 당해화물 중 일정한 수량 혹은 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 [통상의 관세 외에] 당해화물의 과세가격과 이것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일본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도매가격 ... 과의 차액으로부터 [통상의 관세액]을 공제한 액 이하의 관세를 과할 것. 二.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 [1994년의 갓트 또는 말라케쉬의정서에 기한] 관세의 讓許를 하고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수입되는 당해 지정된 화물의 전부에 대하여, 또는 당해 화물 중 일정수량 혹은 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협정 제19조 1 ... 에 따라 그 讓許를 철회하고, 또는 별표의 세율 ... 의 범위 내에서 그 양허를 수정하고, 별표의 세율 또는 수정 후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동조 이하의 각항 및 「긴급관세 등에 관한 政令」<sup>36)</sup>에서

36) 정령 415호, 일본 관보 제242호(1994년 12월 28일(水)) 12면 이하.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1994년의 갓트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을 국내법화할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긴급관세의 내용은,

- ① 당해화물의 과세가격과 그것과 동종의 화물이 일본에 있어서 적정도매 가격과의 차액으로부터 통상관세를 공제한 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당해화물에 대하여 1994년의 갓트에 있어서 관세양허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양허를 철회한다.

고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긴급관세 등에 관한 정령 9조에 있어서는 「재무장관(大臣), 법 9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일본의 실업을 소관하는 장관 … 및 경제산업장관은,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재무장관, 산업소관장관 및 경제산업장관은, 조사(조사결과에 포함한다)에 관하여 항상 긴밀한 연락을 가짐과 동시에 이들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다음 정하도록 한다」 고 하고 있다.

#### 4. 輸入割當制度와 緊急關稅制度의 關係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긴급수입제한으로는,

- ① 외환법·수입령에 기한 수입수량제한(시행기관은 경제산업장관) 및
- ② 관세정률법에 기한 긴급관세(시행기관은 재무장관)의 양자가 있다.

전자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경제산업장관이 수입승인·수입할당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후자는 마찬가지로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통상관세에 더하여 부가적관세(긴급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내용의 것이다.

어느 것이나 1994년의 갓트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에 준거하여

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법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양 제도의 관계이다. 즉 일본의 산업이 어떤 상품의 수입급증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어느 제도도 발동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일방이 타방보다도 적절하다고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사례에 관하여, 이 양 제도에 의한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양 제도의 코디네이션은, 전술한 수입령에 의한 규정(규정 9조)에 정해지는 경제산업장관의 재무장관 및 타산업소관장관과의 협의의 규정 및 긴급관세 등에 관한 정령에 규정된 재무장관의 경제산업장관 및 타산업소관장관과의 협의(정령 9조) 규정을 활용하여, 양 규정의 발동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Ⅲ. 輸入規制와 營業의 自由

#### 1. 日本憲法 22條 1項에 정한 營業의 自由

일본 헌법 2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 영업의 자유에는 수출입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 영업의 자유는 「공공 복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 복지」의 의의이다. 판례원칙에 의하면 이 공공의 복지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코콤사건 판결<sup>37)</sup>에서는 通産省(部)이 코콤협정 실시를 위하여 외환법 48

37) 1969년 7월 8일 東京地裁判決, 行裁例集 20권 7號 842면 .

조에 기하여 행하고 있었던 수출승인제도가 영업의 자유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일본정부는 코콤협정에 기하여 대중국향(向) 수출을 규제하고,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금제품으로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중국향 당해제품의 수출은 승인제도에 있었고, 통산성은 이들 수출승인신청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이 제품의 수출규제를 실시해 왔다. 가끔 중국에서는 박람회 있었고, 혹자가 여기에 전자제품을 출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산성에 수출승인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통산성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그래서 이 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여, 수출불승인처분이 헌법에 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논거를 들어 제소하였다.

이 소송을 받은 도쿄地裁는, 영업자유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될 만한 공공복지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으면 안되고, 외환법의 목적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및 외국무역의 건전한 발달이라고 하는 경제적 목적이며, 코콤협정과 같이 국제정치상의 목적실현은 동법의 목적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외환법 48조에 의하여 수출승인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동법의 목적을 일탈하고 있으며, 영업 자유의 침해가 된다고 하였다.<sup>38)</sup>

## 2. 營業의 자유에 관한 判例原則

이 판결은 수출에 관한 영업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지만, 수입에 대해서도 이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고,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그 제

38) 코콤사건 판결의 해설로서는, 塩野 「코콤 소송의 문제점」 주리스트 434號 (1969년), 丹宗昭信 「코콤 訴訟」 주리스트 臨増·1969년도 중요판례해설(1970년) 등.

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을 이유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판례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에 근거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제한(적극적 규제)에 관해서는, 법원은 그 정책의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원칙적으로 입법부에 그 판단을 위임한다고 하고 있다.<sup>39)</sup> 그리고 당해입법이 불합리하거나 또는 그 정책실현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적 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부(當否)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타방, 어떤 입법에 의한 영업의 제한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책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건강유지, 공서양속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소극적 규제)에는, 당해규제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이것이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가 아닌가에 관해서, 법원은 엄격한 위헌심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sup>40)</sup>

이상의 헌법원칙에서 보면, 수입규제가 헌법상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에 관해서는 그 규제의 성격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수입규제가 농업의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의 정책을 반영한 것(소위 수입제한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인 경우에는, 그 제한의 허용범위는 넓게 인정되는 데 대하여, 수입규제가 公序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마약단속, 제품의 안전기준 등의 기준·인증제도 등)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 최소한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엄중한 위헌심사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헌법원칙에 의하면, 특수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입법

---

39) 공중욕탕법 위반 피고사건, 1955년 1월 26일 最高裁判決, 刑集 9권 1호 89면, 小賣市場距離制限事件, 1972년 11월 22일, 最高裁判決, 刑集 26권 9호 586면 등.

40) 藥事法距離制限사건, 1975년 4월 30일 最高재판결, 民集 29권 4호 572면.

에 관해서는 용이하게 위헌심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국민일반의 이익을 체현(體現)하는 입법에 관해서는 엄중한 위헌심사가 행하여진다고 하는 역설이 성립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책입안담당기관인 입법부와 법률해석·시행기관인 사법부와의 권한배분·역할분담의 원칙에서 보아, 어느 정도는 도리 없는 일일 것이다.<sup>41)</sup>

#### Ⅳ. 輸入規制와 WTO/갓트協定

##### 1. 憲法 98조 2항에 정한 條約遵守義務

헌법 98조 2항은,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약 및 국제법규의 준수 의무를 정한 것이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수입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법규가 조약에 반하는 경우에, 이러한 국내법규는 조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무효로 되느냐 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자동집행력과도 관계되는 국제법상의 문제이지만, 이에 관한 학설은, 일반론으로서는 헌법 98조 2항이 조약의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조약은 일본의 법질서에서는 일반 국내법보다도 높은 지위가 부여되어 있고,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조약에 반하지 않는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총합하여 판단하면, 조약에 위반하는 국내법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sup>42)</sup>

판례에 있어서도, 1947년의 갓트에 위반한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41) 松下滿雄·經濟法概說(1995년 제2판) 23면 이하.

42) 佐藤功·日本國憲法概說(1980년), 高野雄一·國際法概論(1969년) 등.

일반론으로서 선언한 것이 있다. 이 판례는 관세법 위반사건<sup>43)</sup>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일본에 보석을 개인사용이라고 신고하고 도입하였다. 실제로는 이것은 일본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자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이 성립되는지가 문제되었지만, 피고인측에서는 경미한 관세법위반에 대하여 중벌을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갓트 8조 3항의 규정(「체약국은 세관규칙 또는 세관절차상의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중벌을 과해선 안된다」)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피고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神戸地裁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주장을 배척했지만, 일반론으로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보건대 실제로는 갓트와 일본관세법과의 저촉은 없고, 神戸地裁가 갓트와 일본관세법이 현실적으로 저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갓트는 일본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일반론을 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론 수준에 머물고, 이로 인하여 국내통상법규가 무효화되는 사태로는 되지 않고, 현실의 정치적·경제적 영향은 없다.

## 2. 西陣(니시진) 넥타이 소송사건 판결<sup>44)</sup>

43) 1961년 5월 30일 神戸地裁判決, 下級刑集 3권 5·6號 519면 이하.

44) 京部地裁 1984년 6월 29일 判決, 判例 タイムズ(타임즈) 530호 265면, 최고재 1990년 2월 6일 제3소법정판결, 소송월보 36권 12호 224면. 이 사건 및 판결의 해설로서는, 浦部法穂 '營業의 自由와 輸入制限' 주리스트 829호(1985면), 平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갓트의 법적지위」 神戸商科大学 商大論集 39卷 4號



그러나 실제로 일본국내통상법규와 갓트가 저촉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국내통상 법규를 갓트위반을 논거로 하여 무효화하려는 정치적·경제적 영향이 심대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러한 추상론을 당장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西陣 넥타이 소송사건이다.

이 사건은, 京都의 西陣 넥타이 업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일본의 生絲는 2차대전 전 및 전후에는 주력 수출상품이었지만, 경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생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에 잠사가격안정법을 제정하고, 가격안정제도를 설치했다. 이에 의하면 농림성(당시)은 생사가격의 上限과 下限(가격대)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 상한을 上回하는 경우에는 잠사사업단이 시장에 생사를 방출하여 이것을 내리게 하고, 하한을 下回할 때는 동사업단이 생사를 매입하여, 가격이 이 가격대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는 이 제도는 생사가격이 하한을 하회했을 때에 동사업단이 매입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

이 가격안정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생사의 수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수입생사에 의해서 국내의 생사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사가격안정법이 1985년에 개정되어, 生絲의 一元 수입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면, 잠사사업단만이 생사의 수입권한이 주어져, 동사업단은 수입생사를 農水省(당시)이 정하는 표준 실값(絲價)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국내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

(1988년) 143면 이하, 清水章雄 「갓트·롤에 의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 西陣넥타이 소송 제1심 판결을 둘러싸고」 小樽商科大学 經濟摩擦研究會·國際通商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1987년) 43면, 松下滿雄 「西陣넥타이 訴訟最高裁判決」 주리스트 956호(1990년).

한 국내가격이 가격안정대의 하한가격을 하회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생사를 국내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한 보호 결과,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생사가격은 극히 높아졌지만, 일본의 넥타이 업자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생사를 수입할 수 없게 되고, 값비싼 국내생사 또는 수입생사를 써서 넥타이를 제조·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 생사의 주요 수출국(중국 및 한국)은 생사를 유럽에 수출했지만 유럽에서는 생사의 수입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럽시장에서의 생사가격은 값이 싸다. 유럽의 넥타이 업자는 이 값싼 생사로 넥타이를 제조하여 이것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넥타이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정부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원료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일본국내시장에 있어서의 일본 넥타이 업자는 유럽 넥타이와 경쟁할 수 없고, 사업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西陣(니시진) 넥타이 업자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제소이유는, 이 생사 일원수입제도는 「①헌법 22조 1항에 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국가 무역기관에 대해서 규정하는 갓트 2조 7 및 17조에 위반한다.」고 하는 것이다. 갓트 2조 7은 국가무역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품이 갓트에서 관세 양허(讓許)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플러스 관세의 액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판매를 하고, 수입차익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17조 1(a)는, 체약국은 국가무역기관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등의 순수 상업적 고려에만 따르는 무차별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다. 西陣 넥타이 업자측의 주장에 의하면 잠사가격안정법에 의하여 생사의 일원수입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잠사사업단은 국가무역기관이며, 이의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생사의 판매, 가격 설정은 상술한 갓트의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소송에 있어서 京都地裁는, 갓트는 그 19조에서 긴급수입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 건 생사의 수입제한조치는 갓트상의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는, 가령 본건 생사의 수입제한 조치가 갓트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갓트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는 갓트 23조에 정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반이 있으면 일본은 타 가맹국으로부터 위반을 추궁당하여 그 조치의 철폐를 청구받게 되거나, 철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갓트 위반을 근거로 하여 잠사가격안정법이 국내법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갓트 19조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더구나 일시적으로만의 수입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잠사가격안정법에 대한 생사 일원수입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갓트 19조의 요건인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보호조치가 17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이것을 갓트 19조에서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갓트 23조에 따라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가맹국 정부뿐이며, 본건 소송의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소송에서 피고는 일본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京都地裁의 說示는 본건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건에 있어서 京都地裁는 일본국내 통상법규가 갓트에 위반하고 있어도, 그 이유로는 당해법규는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大阪高裁는 본건 손해는 잠사사업단에 의한 조치에 따라 생긴 것으로, 국가배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래서 西陣 넥타이 업자측에서는 最高裁(大法院)에 상고하였다. 그 때 상고인인 西陣 넥타이 업자측에서는 상세한 상고취지를 最高裁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고인 주장의 골자는, 본건 일원수입제도는 ① 헌법 22조에 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갓트 2조 4 및 17조 1(a)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最高裁는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지만, 판결문은 전부 25행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그 대부분은 헌법 22조의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說示이었다. 最高裁는 전술한 종래의 판례에서 「적극적 규제」와 「소극적 규제」의 구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司法府는 가별게는 일정한 정책에 근거한 입법의 適否에 관해서 판단하지는 않고, 원칙적으로는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한 다음, 본건의 잠사가격안정법은 「적극적 규제」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본건 잠사가격안정법에 근거한 생사의 일원수입제도가 갓트에 반하는가, 반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最高裁는 아무런 판단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下級審의 판단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最高裁가 상고인의 상세한 상고이유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관하여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또한 이유를 기술하지도 않으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는가이다.

만약 最高裁가 상고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헌법 98조 2항에 관한 종래의 학설 등도 참조했다라면 본건 일원수입제도가 갓트위반이며, 일본이 조약으로서 비준·공포하고 있는 조약에 위반하는 국내법은 무효라는 법적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이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가령 법적으로 올바르더라도, 그것이 일본 농업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극히 크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같은 이유로 식량관리법에 의한 쌀의 수입금지(현재로는 이 법률은 폐지되어, 신식량법에 의하여 대체되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식관(食管)제도의 유지와 쌀의 수입금지는 가

장 중요한 정치적 요청이었다), 기타 농산물의 수입제한을 정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위법,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론은 법적으로 올바르더라도, 정치적·경제적 영향이 지나치게 커서, 最高裁가 법적판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의 스케일을 초과하고 있다. 最高裁가 본건 일원적 수입제도와 갓트와의 관계에 관해서 「沈黙」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회피」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제도론으로는, 헌법 98조 2항이 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흐르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즉 이러한 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으로서 는, 조약에 위반하는 국내법을 무효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국가가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 및 국제사회의 결정에 반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극히 중요한 국내법을 무효로 하는 데는, 당해 국가가 국제사회를 신뢰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의하여 국내규범의 개폐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가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미국헌법에서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미국에서는 WTO협정은 이 의미에 있어서의 조약이 아니고 대통령이 의회의 授權에 의해서 체결한 행정협정이다)과 연방법은 동계이며, 「後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체제에 있어서는, 일면으로는 이미 체결·비준된 조약이 후에 연방법에 의하여 뒤집어지고, 국내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위험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조약을 체결하면, 이것을 파기하지 않는 한 국내입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硬直性으로부터 개방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가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에

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헌법 98조 2항 하에서는, 국내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입법과 국제조약이 저촉하는 경우, 헌법상의 요청으로는 국제법원은 국제조약을 우선시켜 국내입법을 무효로 하는 외에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커서 법해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법적인 판단에서 「도피」 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본건 最高裁判決은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생각된다.

## 제 7 절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I. 총 설

우리나라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는 원래 대외무역법(1996. 12. 30 전문 60조문) 제4장 제1절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 등(26-27조), 제2절 救濟措置의 건의 및 措置(28-30조)에 의하여 규정되었었는데, 이 규정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1. 2. 3 전문 42조문) 및 「동 시행령」(2001. 5. 10 전문 25조문)의 제정과 더불어 대외무역법 제4장 1, 2절은 삭제되었다.

### II.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상의 緊急輸入制限制度

산업자원부는 2001년 1월 27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sup>45)</sup>

이하 동 특별법상의 불공정무역규제 및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1. 意 義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이라 약칭함)은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증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공정무역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보다 부합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히 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2. 不公正貿易行爲의 調査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은 제2장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수출입과 국내판매 및 제조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고(4조), 조사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였고

---

45)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1호, 2001. 1. 27. 공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동 법률이 발효되어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에 관한 대외무역법중의 규정(제26조~제30조, 제32조~제38조)은 동 법률로 대체되었다.

(5조 3항),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통관배제명령, 유통중지명령, 담보제도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고(7조·10조),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위중지명령,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범위반사실의 공포 등 시정 조치제도를 구체화하였고(10조), 과징금의 징수방법·산정방법·부과기준·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으며(11조),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 등 불복절차를 마련하였다(14조).

### 3. 産業被害調査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은 제3장에서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조사개시요건, 조사내용, 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등 조사의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규정하였고(15·16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원칙, 잠정조치 적용기간, 재적용 금지기간 등을 규정하였고(19조),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 건의여부 결정기간을 신청일로부터 대외무역법상 45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산업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16조 1항), 섬유 및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산업피해조사,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시행·재검토 등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21조), 제4장에서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조치가 관세법에 따름을 명시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였다(23조~24조).

### 4. 産業競爭力影響調査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은 제5장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과 산업경쟁력 영향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였다(25조~26조). 산업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사전적 조사·평가자료는 관련 국내제도를 개선하거나 통상 협상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5. 其他

이밖에도 ‘불공정무역행위규제법’은 제6장에서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27조~35조), 제7장에서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등의 출석절차, 전문감정인의 감정절차, 조사단의 구성절차, 영업비밀자료의 취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36조~38조), 제8장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벌칙을 강화하였다(40조~42조).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든 것 이외에 徐憲濟, 國際經濟法, 389~414면 이하 참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제정 2001. 2. 3 법률제6417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라 함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라 함은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 3 조 (공정성·투명성등의 확보)**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공무원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조사·판정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등

**제 4 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

(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표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그밖에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 5 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결정)** ①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그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담보제공)** ①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과 담보의 변경·보충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각각 “무역위원회”로 본다.

③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담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정한 사항외에 담보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판정 및 통지등)** ①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판정의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 4 조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 그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 4 조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조 (과징금)** ①무역위원회는 제 4 조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조사에 추가시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3 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①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및 신청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 부터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과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관세를 조정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잠정적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등의 준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세이프가드조



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세이프가드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180일이내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2. 최근 5년동안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이내일 것

**제20조 (재검토)** ①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이 되는 날이전에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방지 또는 구제등을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연장을,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해제 또는 연장을 건의받은 때에는 제19조제 1 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1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범위 및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등

**제23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등)**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등은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등)**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등은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5 장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6 장 무역위원회

**제27조 (무역위원회의 설치)** 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증가·덤핑·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판정
4.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재검토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입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등의 조사
6.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등
7.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등
8.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등의 조사·연구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0. 기타 공정무역의 촉진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제29조 (무역위원회의 구성등)**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있던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 또는 무역진흥분야의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중 임명된 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32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의결의 공개)** ①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제35조 (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7 장 보 칩

**제36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관계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등에 대한 의견청취·자문 및 조사의뢰

②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영업소·공장·사업장·점포·창고 그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①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등의 임원 및 직원
4. 그밖에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등의 장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조사·판정등의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37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 8 장 벌 칙

**제4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업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36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을 받은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6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2. 제3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 3 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 4 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 6 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장제 1 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 2 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輸入制限措置”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 1 항중 “輸入制限措置”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 2 항중 “輸入制限措置”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 4 장제 4 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 3 항 및 제 4 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 5 항중 “第 1 項 各號”를 “제 1 항제 2 호”로,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委員會로부터”를 “貿易委員會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 1 항을 삭제하고, 동조제 2 항중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貿易委員會”을 “産業資源部長官은”으로 한다.

제59조중 “貿易委員會의 委員長·委員, 産業資源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제정 2001. 5. 10 대통령령제17222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3 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인수,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나. 선하증권 원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 3 조 (조사의 신청등)** ①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내용

②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

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조사의 방법등)**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일시·방법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 5 조 (시정조치명령의 통지)**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기한

**제 6 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거래금액을 연평균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가액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 법 제11조제 1 항 단서에서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당해 행위자가 거래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밖에 거래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 7 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고의 또는 과실여부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 8 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등)** ①법 제12조제 1 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과징

금의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수입증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국내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

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제14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자등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등을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수입자·수입실적(물량 및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수입량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및 생산자명
  4.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 당해 국내산업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내용
  7.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

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제16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증가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제 1 항제 2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매·생산·생산성·가동률·이윤·손실·고용·재고·시장점유율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제 3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등) 법 제17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업종전환의 촉진을 위한 금융·세계상의 지원
2.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3.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19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심각한 정도
2. 신청하는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정도 및 기간
3. 그밖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조

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 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부패성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 4 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등)** ①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제한으로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제21조 (재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기간중 직권 또는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대한 재검토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는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제15조제 1 항 각호의 사항(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기간 종료 6월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3. 그밖에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③법 제2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중간이 되는 날의 6월전에 이

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완화 또는 해제의 건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의 종료일(제 3 항의 경우 중간이 되는 날을 말한다) 1월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연장을 건의함에 있어서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당해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⑥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 국내산업의 생산동향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에 대한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생산성·가동률·재고·시장점유율·수출·임금·고용·국내가격·이윤·투자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때에는 그것이 명백하게 급박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판정함에 있어서는 제12조 내지 제16조 및 제17조제 1 항·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등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의 운영)** ①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감정인지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시기·장소·목적 및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①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 서류 또는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명칭·주소·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 그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무역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무역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장제 1 절(제61조 내지 제71조) 및 제 2 절(제72조 내지 제7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2 항 내지 제 4 항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제 1 항 및 제 3 항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 4 항중 “수입제한기간”을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 4 장제 4 절(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 4 호중 “인도”를 “인도·인수”로 하고, 동조제 5 호중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를 “분쟁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제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별표 1]

위반행위의 과징금부과기준(제 7 조제 1 항관련)

1. 거래금액의 단계별 과징금부과기준

| 과징금부과기준 거래금액(단계)       | 단계별 부과기준            |
|------------------------|---------------------|
| 10억원이하(1단계)            | 부과기준 거래액의 2/100     |
|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2단계)    | 매 10억원마다 500만원      |
|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3단계) | 매 100억원마다 1,000만원   |
|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4단계)   | 매 1,000억원마다 2,000만원 |
| 1조원초과(5단계)             | 매 1조원마다 4,000만원     |

비 고 : 과징금부과기준 거래금액은 다섯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기준 거래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이내(이하 “기본금액”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과징금부과기준 매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로 부과한다.

2.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부과기준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금액 |
|--|-------------------------------|-------|
|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법 제 4 조제 1 호 가목               | 5억원   |
|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법 제 4 조제 1 호 나목               | 5억원   |
|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법 제 4 조제 3 호 및 이 영 제 2 조제 1 호 | 3억원   |
|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 법 제 4 조제 3 호 및 이 영 제 2 조제 2 호 | 3억원   |

|   |                                  |     |
|---|----------------------------------|-----|
|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법 제 4 조제 3 호 및 이 영 제 2 조제 3 호    | 4억원 |
|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법 제 4 조제 3 호 및 이 영 제 2 조제 4 호 가목 | 4억원 |
| 선하증권 원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 법 제 4 조제 3 호 및 이 영 제 2 조제 4 호 나목 | 3억원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금액(제26조제 3 항관련)

(단위 : 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36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 법 제42조제 2 항제 1 호 | 50      | 150 | 300 |
| 2. 법 제3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 법 제42조제 2 항제 2 호 | 100     | 300 | 500 |

비 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 장 덤핑의 防止

### 제 1 절 概 要

#### 1. 덤핑이란

「덤핑」이란 일반용어로서는 「부당한 廉賣」의 뜻이지만, 국제무역에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어떤 제품(製品)을 수출하는 경우, 그 상품을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일정가격으로 판매하고, 동종제품을 수입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그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입국의 競爭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 X사가 Y제품을 일본국내 시장에서는 1단위 1만달러로 판매하고, 이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8,000달러로 수출하여, 이러한 가격차를 설정한 수출에 의하여, 경합하는 미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실제로는, 가격계산에 있어서는, 환율의 문제라든가 제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비용 등 공제, 각종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조정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것들은 모두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갓트에 있어서는, 이 덤핑이 가맹국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불공정무역」이라는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이러한 덤핑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가맹국인 수입국은 이에 대항하여 그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액(이것을 「덤핑마진」이라 한다)을 최고한도로 하는 특별관세(反덤핑세)를 가맹국인 수출국으로부터 당해 제품의 수입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反덤핑'(antidumping, 이하 「AD」라고 약칭한다.)이라고 한다.<sup>1)</sup>

## 2. 갓트 6조

갓트 6조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갓트 6조는, 어떤 가맹국으로부터 다른 가맹국에 수출되는 제품의 수출가격이 당해수출국에 있어서의 국내판매가격(수출국내시장에서의 소비지향의 동종제품의 통상거래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도 낮은 경우가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항). 그리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①제3국 수출가격, 또는, ②구성가액보다도 낮은 경우가 덤핑이라 한다. 제3국 가격이란,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제품의 통상의 상거래에서의 비교가능한 최고가격이며, 구성가액이란, 원산국에서의 제품의 생산비에 타당한 판매경비 및 이윤을 더한 것이다. 다만, 이 가격차의 계산에 있어서,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의 차이, 기타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갓트 6조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가격차가 있는 것만으로 곧 당해 덤핑을 비난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덤핑이, 수입국의 국내실업에 「실질적 손해」(material injury)를 주는 경우에, 이러한 덤핑을 규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동조 1). 이 손해요건에는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수입국의 확립된 산

---

1) 반덤핑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지만, 1995년에 WTO가 성립함과 동시에, 국제 반덤핑협정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현재 각국의 반덤핑법은 이 협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체결 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아직 이 협정에 관한 상세한 문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일반적 문헌을 든다.

Jackson and Vermulst(ed.),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1990) ; Michig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Vol. I), Antidumping Law : Policy and Implementation (1979) ; Dale, Anti-Dumping Law in a Liberal Trade Order (1980) ; Bryan, Taxing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1980) ; 雨見二郎編・概説안티덤핑制度 (1985년) 등. ;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다산출판사, 2002. 2. 342면

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미칠 때, 둘째는, 수입국에서의 확정된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셋째는, 수입국에서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이다.

그리고, 더욱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는 덤핑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예를 들면, 시장점거율의 감소, 매상의 감소, 가격의 저하 등)는 덤핑 이외의 요인(예컨대, 덤핑상품 이외의 경쟁품의 출현, 수요구조의 변화, 경제의 停滯 등)에 의하여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덤핑 탓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3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당해 덤핑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서, 당해 제품의 수입국은 이에 대하여 덤핑·마진을 최고한도로 하는 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덤핑이 비난받아 마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덤핑세를 과할 수 있는 것은, ①어떤 제품의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도 수입국의 수출가격 쪽이 낮고, ②수입국의 동종제품의 제조·판매를 행하고 있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 또는 그러한 염려, 또는 그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遲延)이 있고, 더욱이 ③①과 ②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통상의 경우, 어떤 가맹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이 덤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가맹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는 경우에, 수입국이 AD세를 과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덤핑에 의하여 제3국의 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수입국은 당해 제3국을 위하여 AD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가맹국으로부터 다른 가맹국에 대한 덤핑에 의하여 제3국산업의 당해수입국에 대한 제품의 수출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 수입국은 당해 제3국을 위하여 AD세를 발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sup>2)</sup>

### 3. 덤핑은 불공정무역(不公正貿易)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덤핑은 갖트상으로는 「불공정무역」이라는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AD세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하는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덤핑이 왜 불공정무역인가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덤핑은, 그것이 수출업자가 가지는 「시장력(市場力)」의 남용인 경우에는, 불공정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수출국시장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시장력」을 가지고, 국내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수출국시장은 동국정부의 조치 또는 수출업자의 제한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폐쇄되어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국내시장에서의 시장력을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올리고, 이것을 자금으로 하여 수입국에 덤핑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수출국시장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덤핑제품은 수출국과 수입국에 있어서의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시장으로 환류(還流)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염가의 수출은 일정한 시장에서의 시장력을 이용한 타시장에의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sup>3)</sup>에 의한 판매이며, 이러한

---

2) 제2차 미일반도체협정에 있어서는, 일본반도체가 미국 이외의 제3국에 덤핑수출되어, 그것이 염가로 미국에 재수출되는 경우, 미국은 일본반도체의 첫째 수입국인 제3국에 대하여 덤핑조사의 개시를 요구하고, 일본정부는 그 조사에 협력하도록 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Matsushita,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1993), pp. 237-239 참조.

3) 이와 같은 가격조작은, 일반적으로 「약탈적가격설정」(predatory pricing)이라고 불려진다. 이에 관해서는, Areeda and Turner, Predatory Pricing and Related Practices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Harvard Law Review, Vol. 88 (1975), p. 679 et seq. ; Areeda and Turner, Antitrust Law



염가는 기업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약탈적 가격에 의하여, 수입국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까지도 배제되어 버리는 사실로 인하여, 이러한 가격설정은 수입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시장폐쇄에 의하여 수출국시장에 제품이 염가로 환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으로써,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가격설정은, 시장력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라면, 덤핑은 불공정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갓트 6조, 그것을 수용하여 체결된 국제반덤핑협정, 각국의 AD법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것은 적용의 요건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과 수입국에의 수출가격과의 사이에 괴리(乖離)가 있고, 수입국의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가 있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AD세 적용에는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는, 덤핑이 반드시 불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갓트6조, 국제덤핑협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미에 있어서의 덤핑은 불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sup>4)</sup> 그러나 전술(前述)한 세이프가드는 반드시 발동이 용이하지 않은데

---

(1978), Vol. 3, p. 150 et seq. ; Williamson, Predatory Pricing : A Strategic and Welfare Analysis, Yale Law Journal, Vol. 87 (1977), p.284 et seq. 등을 참조. 또한, 약탈적 가격에 대한 최근의 분석으로는, 本間忠良 '略奪과 競争-제니스 대 松下 미국최고 재판결을 둘러싸고' 企業行動과 法(1995년) 163-196면 참조.

4) Messerlin and Noguchi, The EC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 : A Costly Exercise in Futility-The Photocopier Case (1991) ; 北川俊光 「던켈·텍스트 후의 우루과이 라운드교섭에 있어서의 “안티 덤핑·코드”」 松下滿雄 還曆紀念論集·企業行動과 法(1995년) 295-320면, 동 「WTO 新貿易秩序하에 있어서의 “안티덤핑협정”」 쥬리스트 1071호(1995년) 참조.

반하여, AD세는 발동이 용이하다. AD법은 어떤 나라로부터의 어떤 제품 전체에 대하여 발동할 수도 있고, 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AD법은 불공정무역에 대항하는 규제이므로, 갓트상 그 규제를 최혜국대우 하에서 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이 규제가 발동될 경우, 다른 나라는 갓트상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항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인정되어 있지 않다.

AD법의 조사에 있어서는, 수출기업의 수출국내시장에 있어서의 가격과 수입국에의 수출가격의 격차가 대상이 되므로, 피조사자는 수출업자이며, 조사개시와 더불어 수출업자에게 단기간에 팽대(膨大)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형식으로 부담을 과할 수가 있고, 덤핑인정 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사실상 수입을 억제할 수가 있다.

또한, AD법은 가격차를 설정한 수출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끼치는 수출을 「불공정무역」이라고 함으로써, 수입압력을 받는 수입국의 산업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써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AD법은 세이프가드에 비교하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국내산업에 있어서는 사용하기 쉬운 수단이며, 또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으며, 경제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국경없는 경제)이 완전히 실현되고, 더욱이 국제적인 경쟁법의 시행이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덤핑에 대해서는 경쟁법의 적용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EU는 域內에서 자유통상이 확보되어 있고, 또 공동체의 경쟁규정이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sup>5)</sup> 그리하여, 역내(域內)의 국내법으로서의 AD법은 모두 폐지되어

5) EU의 경쟁법에 관해서는, Van Bael and Bellis, Competition Law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5) ; 村上政博·EC 競争法 [EU 競争法] (1995년) 참조.

있고, 경쟁법의 시행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EU와 같은 지역통합을 초월하여, WTO가맹국 전체로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따라서, WTO체제로서는, 당분간은 AD법과 공존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4. 덤핑에 적용되는 법규

국제적 덤핑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로서는, ①갓트 6조, ②국제반덤핑협정, ③국내 반덤핑법 및 ④국내 반덤핑법을 실시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들 가운데, 갓트 6조에 대해서는 기술(既述)하였다.

국제반덤핑협정은, 갓트 6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정이며, 여기 갓트 6조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한 요건이 들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갓트 6조는 극히 간단하여, 이것만으로는 갓트가맹국의 국내법 실시를 위한 규범으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세한 국제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갓트에 있어서는 1967년 케네디·라운드 교섭의 결과, 반덤핑협정이 성립되었다. 이 반덤핑협정은, 그 후 1979년에 東京라운드교섭이 종결되었을 때 성립된 반덤핑협정에 의하여 대체되고, 이 1979년 협정이 1994년 말까지 시행되었다.

UR의 종결에 따라 WTO협정이 성립했지만, 이 가운데는 반덤핑협정도 포함되어 있다. 1995년 1월 1일에 WTO협정이 발표함과 동시에 새로운 반덤핑협정도 발효하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WTO가맹국 가운데는, 종래에는 주요한 AD법 적용국으로서, 「Big Four」(즉 미국·캐나다·호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밖에 많은 나라가 AD법을 적용하게 되어, AD법의 확산현상을 볼 수 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의 WTO가맹국에 있어서의 AD법의 발동상황은 [표 1]<sup>6)</sup>과 같지만, 이에 의하면 각국의 발동건수의 합계는 360건으로, 「Big Four」 외에, 발전도상국에 있어서도 AD법 발동의 기운(機運)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編・2001년판 不公正貿易報告書 73면.

주요국의 AD措置의 調査開始件數의 推移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미 국       | 34   | 63   | 82   | 32   | 48   | 14   | 22   | 15   | 36   | 46   |
| E U       | 48   | 29   | 42   | 21   | 43   | 33   | 25   | 41   | 22   | 68   |
| 캐나다       | 15   | 11   | 46   | 25   | 2    | 11   | 5    | 14   | 8    | 18   |
| 호 주       | 47   | 68   | 71   | 59   | 15   | 5    | 17   | 42   | 13   | 23   |
| 브라질       | 2    | 7    | 9    | 34   | 15   | 5    | 18   | 11   | 18   | 16   |
| 한 국       | 5    | 0    | 5    | 5    | 4    | 4    | 13   | 15   | 3    | 6    |
| 인 도       | 0    | 0    | 8    | 0    | 7    | 6    | 21   | 13   | 33   | 68   |
| 남아공       | 0    | 0    | 0    | 0    | 16   | 16   | 33   | 23   | 41   | 16   |
| 인도네<br>시아 | 0    | 0    | 0    | 0    | 0    | 0    | 11   | 5    | 8    | 10   |
| 멕시코       | 11   | 9    | 26   | 71   | 22   | 4    | 4    | 6    | 12   | 11   |
| 페 루       | 0    | 0    | 0    | 0    | 3    | 2    | 7    | 2    | 3    | 8    |
| 필리핀       | 0    | 0    | 0    | 1    | 7    | 0    | 1    | 2    | 3    | 6    |
| 폴란드       | 0    | 24   | 0    | 0    | 0    | 0    | 0    | 1    | 0    | 7    |
| 터 키       | 0    | 0    | 0    | 7    | 21   | 0    | 0    | 4    | 1    | 8    |
| 베네수<br>엘라 | 0    | 0    | 0    | 3    | 0    | 3    | 2    | 6    | 8    | 7    |
| 일본        | 0    | 3    | 0    | 0    | 1    | 0    | 0    | 0    | 0    | 0    |
| 기타        | 3    | 14   | 36   | 43   | 31   | 53   | 45   | 43   | 46   | 42   |
| 합계        | 165  | 228  | 325  | 301  | 235  | 156  | 224  | 243  | 255  | 360  |

(出典) 갓트 文書

[經濟産業省通商政策局 編・2001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73면에서]

## 제 2 절 國際반덤핑協定

### I. WTO協定에 포함되는 國際반덤핑協定<sup>7)</sup>

#### 1. 概要

WTO협정의 부속서 1A는 「제품의 무역에 관한 다각적 협정」이며, 이 중 핵심적인 것은 「1994년의 갓트」이다. 그리고 1994년의 갓트는 많은 부속협정에 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되었다. 1994년의 갓트 6조는 AD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는 협정이 「1994년의 갓트 제6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이하, 「국제AD협정」이라 한다)이다. 그 명칭이 나타내듯이, 이 협정은 갓트 6조의 내용을 상세히 하고, 細目에 대하여 정한 것이지만, 갓트 6조 자체는 일반적·추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규범은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UR에 있어서의 이의 체결을 둘러싼 교섭은 난항이었지만, 그 원인은 미국·EU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국 그룹과 일본·한국·홍콩 등 수출국 그룹의 견해가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과 타협의 산물인 국제AD협정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점에 관하여는 명확해진 면도 있다. 이들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에서 검토한다.

---

7) 國際반덤핑協定の 全文은, The GATT Secretariat,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Legal Texts (1994), pp. 168-196에 수록되어 있다.

## 2. 國際AD協定の 構成

협정은 다음과 같이 전체로 3부 18조와 2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 [ 제 1 부 (Part 1) ]

제1조 「원칙」, 제2조 「덤핑의 결정」, 제3조 「손해의 결정」, 제4조 「국내산업의 정의」, 제5조 「조사개시 및 실시」, 제6조 「증거」, 제7조 「잠정조치」, 제8조 「가격약속」, 제9조 「AD세의 과세와 징수」, 제10조 「소급효」, 제11조 「AD세 및 가격약속의 유효기간과 심사」, 제12조 「결정의 공고와 설명」, 제13조 「사범심사」, 제14조 「제3국을 위한 AD 조치」, 제15조 「발전도상국인 가맹국」

### [ 제 2 부 (Part 2) ]

제16조 「AD위원회」,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 [ 제 3 부 (Part 3) ]

제18조 「최종결정」

## II. 덤핑의 決定

덤핑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제 AD협정 제2조(2.1~2.7)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 덤핑의 定義

어떤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제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국

내시장에서의 소비용으로 제공되는 통상의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국내 가격)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당해 제품은 덤핑되고 있다(즉, 그 정상가액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본다(2.1).

## 2. 輸出國 國內市場에서 原價이하의 價格으로의 販賣 등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통상 거래에 있어서의 동종제품의 판매가 없고, 또한 당해시장의 특수성, 판매수량의 근소 등에 의하여 당해 제품의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 비교대상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동종제품의 제3국 방향 수출가격 또는 생산국에 있어서의 생산원가+합리적인 일반관리비, 판매비 및 이익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가액(구성가액)의 비교를 대상으로 한다(2.2).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행하여지는 수출국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판매 또는 제3국방향 판매는, AD당국이 이러한 판매가 장기에 걸쳐(extended period), 실질적 수량으로 행하여지고, 합리적 기간에 있어서의 모든 원가의 회수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다(2.2.1). 이 경우에 「장기」란 통상 1년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으로 한다(2.2.1. 주).

또한 「실질적 수량」이란, 조사대상의 거래의 판매가격의 가중평균이 1단위당 원가의 가중평균 이하이고, 또한, 1단위당 원가 이하의 가격에서의 판매수량이 조사대상거래의 판매수량의 20%를 하회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2.2.1. 주). 이상의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의 회계원칙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2.2.1.1.).

수출국의 국내판매가 원가이하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종전부터 인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덤핑

인정으로 이어지기 쉽고, 통상(通商)상의 장벽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실례로서도, 예컨대, 미일반도체협정에 관련하는 미국상무성의 일본제 반도체의 덤핑조사에 있어서는, 일본기업이 행하고 있었던 포워드 프라이싱(forward pricing)을 무시하고, 구성가액을 사용하여 일본제 반도체의 국내 가격을 산정하였다. 포워드 프라이싱이란, 반도체 메이커가 신제품을 발매할 경우, 발매시에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한다면 극히 고액으로 되어 판매 불가능하게 되므로, 낮은 가격(코스트 이하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양산효과 등으로 원가가 체감되게 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가격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가격관행이 있다.<sup>8)</sup>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판매가 장기에 걸치고, 실질적수량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건의 내용의 명확화가 도모되고 있는 점 및 수출국의 회계원칙에 준거해야 할 점이 정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구성가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 판매비 및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판매하는 조사대상제품의 동종제품에 관한 현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행한다(2.2.2.).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① 당해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국시장에서 같은 일반적 카테고리(범주)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
- ② 조사대상이 된 다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국시장에 있어서 동종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가중평균,
- ③ 다른 합리적인 방법

8) 이에 관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편 2001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pp. 76-78면 참조



에 의하여 산정이 행하여진다. 다만 이 계산에 있어서 이익은 제품의 원산국에 있어서 다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마찬가지로의 일반적 카테고리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통상 실현되는 이익을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종래 미국 및 EU의 AD법 시행에 있어서는, 구성가액의 산정방법이 큰 문제점이 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일반관리비는 원가의 10%를 하회하지 않을 것, 이익은 원가+일반관리비의 8%를 하회하지 않아야 된다고 법정되어 있다. 또한, EU에서도 인위적으로 높은 일반관리비 및 이익률을 사용하여 국내가격의 계산을 행하였다. 그래서 수출기업의 현실적 이익률이 낮더라도 구성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높은 관리비와 이익이 계상(計上)되어, 정상가액이 높게 산정됨으로써 덤핑 마진이 「창설」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구성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관리비, 이익은 될 수 있는대로 동종제품 및 동업의 사업자에 관한 현실적 숫자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AD협정과 비교하여, 진보한 것이다.

### 3. 構成輸出價格

수출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수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연합(聯合)관계(예컨대, 수출기업과 수입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수출가격은 수입업자가 조사대상제품을 최초로 독립한 제3자에게 재판매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당해 제품이 독립한 제3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혹은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AD

당국은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구성수출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2.3).

#### 4. 價格比較

가격비교는 덤핑계산상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지만, 국제AD협정 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는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 (a) 去來의 同一段階

가격비교에 있어서는 거래의 동일단계(통상은 공장도(工場渡) 가격의 단계)에 있어서, 또한 될 수 있는대로 동일시점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가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要因)에 대하여는, 사례마다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성질에 관한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모든 요인을 들 수 있다.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부터 재판매 사이에 발생한 비용(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다) 및 이익에 대한 타당한 참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이들에 의하여 가격비교가능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AD당국은 구성수출가격과 동등한 거래 단계에서 있어서 정상가액을 확립하고, 혹은 타당한 참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4).

또한 수출가격과 비교되어야 할 정상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熱延鋼板 사건에 있어서 상급위원회는, 수출국내시장에 있어서 수출업자(국내 메이커)가 관련회사에 당해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덤핑당국은 이 판매에 갈음하여 당해

관련회사가 독립 제3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9)</sup>

(b) 外換 換算

가격비교에 있어서 외환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산은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일(date of sale)의 외환율로 행한다. 이 경우의 판매일이란, 계약일(date of contract), 구입주문일(purchase order), 주문확인일(order confirmation), 또는 인보이스(送狀)일이다. 다만 외환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조사에 있어서 외환변동은 무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수출업자는 조사기간 중 외환의 변동에 있어서 수출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60일 간의 여유가 주어진다(2.4.1).

(c) 加重平均價格과 個別價格

가격비교는, 통상적으로는 정상가액의 가중평균치와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치와의 비교에 의하여 행하며, 또는 개별거래마다 정상가액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AD당국이 수출가격의 패턴이 상이한 거래, 지역, 시기에 따라서 현저히 상이하고, 가중평균된 정상가액과 가중평균된 수출가격의 비교, 또는 개별적 정상가액과 개별적 수출가격의 비교를 통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참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AD당국은 가중평균에 의하여 확립된 정상가액을 개별적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2.4.2).

(d) 中間國을 經由하는 輸出

어떤 제품이 그것의 원산국으로부터 중간국으로 수출되고, 그것이 다시

---

9) 주 20) 참조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수출국에 있어서의 당해 제품의 국내가격과 그것의 수입국방향의 수출가격의 비교를 행한다. 그러나 당해제품이 단순히 옮겨 실기 위하여 중간국에 수출되는 경우, 또는 수출 국내에서 그 제품이 제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출국에는 비교가능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원산국의 국내가격을 비교의 기준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다(2.5).

(e) 同種製品

본 협정에서는 동종제품(like product)이란, 동일(identical) 제품(당해제품과 모든 점에서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해제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제품을 말한다(2.6).

(f) 해 설

덤핑의 결정부분에 관해서는 국제AD협정은 이전의 AD협정에는 없었던 몇 개의 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외환 환산의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외환 환산의 문제는 종전부터 특히 미국 AD법의 적용에서 문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 AD법에서는, 종래는 기업의 거래개시 때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이 일정한 환율과 당해 4반기의 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레이트(率)의 차가 5% 이내이면 후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대미수출이 재미수출자회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미수출자회사가 미국내의 독립한 제3자에게 당해제품을 재판매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급격한 「엔고(円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해제품의 수출판매일(수출계약일)에는 덤핑마진이 없더라도,

실제의 수출일 또는 재판매일에는 덤핑 마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제AD협정은 이 점에 배려하여, 외환 환산은 수출제품의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한 외환변동에 대응하여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60일이 정해진 것도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판매일」이 해석에 대해서는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종래의 AD협정에 비교하면 진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가중평균가격 베이스 또는 개별가격 베이스로 비교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점은 종전보다 미국, EU의 AD법시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 EU의 AD법에 있어서는, 모든 덤핑사건에 있어서, AD당국은 가중평균된 정상가액과 개별적 수출가격과를 비교하여, 개별적 수출가격이 가중평균된 정상가액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즉, 덤핑·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것을 제로로 계산하고(즉, 이것을 무시하고), 개별적 수출가격이 정상가액을 하회하고 있는 경우(즉, 덤핑·마진이 플러스인 경우)만을 거론하여 덤핑인정을 행하여 왔다. 이것은 이른바 「애버리징」(averaging)의 문제이지만, 이에 대하여 일본기업 기타로부터 비판이 행해지고, 대 EC위원회 제소도 있었다.<sup>10)</sup>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있어서 수출국측에서 이 점의 시정을 「규율강화」의 중요항목으로 주장했지만, 그 결과가 상기와 같은 규정으로 되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2개의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는, 원칙으로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가중평균가격 또는 개별적 가격의 어느 쪽으로 행하고, 가격계산방식의

---

10) Judgment of the Court (Fifth Docket) ; Case 258/84, 7 May 1987 ; Case 260/84, 7 May 1987.

대칭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이것은 큰 진보라고 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자연적인 평가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이전의 AD협정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해석상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도 생각되지만,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하는 형식이며,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가중평균된 정상가액과 개별적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종래 행해지고 있었던 미국, EU의 방식을 공인한 것이 되고, 도리어 AD법 강화에 이어진다고 하는 평가이다. 더욱이 이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은 일반적, 추상적인 문언으로 쓰여져 있고 해석의 폭도 넓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AD법 강화의 경향이 생길 염려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해석도 그 나름으로 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종래의 미국, EU의 AD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항상적으로 가중평균된 정상가액과 개별적 수출가격의 비교가 행해졌던 바, 현행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는 한, 일정한 방지책은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의 인도산 리넨사건<sup>11)</sup> <sup>12)</sup>은 EC의 인도섬유제품에 대한 AD법의 적용에 관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의 WTO 패널 및 상급위원회는 EC가 행하고 있었던 「제로잉」(zeroing)이 AD협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EC는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리넨에 대하여 AD세를 부과한 것이지만, EC는 리넨의 몇 가지 타입마다 인도의 가중평균의 대 EC 수출가격과 인도의 같은 가중평균의 국내가격을 비교하였다. 어떤 타

11) European Communities-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D141/R, 30 October 2000. (패널 報告書)

12) WT/DS141/AB/R, 1 March 2001. (上級委員會報告書)

이프에 관해서는 수출가격쪽이 국내가격보다도 낮아, 따라서 덤핑·마진이 있고, 어떤 타입에 관해서는 수출가격쪽이 국내가격보다도 높아 마이너스 덤핑 마진이 있었다. 그래서, EC는 이들을 총계하여 인도산 리넨에 관한 덤핑 마진을 산정했는데, 이때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로」로 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AD협정 2조 4항(2)가 국내정상가액(국내가격)의 가중평균치가 비교가능한 「모든」가중평균된 수출가격과 비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착안하여, EC는 본건에 있어서는 모든 수출가격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수출가격에 관한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로로 계산한 것은 부적절한 계산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패널의 판단은, 상급위원회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 패널 및 상급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로잉」의 위법성은 명백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II. 損害決定

#### 1. 損害

손해결정을 위한 규정은 국제AD협정 3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material injury), 실질적 손해의 「염려」(threat) 및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이 포함된다(3조 주).

#### 2. 輸入數量 및 價格

손해결정은, ①덤핑제품의 수입수량 및 덤핑제품의 국내동종 제품의 가

격에 대한 영향, 그리고 ②이들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영향에 관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으면 안된다(3.1).

덤핑 제품의 수입수량에 관해서는, AD당국은 덤핑제품의 수입수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증가」(significant increase) 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가격에 관해서는 덤핑제품이 동종의 국내제품보다도 현저히 저가격으로 판매되고(undercutting) 있는지, 이러한 수입이 가격을 억압(depress)하고 있는지, 혹은 가격상승을 저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들의 하나 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인정에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3.2).

### 3. 損害의 集積

複數國으로부터의 동일제품에 대하여 AD조사가 병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있는 한, AD당국은 이들 복수국으로부터의 덤핑제품의 영향의 집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①각각의 수출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출이 「미소」(de minimis)(5조 8항 참조) 이상이며, 수출량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및 ②당해수입품 상호상황 아울러 수입제품과 동종의 국산제품과의 경쟁상황에서 보아, 이러한 집적이 적절할 것.

### 4. 損害의 指標

손해의 결정에 있어서는, 손해의 요인이라 될 모든 경제적 지표를 검토해야 하지만<sup>13)</sup>, 이 중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4). 즉 ①현실의 또는 잠

13) Thailand-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n 9 n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재적인 판매, 이익, 산출량, 시장점거율,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생산설비가 동, ②국내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③덤핑·마진의 크기, ④캐시플로우(현금의 흐름)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악영향, ⑤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 및 투자수행능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 리스트는 아니고 이들의 하나 또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손해결정에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sup>14)</sup>

## 5. 因果關係

덤핑수입에 의하여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인과관계 확립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AD당국은 당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덤핑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들의 다른 요인에 의한 손해를 덤핑수입에 돌려서는 안된다. 熱延鋼板 덤핑사건<sup>15)</sup>에 있어서, 패널은 덤핑에 의한 손해를 판단하는 경우, 덤핑에 의한 손해와 다른 요인에 의한 손해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상급위원회는 이 판단을 번복하고, 덤핑당국은 덤핑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손해를 덤핑에 의한 손해로부터 분리하여 판단하고, 또한 덤핑에 의한 손해를 판단하고, 덤핑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손해를 덤핑에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

---

WT/DS122/AB/R, 12 March 2001.

14) 멕시코·콘 시럽 AD사건(supra 주 16)에 있어서, 패널가맹국의 AD당국은 손해인정을 하는 경우, AD협정 3조 4항에 열거되어 있는 요인의 모두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5) 주 18)의 문헌을 참조.

면 안되는 요인은, 덤핑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축소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외국 및 국내산업에 의한 제한적 거래관행 및 경쟁, 기술의 발달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을 포함한다(3.5).

## 6. 損害의 猨려

손해의 猨려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AD당국은 예를 들면, ①덤핑 제품의 국내시장에의 현저한 증가율 및 수입의 실질적 증가의 개연성, ②수출업자의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및 덤핑수입의 실질적 증가의 개연성, ③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또는 억압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않은지, ④조사대상제품의 재고 등의 요인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상 요인 어느 하나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 관련있는 요인의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멕시코 콘시럽사건<sup>16)</sup>에 있어서, 패널은 AD당국이 「손해의 猨려」를 인정할 경우에는, AD협정 3조 7항에 정하는 요건뿐만 아니라, 손해인정의 요건을 정하는 AD협정 3조 4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손해의 猨려를 판단하는 AD당국은, 손해 猨려의 요건과 더불어 손해의 요건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7. 解説

덤핑수입에 의한 실질적 손해의 발생은, AD인정의 2대 요건 중의 하나

---

16) Mexico-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from the United States, WT/DS132/R, 28 January 2000.

이지만, 국제 AD협정은 이에 대하여 개략 이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특징이 있는 점을 든다면, 다음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손해의 집적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에 복수국으로부터 덤핑수입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수입국의 AD당국은 이들 덤핑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집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A국을 수입국으로 하고, A국에 B, C, D국으로부터 X상품이 덤핑수입되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B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은 단독으로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C, D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의 효과도 집적(集積)하면, B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은 A국의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경우, B, C, D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을 집적하여 손해의 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긍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있어서도, 미국AD법 등에서 실제상 이러한 손해의 집적은 인정되고 있었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문화하여 명확화를 도모한 사실에 특색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종래의 관행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것은 아니지만, 손해집적은 AD법 규제강화에 결부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운용이 요망된다.

둘째, 손해인정에 있어서 덤핑·마진의 크기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덤핑·마진의 크기가 덤핑수출과 수입국의 경합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덤핑·마진과 프라이스 커팅(덤핑 가격과 수입국의 국내산업의 가격과의 차)의 관계를 조사하고, 전자가 후자와 같고, 또는 보다 큰 경우에는 덤핑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수출제품의 수출국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을 100으로 하고, 그 수

출가격을 80으로 하고, 덤핑·마진을 20으로 하자. 이 경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을 90으로 하면, 프라이스 커팅은 10이다. 국내산업의 판매가격을 100으로 하면, 그것은 20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가격을 110으로 하면, 그것은 30이 된다. 이와 같이, 덤핑·마진이 프라이스 커팅보다도 크거나, 양자가 같을 경우에는 덤핑과 손해의 인과관계는 확립하기 쉽게 된다.

덤핑과 국내산업에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케네디·라운드에서의 국제 덤핑협정에 있어서는, 덤핑이 손해의 「주요원인」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양자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덤핑에 대하여 AD법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하는 미국의회 등의 비판이 있고, 미국에서는 국제덤핑협정과 미국내법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AD집행기관은 미국AD법을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법률을 제정시켰다.<sup>17)</sup> 東京라운드에 있어서의 국제 덤핑협정은 보다 애매한 규정을 두고, 「덤핑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덤핑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데 그쳤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체결된 국제AD협정은, 기본적으로는 이 입장을 승계하고, 이것을 약간 상세하게 한 것이다.

#### IV. 國內産業

AD세는 덤핑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받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이 「국내산업」에 관해서는 국제협정 4조에 정의(定義)가 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국내산업이란, 덤핑제품과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의 전부 또는 그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다(4.1).

17) 松下滿雄 「미국 반덤핑법과의 국제반덤핑협정의 저축」 해외상사법무 91호 (1970년) 참조.

그러나, 국내생산자가 당해 덤핑제품의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국내생산자가 그것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은 이 국내생산자 이외의 국내생산자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4.1(i)). 「관련을 가지는」에는, ①국내생산자와 수출업자의 어느쪽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②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 지배·피지배관계에 의하여 당해 국내생산자가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교하여, 상이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한다(4.1(i) 주).

이상과 같이, AD협정은 덤핑에 의하여 국내산업 전체가 손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근의 熱延鋼板 덤핑사건<sup>18)</sup>은 이점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 당국이 일본제 열연강판이 덤핑에 의하여 수입되고, 이것에 의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내법에 따르면 미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위원회는 「第1義的으로」 산업의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제무역위원회는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미열연강판시장 중에 「상인시장」(merchant market)(즉, 당해제품이 시판되고 있는 시장)을 검토했으나, 「자가(自家)소비용 생산」(captive production)(즉, 미국내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시장점거율 등을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패널 제소가 행하여졌는데, 패널은 이 미당국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일본측의 상소에 의하여, 이 논점은 상급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받게 되었다. 상급위원회는, 미국내법이 산업의 어느 일정부

18) United States-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Report of the Panel, WT/DS184/R, 28 February 2001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84/AB/R, 24 July 2001.

분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AD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했는데, 「상인시장」을 검토하면서 「자가소비용 생산」을 제외하는 것은 AD협정에 의하여 요청되는 객관성, 공정성을 결한다고 하여 이 미당국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패널보고서를 번복하고, 이것을 위반이라 하였다.

## V. 調査節次

AD법 시행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제AD협정 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조사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調査

원칙으로는, AD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한, 또는 국내산업을 위한(on behalf of) 서면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개시된다(5.1).

신고서에는 ①덤핑, ②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및 ③ 덤핑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reasonably available)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5.2). 그리고, AD당국은, 신고서에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5.3). 조사개시는 AD당국이 당해 신고가 국내산업에 의하여 또는 국내산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신고는 당해 신고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당해 덤핑제품과 동종 제품의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 중

50% 이상을 점하는 국내생산자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의하여, 또는 그것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고에 명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내생산자가 동종제품의 국내총생산 중 25% 이하의 점거울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AD당국은 조사개시를 해서는 안된다(5.4). 이전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국내산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덤핑의 조사개시의 신고를 수리하고 조사개시가 행하여진 예가 있었다.<sup>19)</sup> 이러한 관행은 AD조치의 남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교섭이 행하여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규정이 설정되었다.

특별한 상황하에 있어서 AD당국이 국내산업에 의한, 또는 국내산업을 위하여 행하여진 신고가 없었는데도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덤핑, 손해, 그리고 양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5.6).

AD당국이 덤핑·마진이 「미소(微小)」(de minimis)하며, 또는 덤핑제품의 수입량 혹은 손해가 보잘 것 없다(negligible)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는, 덤핑·마진은 미세하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제품의 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제품의 총수입 중 3%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은 그 수입수량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복수의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을 개별적으로 보면 3% 이하일지라도, 그들의 수입을 합계하면 7%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8).

조사는 통상은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종료하지 않으면 안되고, 어떠한

---

19) United States-Antidumping Duty on Stainless Steel Pipe from Sweden, Panel Report, 20 August 1990, ADP/47, unadopted.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5.10).

## 2. 證 據

국제AD협정 6조는 증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는 조사개시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출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제출자가 제출증거에 대하여 비밀취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거는 비밀취급으로 된다. 이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규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AD당국은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당해증거에 대하여 비밀이 아니라는 요약(要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6.5.1). AD당국이 어떤 증거의 비밀취급 청구에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증거의 제출자가 당해증거의 개시(開示)에 대하여 비협력적인 경우에는, AD당국은 당해증거를 무시할 수 있다(6.5.2).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또는 보다 상세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AD당국은 다른 가맹국의 영토 내에서 검증을 행할 수도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고, 나아가 당해 가맹국정부에 통지를 하여, 당해 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6.7).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기간내에 필요한 증거의 제공을 거부하고, 또는 조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에는, AD당국은 가결정 또는 최종결정을 「입수할 수 있는 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6.8)<sup>20)</sup>

AD당국은 알려져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계하는 제품의 수가 극히 많고, 이러한 개별적 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링 방법에 의하여, 일정수의 이해관계 당사자 및 제품에 대하여 계산을 행할 수 있다(6.10).

AD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공업유저(user)에 대하여, 또한 당해제품이 통상 소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덤핑,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6.14).

### 3. 解 說

20) 前述한 熱延鋼板事件(United States-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Report of the Panel. WT/184/R, 28 February 2001 ;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 184/AB/R, 24 July 2001)에 있어서는, 이 「알 수 있었던 사실」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다. 미 정부는 일본수출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일본 수출업자의 자료제출은 제출기한에 약간 늦었으므로, 미 당국은 이 자료를 무시하고 알 수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급위원회는 자료제출이 기간에 늦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사실」의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한에 늦은 이유 및 본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했을 것이다 하여, 미 정부의 「알 수 있었던 사실」의 판단을 AD협정 부적합(AD협정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의 1명은 川崎製鐵(株)(KSC)이었는데, 미 당국은 同社에 대하여 당사(當社)의 제품수입자인 미국에 있어서의 舍辨子會社(CSI)의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을 제출한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KSC는 CSI에 대하여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CSI는 이 반덤핑 제조의 신고자의 한사람이었다. 미 당국은 이것을 KSC가 조사에는 비협력이라는 것의 표상(表象)이라고 하여,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덤핑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WTO제소를 하고, 패널 및 상급위원회는, 미 당국이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은 AD협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微小」(de minimis)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화가 피하여지고 있고, 덤핑신고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도 명확화가 도모되고 있다. 덤핑의 신고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위하여 신고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덤핑신고가 당해 국내산업에 거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국내산업 중에서도 극히 근소한 점유율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를테면 「남소(濫訴)」의 방지규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덤핑의 신고에는 「원고적격」이 필요하다. 국제AD협정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산업이 덤핑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국내생산자의 적어도 50%를 점하는 생산자가 이에 찬성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찬성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는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의 적어도 50%를 점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건을 포함으로써, 남소(濫訴)를 방지하고 있다.

종래 미국의 AD법 시행에 있어서는, 덤핑의 신고를 하는 자가 국내생산의 극히 근소한 점유율밖에 점하고 있지 않은데도, 국내산업을 구성하는 다른 기업이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 의하여 이러한 신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AD법 남용의 한 사례로서 거론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이러한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 VI. 暫定措置

AD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덤핑의 최종결정 전에 당해 수입품의 뛰어들기 수입의 급증 등이 예상되어, 잠정적으로 조치(잠정적 AD세의 징수 또

는 현금, 유가증권 등 담보예탁(豫託)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이지만, 국제AD협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17조에 의하면, 잠정조치는 ①당해안건에 대하여 긍정적 가결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이 행해지고 있고, ② AD당국이 조사 중에 발생하는 수가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7.1.(ii)(iii)). 잠정조치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기간이어야 하며, 원칙으로서 4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되지만, 당해수출거래의 실질적비율을 점하는 수출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6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7.4).

## VII. 價格約束

덤핑조사는 AD당국에게도 피조사자에 대하여서도 비용과 노력이 들므로, 피조사자가 AD당국에 덤핑의 자주적 제거를 신청하여, 이것을 AD당국이 받아들여 덤핑조사를 중단하여 안전을 해결할 수가 있으면 쌍방에게 모두 편하다. 그래서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협정 8조의 규정이지만, 이에 의하면, 수출자가 AD당국에 대하여 수출가격 개정 또는 덤핑수출의 중단을 약속하고, AD당국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여 덤핑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8.1). AD당국은 당해 안전에 있어서 덤핑과 손해에 관하여 긍정적 가결정을 행한 후에만, 가격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8.2). 가격약속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수출업자가 청구하는 경우 또는 당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덤핑조사를 속행할 수 있다(8.4). 수출업자로서는 잠정적으로 덤핑조사를 중단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덤핑 또는 손해의 사실

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약속을 신청하여, 동시에 조사속행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덤핑 및 손해의 유무에 대하여 부정적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실효한다(8.4).

수출자측의 가격약속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AD당국은 잠정조치를 포함한 신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8.6).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 AD세는 잠정적조치 적용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소급하여 적용되는 수가 있다.

## VIII. AD稅의 賦課와 徵收

### 1. AD稅額의 最高限度

AD세는 덤핑·마진을 최고한도로 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의 세액으로 덤핑으로부터 생기는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액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1). AD당국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공급자를 특정하여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출국으로부터 복수의 수출업자가 수출을 행하고, 이들 모든 자를 지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국을 지명할 수 있다. 1국 이상의 수출국으로부터 복수의 수출자가 수출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AD당국은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모든 수출국을 지명할 수 있다(9.2).

### 2. Duty as a Cost의 禁止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AD세의 환부(還付)가 행하여지는 때

에는, AD당국은 정상가액,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한 비용 및 후의 판매가격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 재판매가격의 변화를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AD당국은 상기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수출가격을 결정할 때에 AD세로서 지급된 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9.3.3.).<sup>21)</sup>

### 3. 未調査者에의 課稅

미조사자에의 AD세 과세는, 특정된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결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를 초과해서는 안되고(9.4 (i)), AD세 과세가 장래적인 정상가액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가중평균정상가액과 개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9.4.(ii))<sup>22)</sup>. 그리고 AD당국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자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서는 개별적 세액의 AD세 또는 정상가액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9.4.(ii)).

### 4. 溯及效

잠정조치 및 확정적 AD세는, 전기한 절차에 따라 AD결정(잠정조치 또

---

21) Duty as a Cost(지급될 AD세의 코스트 산입)(이것의 상세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편·2001년판 不公正貿易報告書 100-102면 참조)는 종전보다 EC의 덤핑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AD협정이 성립했을 때에, 이 규정이 담겨졌다.

22) 熱延鋼板事件(주 20) 참조)에 있어서, 상급위원회는, 이 덤핑 마진의 평균치를 산출하는 경우, 부분적이긴 하지만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된 덤핑 마진은 제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는 최종적 AD결정)이 행하여진 후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된다(10조, 10.1). 그러나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AD세는 소급적으로 부과될 수가 있다(10.2). 그러나 AD당국이 ①덤핑의 전력(前歷)이 있고,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알아야 할 입장에 있고, ②단기간에 있어서 대량의 덤핑제품의 수입 등에 의하여 손해가 생기고, 그 결과, AD조치에 의한 구제효과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적 AD세는 잠정조치적용일 이전의 90일 이내의 기간에 있어서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0.6). 이 규정은 「위기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 5. AD세의 存續其間, 再審査, 價格約束

AD세는 덤핑이 행하지고 있는 동안 존속하지만, 그 부과결정 이후 5년 이내에 실효하게 된다. 다만, AD당국이 직권 또는 국내산업에 의한(혹은 그것을 위한) 요청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AD세의 실효가 덤핑과 손해의 계속 또는 재발에 결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조, 11.3). (최승환, 상계서, 2001, 311면 참조)

## 6. 解 說

이상의 것 중 국제AD협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언급한다. 우선 Duty as a Cost의 금지인데, 종래 EU의 AD법에 있어서는, AD인정을 받은 수출업자가 EU역내의 수출관련회사를 통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 덤핑·마진분만 수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구성수출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EU의 AD당국이 이미 지급된 AD세액을 코스트로 하

여 공제하고 계산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이미 지급된 AD세액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없고, 환급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덤핑·마진의 2배의 가격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EU의 관행에는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국제AD협정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둘째로, 종래의 EU 관행에 있어서는, 미조사자에 대하여서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덤핑·마진의 최고한도의 것을 과하고 있었으나, 이것도 또한 과잉규제임은 명백하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도 명문으로 미조사자에 대한 과세는 결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로, 종래의 미국AD법에서는, AD세의 실효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아서, 일단 AD세가 적용되면 그것이 10년 이상(경우에 따라서는 20년)이나 되는 장기에 걸쳐 과하여지는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AD세의 존속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이러한 폐해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 그 예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AD세가 장기간 존속하는 사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IX. 司法審査

가맹국은, AD의 행정결정에 관하여 사법심사, 재정(裁定)제도, 또는 행정법원 등의 형식에 의한 신속한 심사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관은 AD결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13조).

## X. 第3國을 위한 AD措置

제3국의 당국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맹국은 AD조사를 행하여, 덤핑이 있고 그것이 제3국의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에는, AD조치를 취할 수 있다(14조).

## XI. 協議 및 紛爭解決

국제AD협정에 관한 가맹국의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WTO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가 적용된다(17조, 17.1). 가맹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은 분쟁처리위원회(패널)를 설치하고, 분쟁의 해결을 맡는다. 이 경우, 패널은 당해 안건의 사실의 평가에 있어서, AD당국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고 편견없이 객관적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17.6(i)). 만일 AD당국이 행한 그 사실 인정이 정당하고 사실평가가 편견이 없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패널이 상이한 결론을 도출할 경우에도 그 사실인정을 반복할 수 없다(17.6(ii)).

패널은, 국제AD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공법의 통상의 규범에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AD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만일 AD당국이 그 해석의 하나를 채용하고 있을 때는, 패널은 AD당국의 조치는 협정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17.6 (ii)).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WTO 가맹국간의 AD조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가 적용된다. 다만, 패널은 당해 안건에 있어서, AD당국이 행하였던 사실인정이 합리적이고 편견없이 객관



적인 경우에는, 그것에 구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AD협정의 문언(文言)은 애매하고 난해하지만, 요컨대 AD당국의 사실인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구속된다는 의미이며, 미국행정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sup>23)</sup>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동 협정에 있어서는, 국제AD협정의 어느 규정에 관한 복수의 해석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AD당국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패널은 당해 해석은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국제 AD협정이 UR에 있어서의 타협산물이므로, 필연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패널은 가맹국 AD당국이 이들 중에 있을 수 있는 해석의 하나를 채용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정당한 해석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패널의 해석의 폭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패널의 심사권한을 삭감하여, 가맹국의 AD법 남용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대단히 문제이다. 더욱이 WTO체제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 규정은 AD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장래 이것을 분쟁해결의 다른 분야에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경계해야 할 규정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23) NLRB v. Bradford Dyeing Works, 310 U.S. 318(1940) : Stuson, Substantial Evidence in Administrative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89 (1941), p.1026 et seq. ; Chevr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7 U.S. 837 (1984) ; Thomas E. Merrill, Judicial Defense to Executive Precedent, Yale Law Journal, Vol. 101 (1992), p.101 et seq.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는, Gohn H. Jackson, The Jurisprudence of GATT and the WTO (2000), pp.131-161 참조

24) 松下滿雄 「新國際 덤핑협정에 관하여」 國際經濟法 3號.(1994년) 74면 참조. 더욱이, 熱延鋼板 덤핑事件에 있어서, 상급위원회는 AD협정 17조 6항 (i) 및 (ii) 은 분쟁해결양해(DSU) 11조와 저촉(conflict)하는 것은 아니고, DSU 11조와

## XII. 迂回防止措置

### 1. 迂回防止措置란

우회방지조치(anti-circumvention measures)란, AD당국이 덤핑에 대하여 AD세를 과하는 경우, 수출국의 수출기업이 이것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회로서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제품에 대하여 AD세가 과하여지는 경우, 수출업자가 그 제품의 수출을 정지하고, 수입국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여기에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이것을 조립하여 이것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수가 있다. 또한 수입국내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에 같음하여 제3국에 공장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부품을 수출하고 여기서 조립한 것을 수입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공장진출은 아니고, AD세의 대상이 된 제품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어느 정도 상이한 제품으로서 이것을 수출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AD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UR에서 심한 격론이 행하여졌다. 수입국 그룹(미국, EC)은 우회방지조치를 AD협정상 합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국(일본, 한국 등)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갓트 사무국장 던켈은 3가지의 우회방지책을 담은 「던켈합의안」을 제시하여 타협을 도모하고, 각국도 이에 합의하는가 싶었으나, 미국의회로부터 반대가 일어나, 채택된 국제 AD협정에 있어서는 우회방지에 대한 규정은 전면적으로 삭제되었다.

---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United States-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Body, WT/DS184/AB/R, 24 July 2001).

## 2. EC 部品課稅事件<sup>25)</sup>

EC에 있어서는, 일본기업 등의 이러한 우회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7년에 규칙을 제정하여, 「부품과세」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어떤 수입품에 대하여 AD세가 부과된 후에, AD세 대상의 수출업자가 역내(域內)에 관련기업을 설립하여, 당해제품의 수입에 갈음하여 그것의 부품의 수입을 급증시켜, 이 관련기업의 현지조립에 의한 당해 제품의 역내생산이 행하여지고, 이 제품이 역내에서 출하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 수입부품부분이 부품의 60% 이상인 때에는 이것을 AD세의 우회로 보고 수입품 중 이 수입부품에 AD세를 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갓트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소하였다. 갓트·패널은 이 AD과세가 국경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EC역내의 현지관련기업의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어 이것이 출하되는 단계에서 AD세의 징수가 행하여지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차별적 내국세로서, 갓트에서 정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EC는 이 패널의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것은 갓트의 결정이 되었지만, EC는 이것의 시정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종결 후의 과제라고 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점을 둘러싼 검토는 UR에 넘겨지게 되고, UR에서는 「던켈합의안」에 의하여 타협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3. 던켈합의안에 있어서의 迂回防止措置

던켈합의안에서는, 우회방지조치의 합법화에 관하여서는, 수입국우회방

---

25) 이것에 관해서는, 岩澤雄司·WTO의 분쟁처리(1995) 및 柴崎洋一 「EEC의 스쿠류 드라이버 조항과 GATT 裁定」 國際商事法務 18권 9호 (1990) 954면 참조.

지, 제3국우회방지 및 컨트리호핑(Country Hopping)에 의한 우회방지의 세 가지 점이 인정되어 있었다.

수입국우회방지(동 협의안 12조 12.1)에 관하여서는, 수입국의 AD당국은 다음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AD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수입품의 부품으로 수입국내에 있어서 조립될(destined for assembly) 것을 당해 AD세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①이 부품을 사용하여 수입국내에서 조립될 제품이 AD세 대상제품과 동종제품일 것, ②이 조립이 AD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출업자와 관련되는 자에 의하여 수입국내에서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당해부품이 AD세 대상국에서의 AD세 대상기업에 의하여 획득(secure)된 것일 것, ④AD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AD조사개시 후, 수입국내에서의 당해부품을 사용하는 조립이 행해져(또는 급속히 확대되어), 당해부품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하였을 것, ⑤이러한 수입부품의 코스트가 수입국내에서의 당해제품을 조립하는 데 요한 부품코스트의 70% 또는 그 이상일 것. 다만, 수입국내에 있어서 조립에 의한 부가가치가 당해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부품은 AD세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⑥당해수입국내 조립제품의 가격과 이전에 판정되어 AD세의 대상이 된 수출국내에서의 동종제품의 가격 사이에 격차가 있을 것, ⑦이 조치가 국내산업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제3국 우회방지조치는 다른 규정(10조 10.5(소급에 관한 규정))에 담겨져 있었는데, AD세 대상제품과 동종제품이 상기 12조(2)~(5)의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3국에서 조립되어, 혹은 완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품의 수입에 관하여서는, 잠정조치의 적용일 이전 150일 이내의 기간에 소급하여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AD조사(가격차와 손해의 조사) 후에, AD세를 과할 수 있다.

컨트리호핑에 관해서는 10조 10.4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잠정조치의 적용이전 150일의 기간을 소급하여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AD조사 후에 AD세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즉,

- ① 조사대상제품이 이미 AD세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 동종제품이고 AD세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제3국)에 있어서 제조되고, 또는 거기에서 수출된 것일 것,
- ② AD세 대상국의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조사대상이 되어 있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품의 수출업자를 지배하고 있을 것,
- ③ 원래의 AD세 과세의 기초가 되었던 AD 조사개시 후에, 제3국으로부터의 동종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을 것,
- ④ 제3국에 있어서 조사대상제품의 생산이 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시설에서 행하여지고 있을 것, 그리고
- ⑤ 이상의 제품수입에 의하여 현존의 AD세의 효과가 감쇄될 것.

#### 4. 迂回防止措置의 國際AD協定上の 合法性

「던켈합의안」에 있어서의 우회방지조치는 전술과 같이 미국(특히 의회 등)의 반대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 이 미국정부의 반대이유는, 이와 같이 우회방지조치를 3개의 유형으로 하는 것은, 우회방지조치의 범위를 이 3개로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견해로서는, 이 이외에도 우회는 있을 수(예를 들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어떤 제품에 대하여 AD세가 과하여진 경우, 수출업자가 제3국(A국)에 관

런기업을 설립하고, 다른 제3국(B국)에 부품제조의 관련기업을 설립하여, B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A국에 수출하여 여기서 조립하여, 이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있고, 한정열거라고 해석되는 규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의 국제 AD협정에 있어서 우회방지는 인정될 수 있을까. 미국, EU의 해석으로는, 아마 협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국내실시법에서 우회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던켈합의안」에 있었던 우회방지규정이 삭제된 것은, 이러한 우회방지규정은 국제AD협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해석을 채용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불명하지만, 일본의 국제AD협정실시법(관세정율법)에서는 우회방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제AD협정은 AD세는 조사를 행한 후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사 없는 부품 등에 대한 AD세의 부과는 협정위반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관하여 AD세 부과 결정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제품의 수입에 갈음하여 부품의 수입이 행해지는데, 수입국내에서의 부품의 수입이 행해지는데, 수입국내에서의 조립은 극히 간단한 것으로, 부가(附加)된 부가가치도 극히 근소한 경우에는, 이것은 실질상 AD세의 「탈법」에 가까운 것이며, AD세의 범위를 이것에도 미치게 하여, 부품수입시에 AD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튼, 우회방지조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금후 WTO 내에 설치되어 있는 AD위원회에서 검토되도록 되어 있으며, 언젠가 무슨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 제 3 절 WTO의 國際반덤핑 協定과 主要國에서의 반덤핑 法規

#### I. 主要國에서의 반덤핑 法規

종전부터 AD분야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가 「빅 포어」(Big Four)로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이외의 국가에서도 AD법의 적용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일본에서도 AD법인 관세정율법의 적용이 활성화하는 방향에 있다.

주요국에서의 AD법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細部的)인 점에 관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 골격은 1994년의 갓트 6조 및 국제AD협정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①덤핑, ②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 및 ③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AD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AD법의 상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생략하고, WTO체제성립에 따라, 주요통상국가인 미국, EU, 그리고 일본이 국제AD협정을 어떻게 국내법화했는가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반덤핑관세협정」에 관해서는

崔昇煥, 국제경제법, 2판, 2001. 3. 300-314면 참조.

徐憲濟, 국제경제법, 309면 참조.

#### II. 美國의 반덤핑法<sup>26)</sup>

---

26) 미 반덤핑법은 우루과이 라운드 실시법의 일환으로 1994년말에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공정무역센터·해설 - 미국 안티덤핑법(1994년),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 편·1995년판 不公正貿易報告書 제1부 총론 제5장 「주요국(미

미국의 AD법에서는, 덤핑결정에 있어서 가격조사는 미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이 행하고, 손해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AD법은 1921년에 제정 이후 수많은 변천을 거쳤는데, 현행법은 1994년 WTO 실시법에 의하여 1930년 관세법에 추가된 AD규정이다. 이에 의하여, AD법(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하여 1930년 관세법에 추가된 AD규정)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가하여졌다. 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 1. 價格比較

### (1) 費用控除의 非對稱性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의 비교에 영향이 있는 때에는, ①구성된 수출가격에 관계되는 거래단계에 상당하는 국내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액을 설정하도록 조정할 것, 또는 ②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다.

종래 미국의 AD법에서는, 구성수출가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제3자 판매가격으로부터 전 판매경비(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를 공제하는데 대하여, 정상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판매경비 중 당해판매에 직접 관

---

국 및 EU)의 UR실시법」, 미국의 반덤핑관세제도에 관해서는 ; 崔昇煥, 上掲, 506면 이하 ;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2002. 2. 다산출판사, 342면 G·크레인 펠드·未谷三以·原若葉 「신·미국안티덤핑법」 「국제상사법무」 Vol. 23, No. 1 (1995년) ; 또한 「미국행정부에 의한 미국안티덤핑법」의 해설로서는,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Texts of Agreements, Implementing Bill,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Required Supporting Statements.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03d Congress, 2d Session, House Document 103-316, Vols. 1 and 2 (September 27, 1994)



계하지 않는 간접경비는 미국내의 당해 관련자에 대하여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ESP offset(exporters sales price offset)라고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수출업자의 수출국내에서의 간접판매비가 수입국내의 관련자의 간접판매비보다도 높더라도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의 WTO 실시법에 포함되는 AD규정에 있어서는, 구성수출가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경비로부터 이익도 포함시켜 공제하고, 정상가액에 대해서는, 거래의 단계를 조정함으로써 구성수출가격의 경우에 상당하는 경비의 공제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 ESP offset의 문제는 일단 해결되어 있지만, 다만, 이 상거래의 단계의 조정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ESP offset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운용상 이 상거래의 단계의 조정이 적절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2) 애버리징

미국의 AD법에 있어서는, 종래 덤핑의 계산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대해서는 이들의 가중 평균을 취하고, 이것을 개별적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도 낮을 경우(즉, 덤핑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전자가 후자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덤핑 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는 관행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AD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상가액으로서 가중평균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에 대해서도 가중평균을 채용하고, 정상가액에 대하여 개별가격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에 대해서도 개별가격을 채용하여,

양자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WTO실시법에 있어서는, 국제AD협정이 「조사절차」에 관하여 이상의 계산방식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당초의 AD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정상가액 및 수출가격을 계산하지만, 이것은 행정적 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여, 행정 재심사에 관해서는 가중평균한 정상가액과 개별적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AD협정의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미국내 AD법의 개정을 행한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 AD협정의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3) 構成價格의 利潤率

미국 AD법에 있어서는 종래는 정상가액으로 구성가액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는 원가의 적어도 10%, 이윤은 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의 적어도 8%를 가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익률 등이 실제보다도 높게 계산되게 되어, 인위적으로 덤핑 마진이 「창설」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이윤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실제 이익에 근거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국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국제AD협정의 취지에 따른 개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AD법의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으로 되지만, 앞으로는 대체적이윤율의 설정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에 대한 운용이 주목되는 바이다.

27) 일본 經濟産業省 通商政策編. 2001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72~73면.

#### (4) 換 率

국제 AD협정에서는 덤핑의 결정에 있어서, 수출판매가 행하여진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정상가액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와 동 취지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2. 損害決定

미국 AD법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덤핑에 의한 국내산업에의 실질적 손해의 인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일본제 프랫패널사건에 있어서는, 동종의 제품이 아닌 4개의 제품이 조사대상이 되었지만,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들 4개의 제품을 한목음으로 하여 손해인정을 행하였다. 만일 이들 제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손해없는 것으로 되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서도 손해있다는 판단으로 되었다.<sup>28)</sup>

미국 WTO 실시법에 있어서 특필할 점은, 조사대상이 되는 수입품의 국내 점유율의 산정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국내생산량으로부터 미국산업의 자가소비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분자가 되는 수입량으로부터는 국내생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품(수입당사자가 자가소비하는 제품 등)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공제가 균등하게 행하여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수입품의 점유율의 변동이 크게 계산되기 쉽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 18)에서 인용한 상급위원회보고서에 있어서의 판단에 의하여 우선

---

28) 註 27)의 문헌 74~95면.

해결되었다.

### 3. 調査節次 및 課稅上の 諸問題

#### (1) 申告適格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덤핑이 어떤 경우의 국내산업의 신고적격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소를 지지하는 자의 생산량이 반대하는 자의 생산자를 상회할 것, 및 신고를 지지하는 자의 생산량이 국내생산량의 25%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취지에 따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미국 AD법에 있어서는 신고적격의 판단이 매우 애매하여, 국내산업 중의 근소한 점유율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신고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비판이 있고, 또한 이것을 갓트위반이라고 하는 갓트 패널의 결정도 있고 하여, 국제AD협정 취지에 따른 개정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 (2) 충분한 증거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덤핑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예시되고, AD당국은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는데, 미국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취지에 따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3) 행정 재심사

국제AD협정에서는, 통상 1년 이내에 행정 재심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표

시되어 있는데, 미국 WTO 실시법에서는, 이 취지에 따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4) 선세트 條項(失效條項)

종래의 미국 AD법에 있어서는, AD세의 과세결정이 있는 후에, 그 실효의 규정이 없었던 탓으로 AD세의 부과가 10년, 20년으로 계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선세트조항의 도입이 의무지워 있어, AD세 부과 후 5년으로 AD세는 자동적으로 실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AD당국이 재심사를 행하며, 덤핑과 손해가 재발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하여, 미국 WTO 실시법에서는, 이 취지에 따라 AD과세 결정 후, 5년 후에 AD세는 자동 실효하도록 정하여졌다.

### 4. 迂回防止措置

미국AD법에서는, 종전부터 우회방지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AD세 과세결정 후, 과세대상품과 동종제품이 당해 명령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에 의하여 미국내에 있어서 제조되고 있고, 당해 제품의 가액과 당해부품의 가액의 차가 작을 경우, 즉 미국에 있어서 부가된 부가가치가 작은 경우에는, 미국 AD당국은 AD명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고려요인으로서는,

- ① 통상(通商)의 패턴,
- ② 당해부품의 수출업자와 당해부품의 미국내 조립업자가 서로 관련하고

있을 것, 및

③ AD 명령 발령 후, 당해부품 등의 미국에의 수입이 급속히 증대한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WTO 실시법에 의하여, 우회방지규정에 약간의 변경이 가하여져서, 부품의 가치의 중요성이나 조립공정의 실질성을 고려하여 우회를 인정하도록 적용조건에 수정이 가하여졌다.

UR에 있어서는 국제AD협정에 우회방지조치를 담을 것인가에 관하여 격렬한 이론이 전개되어, 당시의 갓트 사무국장 던켈이 제시한 「던켈합의안」에서는 3개의 우회방지조치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미국의회의 반대에 의하여 삭제되었던 것은 전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우회방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국제AD협정에 있어서 우회방지 규정의 결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미국의회의 해석으로는 국제AD협정 중에 우회방지규정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은, 동 협정상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우회방지규정의 결여는 두 가지로 해설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던켈합의안」에서의 우회방지 규정의 삭제는 동 합의안에 있었던 「한정적 열거」의 삭제이며, 이로 인하여 가맹국은 우회방지조치를 강구하는 자유는 도리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우회방지조치의 삭제는 가맹국이 우회방지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어쨌든, 이 점은 장래 WTO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AD위원회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다. 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점은 AD에 관한 국제분쟁

의 씨앗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5. 1916년 반덤핑법

미 1916년 반덤핑법은, 외국에 있어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는 때에, 그 제품의 수입업자에 의한 판매가격이 그 제품의 수출국에서의 국내판매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낮아, 이러한 수입에 의하여 미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파괴되고, 더욱이 이러한 수입이 미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이것을 파괴하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경우에, 이러한 수입을 행했던 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또는 3배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률은 제정 이래 실제로 적용된 예는 없으나, 몇 개의 제소(提訴) 예가 있다. 이에 대하여, EU 및 일본이 동법의 존재자체가 갓트 6조 및 AD협정 위반이라고 하여 제소하였다. 패널 및 상급위원회<sup>29)</sup>는 이 법률이 커버하는 범위는 갓트 6조가 커버하는 덤핑이며, 따라서 이 법률은 갓트 6조의 요건에 의하여 덤핑, 손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덤핑세를 과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규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벌 및 3배 배상이라는 수단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고, 더욱이 덤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강행법규라고 하여, 이 법률의 존재자체가 갓트 6조 및 AD협정 위반이라고 하였다.<sup>30)</sup>

29) United States-Anti-Dumping Act of 1916, WT/DS/36/R, 31 March 2000 ; WT/DS/135/AB/R, WT/DS/162/AB/R, 28 August 2000.

30) 이 상급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松下滿雄 「WTO협정과 미국 안티덤핑법」 국제상사법무 29권 3호(2001년 3월) 참조. 미국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

### III. EU의 반덤핑법<sup>31)</sup>

#### 1. 迂回防止措置

EC의 부품과세사건에 있어서, 일본측이 갓트에 대 EC제소를 행하여, 갓트는 EC의 부품과세는 갓트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전술하였다. 그래서 EU는 WTO 실시규칙에 의하여 AD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여 갓트에 의하여 지적된 것과 같은 형식에서의 부품과세방식은 폐지되고 있다.

WTO 실시법에 의한 우회방지규정에서는 어떤 제품에 대하여 AD세를 부과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AD과세에 따라 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세대상제품의 부품,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제품 등)을 통관단계에서 등록시켜, 우회가 인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추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에 의한 경우에는, 이전에 갓트에 의하여 지적된 문제점, 즉 EC 역내(域內)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서 발매되는 제품의 부품에, 통관시가 아니고 역내에서 발매시에 AD세를 과세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는 문제점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1) EU의 반덤핑법에 대해서는, Beseler, Die Abwehr von Dumping und Suventionen durch die Europaischen Gemeinschaften (1980) ; Beseler and Williams, Anti-Dumping and Anti-Subsidy Law ; The European Communities (1986) ; 池田節雄·EC 안티덤핑(1989년), 반바엘 베리스·EC 통상법(松下滿雄 譯)(1986년), 小室程夫·EC 通商法 핸드북(1988년)등을 참조. EU의 반덤핑 관세제도에 관해서는 ; 崔昇煥, 上掲, 518면 이하 참조. 우루과이 라운드실시법에 대해서는, 공정무역센터·1994 EU 안티 덤핑법과 기업실무(1995년), 紫崎洋一. 川合弘(역) '歐州共同体加盟國以外の 국가로부터의 덤핑이 행하여진 수입품에 대한 보호에 관한 1994년 12월 22일 각료이사회 규칙(EC No. 3283/94)' 국제상사법무 Vol. 23, No. 6(1995년) 617면 이하 및 주 27)의 문헌 85~97면 참조.



다만, 문제점은 이 제도에 의하면, 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제품(부품, 동종제품 등)을 등록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공업제품이 극히 많은 부품 등으로부터 성립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당해 대상제품뿐만 아니라 널리 범용품(汎用品)도 등록시킬 필요가 생긴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가 극히 많아지고, 이것이 실질상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EU의 AD규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점이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장래의 문제점이다.

EU의 AD규제에 의하면, 우회방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국 우회와 제3국 우회인데, 제3국 우회방지조치에 관해서는, ①EU와 제3국간의 무역패턴의 변화, ②당해 무역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생산, 판매형태의 변화는 AD세의 부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는(즉, 이외의 경제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것, ③동종제품의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AD과세에 의한 구제효과가 손상되고 있고, ④AD조사에서 산정된 동종 또는 유사제품의 정상가액에 비추어 덤핑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것 등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2. 價格比較

### (1) 非對稱的 經費控除

EU에 있어서는 종래 수출판매에서 관련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가격에 관하여서는 직접판매경비의 공제 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에 관해서는 관련회사의 직접, 간접경비 전액과 이익을

공제하므로 덤핑 마진이 창설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공평한 가격비교를 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EU의 WTO 실시법에서는 간접비의 취급에 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고, 이 점에 대한 취급은 장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 (2) 애버리징

종래의 EU의 AD법에서는, 수출가격에 관해서는 개별가격을 채용하고, 국내가격에서는 가중평균가격을 채용하고 양자를 비교하고, 전자 중 후자보다 높은 것은 무시하고, 낮은 것만을 비교하여 덤핑인정을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제AD협정은, 국내가격에 관하여 가중평균가격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에 대하여서도 가중평균가격을 채용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EU에서의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대강 국제AD협정 취지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3) 構成價格算定에 있어서의 利潤率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구성가액산정을 할 때의 이윤율에 관해서는, 당해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실제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몇 가지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EU의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취지에 따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3. 調査節次

종전부터 EU의 AD법의 문제점의 하나는, AD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

던 수출기업에 대하여서는 조사대상기업에 대하여 인정된 AD세율의 최고의 것을 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제AD협정에 있어서는, 미조사 기업에의 과세는 조사대상기업에의 과세의 가중평균세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EU의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국제AD협정의 취지에 따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 4. Duty as a Cost

종래의 EU의 AD법의 최대 문제점의 하나로 Duty as a Cost(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개요를 참조) 이었는데, 국제AD협정에서는, 코스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지급필의 AD세를 코스트에 산입(算入)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규정되었다. EU의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취지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IV. 日本의 반덤핑법<sup>32)</sup>

일본에서는 아직 AD법(관세정율법)의 적용실적은 적으나, WTO의 성립에 따라, 관세정율법 및 관계정령(政令)의 개정이 행하여졌다. 더욱이, 이들을 실시하기 위한 세목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있다.<sup>33)</sup> 새로운 관

---

32) 관세정율법 및 관계정령(政令)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山崎達雄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를 받아들인 관세관계법 개정의 개요」 NBL 561호(1995년), 藤倉基晴 「관세정율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 파이낸스 349호(1994년) 참조.

33) '상계관세 및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1995년 8월 4일 대장성(大藏省) 고시 제175호, 관세주보 2218호(1995년) 35~50면 및 2220호(1995년) 8면).

세정율법 및 실시정령의 내용은 국제AD협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술(詳述)은 하지 않는다.

## 제 4 절 한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 I. 關聯法規와 執行機關

한국의 덤핑防止關稅制度(즉 반덤핑관세제도)는 관세법 10조, 동법시행령 4조의 2 내지 4조의 15, 대외무역법 35조 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시행업무는 재정경제부와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명하고, 덤핑조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업무를 총괄한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10조(및 13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및 상계관세)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의 조사, 덤핑방지조치(및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를 담당한다.

### II. 發動要件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의 물품이 正常價格 이하로 즉 덤핑으로 수입되고,<sup>34)</sup> 둘째, 國內産業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셋째, 덤

---

34)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말한다(법시행령 제4조의 6).

핑행위의 존재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넷째,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법 10조 1항).

여기서 國內産業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법시행령 4조의 2).

貿易委員會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 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② 가격,
- ③ 덤핑차액의 정도,
- ④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 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등을 포함한 實質的 證據에 근거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4조의 7).<sup>35)</sup>

### Ⅲ. 賦課節次

#### 1. 조사개시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

---

35) 실질적 피해의 우려여부에 대한 판정은 개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법시행령 제4조의 7, 2항).

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實質的 被害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貿易委員會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4조의 2).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한다(법 4조의 3).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법시행령 4조의 4).

## 2. 豫備調査와 本調査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여부 등에 대한 豫備調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의 제출일 이후부터 本調査를 개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본조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시행령 4조의 4).

## 3. 暫定措置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즉 暫定措置를 취할 수 있다(법 10조 2항). 잠정조치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시행령 4조의 10).

#### 4. 덤핑防止關稅의 賦課

조사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즉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인 덤핑防止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법 10조 1항). 덤핑방지관세(및 잠정조치)의 부과는 조치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10조 5항).<sup>36)</sup> 덤핑방지관세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10조 8항).

#### 5. 價格約束과 再審査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수출자가 덤핑피해를 제거할 정도의 價格修正이나 덤핑輸出中止 등의 약속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법 10조 3항, 4항).<sup>37)</sup>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

36)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소급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시행령 제4조의 12 참조.

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하여 再審査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0조 7항).

「제4절 한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崔昇煥, 國際經濟法, 2001, 533-537면에서 인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張勝和, WTO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37권 2호(통권 101호) 1996. 9. 313-359면.

---

37)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러한 약속을 제외할 수 있다.



## 제 3 장 補助金 · 相計措置

### 제 1 절 概說

WTO협정상, AD와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하는 법규로서, 보조금·상계조치(상계관세)가 있다. 보조금이란 외국정부가 자국산업의 대외수출에 있어서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이것이 행하여지면 수입국에게는 외국정부의 보조가 따른 수출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 결과, 수입품에 의하여 경합하는 국산품과의 경쟁은 반드시 기업효율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 수입국의 효율적 산업이 그 나라에 대한 외국정부의 보조가 따른 수출에 의하여 배제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면, 통상의 편향(偏向)이 생겨 수입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후생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정부가 그 보조에 상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가(附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보조금·상계조치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보조금」이란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보조금에는 직접 수출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 외에, 국내산업진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도 있다. 이것들도 또한 그 보조를 받는 실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이들을 모두 보조금 상계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으로써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東京라운드에 있어서 성립하고, 1994년 말까지는 이것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WTO협정의 일환으로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 협정)<sup>1)</sup>이 성립하였다. 이 협정에는 중

래에는 없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WTO협정의 일환인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미국의 상계관세법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 제 2 절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協定

### I. 補助金の 定義

본 협정에서는,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경제적공헌 또는 1994년의 갓트 16조에 규정하는 소득 혹은 가격지지이어서 이익도 가져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1조).

### II. 補助金の 特定性

이 협정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정부에 의하여 주어지는 이익이, 특정한 기업(집단) 혹은 산업(집단)에 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2조). 이 규정은 보조금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종래 미국상계관세법의 실천에 있어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WTO하에서는 정식으로 국제적 룰이 되었다.

---

1) 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전문은 제2장 주 7)의 문헌 264~314면에 수록되어 있다. 나아가, 보조금·상계조치협정 및 일본의 상계관세법의 상세한 분석으로는, 공정무역센터·일본의 보조금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개정의 검토(1994년)을 참조.

### Ⅲ. 禁止補助金

이 협정의 특징은 보조금을, ①금지보조금(레드), ②상계가능한 보조금(옐로우) 및 ③상계불가능한 보조금(그린)(다만, 이 카테고리는 1999년말까지의 잠정규정)으로 나누고 있다. 우선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기술한다. 금지보조금이란, 가맹국이 행하여서는 안되는 보조금이며, 이것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가맹국인 그 대상제품의 수입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직접 교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보조금 및 수입물품보다도 국산품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데 근거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 Ⅳ. 相計可能한 補助金

이 카테고리는 금지보조금과 후술하는 상계불가능한 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이지만, 수입국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5조). 이 경우의 악영향이란, ①다른 가맹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②다른 가맹국이 1994년의 갓트에 의하여 얻고 있는 이익의 무효화 혹은 침해, ③다른 가맹국의 이익에 대한 현저한 해(害)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맹국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상계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나아가, 무역왜곡효과가 높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저한 해」의 입증책임은 보조금지출국측에 전환된다. 예를 들면, 제품가격에 있어서 보조금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의한 현저한 해의 존재가 추정된다(이것도 1999년말까지의 잠정규정).

## V. 相計不可能한 補助金

이 카테고리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형의 보조금이다(8조). 이것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연구개발비의 원조, 지역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이 포함된다. 연구개발비는 산업연구보조금 및 상업화 전의 개발보조금으로 나뉘어지고, 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용의 75%까지, 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용의 50%까지를 상계불가능한 보조금으로 하고 있다(1992년의 「던켈합의안」에서는 연구개발보조금 중 연구보조금만이 상계불가능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 협정에서는 범위가 넓어져 있다).<sup>2)</sup>

## VI. 調査節次

조사절차는 거의 AD조사절차와 유사하며, 신고적격에 관한 수량기준, 데미니마스(근소한 보조금 = 제품가격의 1% 미만)의 경우의 조사중지, 증거취급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실효조항(선세트조항)을 두고, 원칙적으로 5년이면 실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조사당국이 재심을 하여, 보조금에 의한 손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의 집적(集積)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 VII. 通報・協議・紛爭解決節次

가맹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금을 통보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보조

---

2) 상계불가능한 보조금을 존속시킬 것인가 어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행해졌으나, 상이한 의견의 대립 탓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의 분류마다 거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지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3 절 美國에 있어서의 相計關稅

### I. 法令의 概要

미국에 있어서는 1890년에 최초의 상계관세법(CVD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후 1894년법, 1897년법, 1909년법, 1913년법, 1930년법으로 이어져<sup>3)</sup>, 1979년 통상협정법에 의하여 현재의 CVD법의 기초가 형성되었다<sup>4)</sup>. 그리고 1995년에 WTO가 발족함에 따라, 전술한 WTO협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였으나, 미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WTO실시법이 성립하였다. 이 중에는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고, 현행의 미국상계관세법은 이상 법령의 기초위에, 이 실시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부가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미국상계관세법은 거의 WTO협정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쇄관세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 II. 從來의 判例

미국의 상계관세법에 관하여는 종전부터 약간의 사례가 있고, 이 중에는

---

3) 1979년 이전의 미국상계관세법에 대해서는, 松下滿雄·歐美의 수입제한법제 (1973년) 91~122면 참조.

4) 일본무역진흥회·미국의 1979년 통상협정법(1980년) 참조.

선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약술한다.

종래의 사례에서는, 외국정부에 의한 직접적 수출보조금의 지급, 수출관련의 환급세, 조세상의 우대조치, 정부에 의한 가격지지, 수출손실보상, 수출품의 생산비 및 유통비 원조, 복수환율제 등에 대하여 CVD법이 발동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CVD가 문제되었던 예로 비교적 적지만 약간 있으므로 아래에서 검토한다.

종래의 미일에 있어서의 중요사례로서는, 제니스사<sup>5)</sup>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국 전기제품 메이커인 제니스사가, 일본정부는 국내판매용의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물품세(한국에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수출용의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것은 CVD법에 있어서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상계관세를 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무성(당시에는 재무성이 CVD의 소관관청이었다)이 이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제니스사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하여 관세법원에 제소하여 抗訴審을 거쳐 1978년에 대심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심원은 제니스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별하여 2가지이다. 그 하나는, 미국행정부가 80년간에 걸쳐서 외국정부에 의한 수출품에 대한 물품세(특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만약 이와 같은 행정관행이 미국 CVD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이 기간에 의회는 입법에 의하여 이것을 수정했을 것인데, 의회는 몇 번이나 이와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수정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이 행정관행은, CVD법 제정에 있어서의 의회

---

5) United States v. Zenith Radio Corp., 562F. 2d 1209(C.C.P.A. 1977). aff'd, 46 U.S.L.W. 4752(June 20, 1978).

의 입법의도에 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sup>6)</sup> 둘째는, 만일 정부가 외국정부가 행하는 수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일본에서는 물품세) 면제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과한다고 하면, 이 수출품이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주(州)의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이중과세가 되어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CVD법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졌다.

일본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CVD가 과하여진 사례로서는, 산업용 나사못 사례<sup>7)</sup>가 있다. 1976년에 미국 산업용나사못공업회의 신고에 의하여, 재무성이 일본정부가 행하고 있는 나사못 산업에 대한 조성(助成)이 CVD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가의 심사가 행하여졌다. 이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정부가 행하고 있는 각종의 중소기업 보조정책이었다. 이들에게는, 엔(円)

6) 오랜 미국 대심원 판례(Downs v. United States, 187 U.S. 496(1903)에서는, 제정러시아 정부가 사탕의 수출에 대하여, 내국 소비세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조세도 면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가 CVD를 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의 부수의견(dicta)에 있어서, 대심원이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이 일반적으로 CVD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수출국정부가 수출품에 대하여 내국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면제하는 것은 모두 CVD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미국행정부는, 여기에는 CVD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기의 다운즈판결의 정당한 해석이라 하여, 이 관행을 오랫동안 계속하였다. 그러나, 제니스사는 상기의 재판에 있어서 다운즈판결에 있어서의 부수의견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는 CVD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점에 관해서는, 1978년의 미국 대심원 판결에 의하여, 내국특별소비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CV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소·반덤핑제도 등과 그 운용의 연구(1981. 82 및 83년도 보고서) 92면 이하 참조.

시세상등관련중소기업대책임시조치법(円市勢昂騰關聯中小企業對策臨時措置法 -円高對策法), 국민금융公庫, 오키나와 개발금융공고(公庫), 중소기업 금융공고, 상공중금(中金) 등에 의한 우대(優待)용자제도, 정부신용보증, 법정 결손계상(缺損計上), 이월(移越),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 일본무역진흥회에 의한 무역촉진원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9년에 미국재무성은, 일본정부가 행하는 ①저리(低利)용자, ②대부금의 상환기한의 연장, ③엔고(円高)에 관련한 경상손실을 3년간까지 공제하여, 전년에 납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를 환급(還給)하는 제도, ④엔고에 의한 타격을 받은 기업에 대한 특별한 정부신용보증이 CVD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강철제 볼트·너트에 대하여 보조액증가(從價) 4.2%,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 4%로 결정하고 이것을 부과하였다.

그 후, 1979년 통상협정법의 시행에 따라, CVD 권한이 재무성으로부터 상무성으로 이관되었으나, 나사못공업회는 종래의 CVD결정을 불만족하게 생각하여, 신법하의 상무성에 행정재심사를 청구하고, 상무성은 1981년에 이 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에 있어서는, 일본정부가 행하는, 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의한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유예, ②일본무역진흥회로부터의 수출진흥원조, ③엔고대책관련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 ④중소기업금융공고(公庫) 용자 등 대부가 심사의 대상이었다. 상무성은, 일본무역진흥회의 활동은, 정부계기관의 정당한 업무이고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서는, 197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CVD를 징수하도록 하였다.

1984년 통상관세법에 의하여 CVD법에는 약간의 개정이 가해졌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업스트림보조금」(upstream subsidy)의 신설<sup>8)</sup>

---

8) 이에 대해서는, 松下滿雄 監修·일본무역진흥회 편 - 미국의 1984년 통상관세



이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 정부가 수출품 그 자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보조를 받은 부문에서 제조된 물건(物件)을 부품으로 하여 수출품이 제조되고,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이 수출품을 간접으로 정부보조의 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여 CVD세를 과한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의 예로서, 일본수출기업이 대미수출품을 제조하고 있고, 이 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부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부품제조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조를 주고 있는 경우, 이 보조에 의하여 제조된 부품을 기초로 제조된 수출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CVD를 과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본기업이 모여서 연구조합을 결성하고, 여기에 정부가 자금을 원조하거나 또는 정부도 참가하여 어떤 기술의 연구를 행하고, 기술이 생겨났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 기술을 근거로 각 기업이 제품개발을 하여, 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 제품도 또한 간접적으로 정부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원조가 모두 CVD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기업에만 주거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지, 외국기업도 이용가능한지 등 각종 요인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더욱이,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직 엄밀한 정의가 굳어진 것은 아니고, 상무성과 법원에서는 견해가 상이하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제(諸)제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업스트림보조금」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에 의하여, 미국상계관세법에 몇 개의

---

법(1985년) 25면 이하 참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하나는, 이 일반적 입수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종래의 상무성의 실무에 있어서는, 외국정부가 행하는 산업지원이 특정한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면, 그것을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수출보조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8년법에 있어서는, 이 입수가능성이 단순한 명목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것으로써 당해지원이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1988년법에 있어서는, 국제적 컨소시엄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복수국의 기업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각각의 기업이 모국으로부터 어떤 물건의 생산에 관하여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개개의 기업이 받고 있는 보조금과 컨소시엄 자체가 받고 있는 보조금과를 집적하여(모아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WTO협정의 일환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있어서는,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즉,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는 보조금)만이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되었지만, 이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실천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에 관해서는

崔昇煥, 국제경제법, 2판, 法英社, 2001. 3. 315-328면 참조

미국의 상계관세제도에 관해서는

崔昇煥, 上掲, 511면 이하

EU의 상계관세제도에 관해서는

崔昇煥, 上掲, 521면 참조

한국의 상계관세제도

崔昇煥, 上掲, 536면 참조

補助金에 관하여

徐憲濟, 國際經濟法, 364면

## 제 4 절 EC의 相計關稅制度

EU의 相計關稅制度의 법적 근거 및 운용절차는 상기 반덤핑관세제도와 동일하다. 기존의 상계관세제도는 덤핑관세법에 함께 규정되었으나, WTO 협정의 이행법안의 하나로서 1994년 12월에 채택된 이사회규칙(Regulation No. 3284/94)은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을 반덤핑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입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규칙은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특정성, 상계가능 보조금의 산정, 피해의 판정, 조사절차, 잠정조치, 가격인상약속, 상계관세의 부과, 유효기간과 재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相計關稅는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수출·수송에 대해 직접·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공동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EU에서는 상계관세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등을 통해 EU가 각종 補助金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정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는 혼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sup>9)</sup>

9) 상계관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 법무부, 「EU 통상법연구 I」, supra note 16, pp. 771~809 ; P. Waer and E. Vermulst, "EC Anti-Subsidy

## 제 5 절 한국에 있어서의 相計關稅制度

### I . 關聯法規와 執行機關

한국의 相計關稅制度는 관세법 13조, 동법시행령 4조의 24, 4조의 25, 대외무역법 35조 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시행업무는 재정경제부와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고,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업무를 총괄한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賦課開始 결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의 調査, 상계조치의 建議, 재심사를 담당한다.

### II . 發動要件

相計關稅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補助金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이라 약함)이 지급된 물품이 수입되고,

둘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셋째,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넷째,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관세법 13조 1항).

---

Law and Practice After the Uruguay Round-A Wolf in Sheep's Clothing?,"  
33 Journal of World Trade 19 (Oct. 1995), pp. 19~44.

여기서 보조금이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特定性이 있는 것을 말한다.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 등이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법시행령 4조의 24).<sup>10)</sup>

### Ⅲ. 賦課節次

조사의 신청과 개시, 예비조사와 본조사, 잠정조치, 상계관세의 부과, 가격 약속과 재심사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조사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동일하며,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4조의 25). 다만 상계관세부과의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즉 상계관세가 부과된다(13조 1항).

이상 제4절 EC의 相計關稅制度,

제5절 한국에 있어서의 相計關稅制度는

崔昇煥, 國際經濟法, 521면 및 536면에서 引用하였음.

---

10) 보조금 등이 ①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②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③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④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특정성이 존재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 제 4 장 미국 通商法 301조에 기한 一方的 措置

## 제 1 절 미국 통상법 301조

### 1. 沿革

미국통상법 301조<sup>1)</sup>는, 외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부당한 통상제한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 미국정부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국과 교섭하고, 이것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 대하여 제재조치(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법률 하에 있어서는 미국정부의 권한은 광범하고, 이 법률은 외교교섭의 도구로서 자주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법률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관행·조치가 부당, 불공정하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 조치」(unilateral measure, unilateralism)라고 일컬어지는 수가 있다.

통상법 301조의 전신은 1930년 관세법인데, 이에 의하면 미국제품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행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34년 법, 1962년 통상확대법 252(c)조를 거쳐,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이르러 현행법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그 후,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sup>2)</sup>에 의하여 301조가 개정·강화되고,

1) Public Law 93-618, approved January 3, 1975, 194. U.S.C. 2411.

2) 1988년 8월 23일 대통령 서명.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M. R. 4848). 입법자료로서는,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Conference Report to Accompany M. R. 3(Apr. 20, 1988, 100th cong., 2d Sess., Mouse of Representatives, Report 100-576) 참조.

다시 1994년에 WTO 협정실시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이르러, WTO 협정실시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II. 概要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이 통상법 301조 이하의 규정이다. 이 밖에, 슈퍼 301조(후술), 스페셜 301조(지적소유권보호의 불충분한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 전기통신조항(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배타적 관행을 행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 및 정부조달제재조항(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 배타적 관행을 행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이 있다.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재조치는 ①강제적 조치(mandatory action)와 ②재량적 조치(discretionary action)로 나뉘는데, 강제적 조치는 301조(a)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통상대표가 ①외국정부의 관행에 의하여, 갓트 기타의 국제통상협정상의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는 ②외국정부의 관행 또는 정책이 통상협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그것에 근거하여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정하거나 또는 부당(unjustifiable)하여, 미국통상에 부담을 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대표는 당해 외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제재조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에 의하여 미국통상에 과해진 경제적 불이익과 같은 불이익을 당해 외국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통상대표는 「대통령의 당해 제재조치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ve, if any, of the President),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생각하면, 대통령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조치는 취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종래와 같이, 대통령이 301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궁극적인 법적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상의 점에 관해서는 이 규정의 구조방식에는 애매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은 입법정책의 오류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상대표는 ①WTO의 분쟁해결 기관이 당해 외국의 관행은 갖트에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이익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당해 외국은 보상조치를 취하고, 당해 관행의 폐지 또는 점진적 폐지를 약속하고, 또는 기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경우, ③제재조치가 미국통상에 불균형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과 같이 보아, 301조(a)는 「강제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발동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대표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1조(b)는 재량적 조치를 정하는 것이지만, 이에 의하면 외국 정부의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 또는 「차별적」(discriminatory)이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미국통상 대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법제에 있어서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정부의 외국에 대한 제재조치의 권한에 관한 주도권은 통상대표에게 있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에 대한 제재권한에 관한 주도권이 통상대표에게 있다고 하는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외국정부에 의한 불공정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대표는 통상전문 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셈이므로, 대통령과 같이 폭넓은 총합적정책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통상의 관점에서 보복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함으로써, 미국대외정책이 밸런스를 잃게 되고,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 불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든 것 외에 수퍼 301조가 있다. 수퍼 301조는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力法)에 의하여 시한입법(1989년과 1990년에 유효)으로서 신설되었으나, 일단 실효한 후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부활시켰다. 더욱이 1994년 WTO 실시법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통상대표는 외국의 무역장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장자유화 우선사항(trade liberalization priorities)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대표는 그 보고서에서, ①폐지하면 미국의 통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외국시장 제한적 조치 및 ②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행하고 있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조치 및 그것을 행하고 있는 국가를 특정시킨 경우에는, 그 뜻을 상원재정위원회 및 하원세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가 의회의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통상대표는 302조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동시에 당해외국정부와 분쟁해결절차에 근거한 교섭이 개시되게 되지만, 이 교섭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 당해제한의 철폐 내지 보상의 제공, 또는 3년 이내에 당해제한의 경감이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의 특징은,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대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교섭을 행함과 아울러 교섭이 不成立으로 끝나고, 또한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는, 미국이 당해조치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동등한 불이익을 당해외국에 과하는 것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301조에 근거한 조치는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의 불공정관행(덤핑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정부에 의한 사기업의 불공정관행의 허용(예를 들면, 카르텔 등의 경쟁제한행위의 허용)에 의하여 미국수출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해정부가 행하는 불공정관행으로 보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폭넓은 것이며, 관세인상 및 수입수량 제한, 수출제한, 서비스에 대한 과징금 혹은 기타의 제한 및 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認·許可의 거부 등이 포함된다. WTO 실시법에 의하여 301조가 개정되고, WTO협정의 대상사항에 관하여 동조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WTO의 분쟁해결기관의 권고를 분쟁당사국이 실시하기 위한 합리적 기간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미국은 다른 WTO 가맹국과의 분쟁이 WTO협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WTO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것이 국내법적으로도 의무지워져 있다.

### Ⅲ. 報復대상이 되는 外國政府의 不公正慣行

이 301조가 상정하고 있는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은 넓은 개념이며, 외국정부가 행하는 수입제한, 수출제한, 미국기업에 대한 참입(參入) 제한 등

미국제품 또는 기업을 제한하는 외국정부의 조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외국정부가 자국산업에 정책적 원조를 부여하고, 그 결과 미국기업이 이 나라 기업과의 경쟁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에는 미국기업이 미국에 있어서 이 나라의 기업과의 경쟁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 미국기업이 그 나라의 시장에 있어서 그 나라 기업과의 경쟁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 미국기업이 제3국에 있어서 이 나라 기업과의 경쟁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고, 나아가 외국이 제3국과 2국간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 통상의 흐름이 바뀌어 미국산업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 IV. 差別的 適用

이 301조에 근거한 제재조치는 무차별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불공정관행을 행하고 있는 외국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1984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 제재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매 걷어붙이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즉, 어느 국가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미불공정관행을 행하고 있는 경우, 미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그 나라에 대하여 보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7년에 행하여진 미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미일반도체협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일제재에 있어서는 미국측이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301조 위반은 반도체분야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국정부는 반도체와는 관계가 없는 소형 컴퓨터, 전동공구(電動工具) 및 컬러 텔레비전의 3 품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 V. 損害要件의 不要

301조 발동의 요건으로서,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에 의하여 미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동법에 의하면, 외국정부가 미국도 참가하는 통상협정에 위반하여, 이 협정상 미국에 인정되고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외국의 조치가 미국통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입증은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어느 국가의 대미조치가 WTO/갓트 위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외국의 조치가 명백한 통상협정위반은 아니고 「부당」(unjustifiable), 「불합리」(unreasonable), 혹은 「차별적」(discriminatory) 일 경우에는 이 외국의 관행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고, 혹은 제한하는」(burden)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미국통상에 부담을 주고, 혹은 제한하는」이란, AD 또는 CVD(상계관세) 규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material injury)보다도 가벼운 요건이다.

## VI. 不當 · 不合理 · 差別的의 意義

301조 발동의 요건은, 외국정부에 의한 통상협정 위반의 경우 이외에, 외국정부의 조치가 「부당 · 불합리 · 혹은 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일반적 개념이지만, 「부당」(unjustifiable)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미국의 권리의 침해, 즉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대우에 반하는 관행 등이다.

「불합리」(unreasonable)란, 반드시 협정위반 내지는 위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하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1988년 포괄무역·경쟁력법에서는 이 「불합리」 또는 「차별적」 관행의 예로서, ①외국 정부가 미국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②지적소유권의 적절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 ③사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고, 그 결과 미국기업 또는 상품의 참입(參入)이 한정되는 것, 및 ④수출터게팅을 행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경우, 일본에서는 ③ 및 ④가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③은 아마 일본의 카르텔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며, ④는 일본정부가 행하는 산업정책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엄격히 관철하면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차별적」(discriminatory)이란, 일반적으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부정이며 결국 「부당하게」와 거의 같은 뜻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1994년의 WTO실시법에 의하여 외국정부가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에 관하여 미국 통상대표는, 당해 외국이 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당해 외국의 지적소유권에 근거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에는 외국정부에 의한 사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의 허용이 포함되지만, 이 중에는 ①외국의 국영기업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 ②서비스에 관한 반경쟁적 행위, 및 ③외국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를 행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기회를 저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기회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해 외국정부가 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다.

## VII. 調査節次

통상법 301조의 발동절차는 동조 30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개시에는 ①이해관계인의 신고에 근거하는 것, 및 ②통상대표의 직권에 근거한 것의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이해관계인은 외국정부의 불공정관행을 이유로 하여, 301조 위반을 근거로 미국정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는 통상대표에 대하여 하는데, 통상대표는 신고수리 후, 45일 이내에 조사개시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과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안전이 WTO협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다음에 WTO의 DSB(분쟁해결기관)가 행하는 권고의 합리적 이행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안전에서는 조사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당해 외국정부의 관행이 301조에 정하는 부당, 불합리, 또는 차별적 관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해관계자」란 미국통상대표부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당해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관계」(a sufficient interest)를 가진 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관념적으로는 극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文言에서 보면, 이 이해관계자에는 반드시 미국산업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산업 등도 포함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EU가 대미수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수출제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EU의 수출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EU의 당해 제품의 수출업자가 신고하는 것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다. 조사는 통상대표부가 중심이 되어 행하지만, 통상대표는 국무성, 재무성, 노동성, 농무성, 국방성, 내무성 및 사법성의 관계 각 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것이 안전의 검토를 한 다음 결정이 내려진다.

303조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국제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사용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즉, 301조 위반의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국제협정에 기반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의 국제협정은 WTO에 정하는 분쟁해결절차, 東京라운드에서 체결된 협정 및 각종의 2국간 협정(예를 들면, 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통상법 301조 이하에 기반한 보복조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조사개시와 함께 국제협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WTO협정 대상사항이 분쟁안건의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이 필요하다.

## VIII. 美日半導體協定과 美國의 對日制裁

미국의 대일관계에서 이 301조가 발동된 사례는 몇 개가 있다.<sup>3)</sup> 예를 들면 피혁(수입할당제등), 담배(전매공사에 의한 소매정책, 광고정책 등)가 있다. 그 밖에도 일·EC철강수출자주규제에 의하여 EC 시장 방향의 수출을 제한된 일본철강이 시장을 구하여 미국시장으로 전환하므로 이것이 일본 정부에 의한 불공정관행이라고 하여 미국철강회사가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정부에 제소한 예<sup>4)</sup>도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미일반도체 사건<sup>5)</sup>이다. 이하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3) 三宅豊 「74년 통상법 301조와 그 영향」 주리스트 849號(1985년) 26-27면에, 1985년 10월 22일까지의 사례의 포괄적 리스트와 그 해설이 있다.

4) 공정무역센터 「미국통상법 301조 및 EC 규칙 2641/84와 그 운용(1987)」 참조.

5) 이 사건의 개요로는, 松下滿雄 「일미반도체 마찰과 관리무역에의 동향」



미일반도체분쟁은, 미국법상으로는 AD법과 통상법 301조의 쌍방의 문제이었다. 미국반도체협회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각종의 조성(助成) 정책을 취한 결과,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강화되고, 또한 반도체산업의 구조가 폐쇄적인 것으로 되어, 이로 인하여 미국 반도체산업은 일본제 반도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일본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시책이 301조 위반이라고 하여, 미국 정부에 강력히 신고하였다.<sup>6)</sup> 타방 미국 반도체산업은 어떤 품목의 반도체에 대하여 대일 AD신고를 행하고<sup>7)</sup>, 또한 미국 정부는 다른 품목의 반도체에 대하여 직권에 의하여 AD 조사개시<sup>8)</sup>를 하였다.

1986년 여름에 미일에서 반도체에 관한 협정<sup>9)</sup>이 성립했는데 이 협정은 이들 분쟁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기업과 미국정부간의 협정 및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협정의 2개로 성립되어 있다. ㉠는, 소위 서스펜션협정(suspension agreement)으로, 일본 기업은 공정가액 이하의 가격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는 미일 정부간 협정이지만 그 大綱은, ①일본 정부는 일

---

쥬리스트 873호(1986년) 참조.

6) 이 신고서의 전문은 주 26)의 문헌 206-219면에 게재되어 있다.

7)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ies From Japan : Initia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50 Fed. Reg. 43, 603-604 (1985).

8)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of 256 Kilobits and Above From Japan ; Investigation of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50 Fed. Reg. 51, 450.

9) 日本半導體協定에 관한 자료는,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XV, No. 6(November 1986), P. 1408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본제 반도체가 미국에 덤핑 수출되지 않도록 가격을 감시하고, ②일본 정부는 제3국 경유로 일본제 반도체가 우회수출에 의하여 덤핑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제 반도체의 제3국 시장에서의 가격을 감시한다. ③일본 정부는 미국제 등 일본제 반도체의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및 ④미일정부는 반도체의 생산이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국내에 있어서의 과잉생산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상의 미일반도체협정 중, ①일본정부는 일본제 반도체의 제3국 가격에 대하여 감시를 한다. 및 ②일본 정부는 외국제 반도체의 일본 시장에서의 매상의 증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두 점에 있어서 협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1987년 4월 17일, 소형 컴퓨터, 전동공구 및 컬러 텔레비전에 대하여, 통상법 301조에 기하여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고, 그날로 이를 실시하였다. 그 후, ①의 점에 대해서는 협정준수가 확보되었다고 하여, 미국 정부는 대일제재를 해제했으나, ②에 대해서는, 1991년에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제재가 존속되었다.

일본제 반도체가 제3국 시장에 수출되는 경우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규제의 권한이 있지만, 일단 일본제 반도체가 제3국 시장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일본정부로서는 규제권한은 없고, 강제로 규제하려고 하면 당해 제3국의 주권침해가 될 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제 반도체가 제3국 시장에 수출된 후, 당해국의 시장에서 이것이 유통하고, 값싼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미국수요자는 값싼 반도체를 수입하기 위하여 여기서 구입하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 IX. 美國政府에 의한 301조에 기한 對日制裁와 갓트

1987년 4월 17일에 행하여진 미국정부에 의한 대일제재는 갓트의 요건과 꼭 맞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sup>10)</sup> 1947년 갓트의 원칙은 현행 WTO와 마찬가지로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갓트에 대하여 강력히 신고하여, 갓트의 허가와 관리하에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당해 안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제한이 갓트에 의한 보복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취한 대일보복조치는 갓트에 근거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절차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미국정부의 조치는 갓트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갓트 23조의 취지는 갓트상 명백히 인정되는 수입 또는 수출제한 이외의 통상제한은 갓트 23조의 절차를 거쳐 갓트를 승인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미국정부에 의하여 취해진 대일보복조치는 절차적으로는 갓트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정부가 취한 대일보복조치는 전술한 3품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갓트 23조에 의하여 체약국단의 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갓트 2조에 위반되며, 더욱이 보복관세는 일본에 대하여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갓트 1조의 최혜국대우에 위반하는 것이었다.

일본기업과 미국 정부간의 덤핑 방지에 관한 서스펜션협정은 국제 덤핑 협정에 있어서의 「가격약속」이므로, 갓트상의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미

---

10) 松下滿雄 '미통상법 301조와 갓트' 주리스트 889호(1987년) 참조.

국 정부에 의한 대일보복의 근거가 되었던 미일반도체협정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대 제3국시장의 가격감시의무가 갓트상 인정된 이익을 미국에 보증하는 성격의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제반도체의 제3국시장에서의 가격감시는, 그 목적으로는 일본 기업에 의한 제3국시장 경유의 우회덤핑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 규제는 덤핑수출의 규제이지만, 제3국시장에의 가격규제의 근거가 되게 하는 규정은 갓트 그 자체에는 물론, 국제덤핑협정에 있어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현재도 같다). 미국법상으로도, 일본기업과 미국정부 사이의 서스펜션협정에 의하여 제3국시장의 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의하여, 미일정부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시장가격의 규제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미일반도체협정에 있어서 제3국시장의 가격규제는, 덤핑방지의 목적에서 보아 너무 광범하고, 일국의 덤핑규제를 타국시장에도 실질상 확대하는 것이어서, 갓트상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미일반도체협정 중, 일본 정부의 대 제3국시장 가격의 감시를 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EC가 갓트위반을 이유로 하여 갓트체약국단을 제소하였다. 그리고, 1988년 3월 24일 갓트의 패널은 보고를 행하였지만<sup>11)</sup> 이 재정(裁定)에 의하면 본 협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3국시장 방향의 가격감시 등의 조치는, 실질상 제품이 수출수량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며, 갓트에 의하여 인정된 관세 또는 과징금 등에 의한 통상규제라고 할 수 없고, 갓트11조에 위반하는 것이었다. 패널보고서는 일본만이 갓트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취한 가격감시조치는 미일협정에 의한 것이며, 더욱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직접 가격감시를 실시

---

11)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Report of the Panel, L/6309, 24 Mar. 1988.

한 것은 일본정부이지만, 미국 정부도 이 협정의 당사자이며, 이 조치는 말하자면 「미일합작」이다. 갓트상으로는 이 이외의 해석은 있을 수 없었고 생각되지만 석연치 않는 결말이었다.

1991년에 미일반도체협정은 기한이 도래하여 종료했으나, 제2차 미일반도체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협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두 개의 덤핑에 관한 서스펜션·어그리먼트의 하나(256/D/ROM)는 종료하고, 타방(EPROM)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한 제3국 가격감시는 폐지되고, 그것에 갈음하여 일본반도체 메이커의 제3국 시장에서의 덤핑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미정부가 당해 제3국 정부에 同國의 반덤핑법의 발동을 요청하고, 이 조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전면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 시장에서의 접근에 대해서는 외국제 반도체가 일본 시장에서 점해야 할 시장점유율에 20%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 숫자는 일본정부가 일본 시장에서 달성되어야 할 통지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고, 이것은 예측 내지 기대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 이상의 것으로 해석될 염려도 있고 하여, 문제를 남기는 것이다. 다만 이 협정은 1996년에 종료되었다.

## X. 수퍼 301조와 美日構造協議

미 통상대표는 수퍼 301조에 기하여, 1989년에 있어서, ①수퍼 컴퓨터, ②목재규격, ③우주위성기기의 3분야를 지정하고,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미 일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이 밖에, 이른바 「미일구조협약」이 진행되어, 1990년 6월에 협약이 성립되고, 3년 동안에 걸쳐 그 내용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의 商관습, 유통제도 및 기업행동에 대하여 큰 변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제교섭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sup>12)</sup>

## XI. 美日自動車·部品協議

미일 자동차·부품협약<sup>13)</sup>은 WTO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로서도, 또한 근년의 통상법 301조에 관한 동향으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전부터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①일본자동차회사에 의한 외국제 부품의 구입 확대, ②일본에있어서 외국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 딜러의 판매거점의 증가, 및 ③ 車檢 등 검사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들 중,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일정한 수치를 표시하여 그것의 달성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수치의 제시와 그 달성의 약속을 거부하고, 그래서 교섭은 난항에 부딪혔다.

미통상대표는 이것은 미통상법 301조에 정한 불합리한 관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법에 근거한 제재발동을 시사하여, 일본제 고급차의 수입에 대하여 100%의 제재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1개월쯤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선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것에 대하여 WTO협정에 의하여 WTO에 제소하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제재발동절차에 들어가, 발동의 전 단계인 관세평가정지

---

12) 美日구조협약의 상세한 것은 松下滿雄, 日美구조문제협약의와 경제제도 조정, 주리스트 965호(1990) 및 주리스트 동호에 게재된 여러 논문 참조.

13) 이에 관해서는, 각종의 신문보도 외에 정부발표물로서, 「자동차·동부품협약의 합의의 개요(통상산업장관 담화를 포함)」 MITI News Letter(1995년 夏季號) 126면 이하를 참조.

를 발령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것은 WTO협정위반으로서 갓트 22조에 의하여 미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교섭은 난항에 빠졌다.

타방, 이것과 병행하여 교섭이 진행되어, 결국 미국의 제재발동기한인 1995년 6월 28일의 전일에 타결되고, 미일정부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①일본 정부는, 車檢제도 등 검사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할 것, ②일본자동차회사에 의한 외국제부품 구입의 확대에 관해서는 일본자동차회사가 글로벌 계획을 발표하고, 북미에 있어서의 생산계획의 증대를 발표할 것 등, 그리고 ③自販聯(일본자동차판매단체연합회)는 참가달러의 외국차 취급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 중 ②와 ③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의 발표이지만, 미일정부는 이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②와 ③에 관하여 스스로의 추산에 근거한 수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②와 ③은 민간기업·민간단체의 발표이며 정부의 약속은 아니다. 그리고, ②와 ③에 관한 수치는 미국정부가 독자(獨自)의 판단으로 추산하여 발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일본정부는 이것을 약속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이 공동성명이 과연 「합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하여튼 이에 의해서 미일의 위기는 당장은 회피되었다.

이상의 경과 중,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인 제재관세의 부과, ①협정세율 이상의 관세부과이고, ②차별적 과세이다. ③WTO의 분쟁해결기관의 허가에 의한 것은 아니고, 또한 세이프가드협정 등 기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면에 있어서, WTO협정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WTO 제소가 행해지고, 패널이 설치된 경우에 미국정부가

주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논점은, 본건의 문제점은 일본시장에 있어서의 폐쇄성이며, 이는 WTO협정에 의하여 커버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으로서는 WTO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취하는 대항 조치를 포함하여, 이 안건전체가 WTO의 범위 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이유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재조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현재 아직 WTO협정에 의하여 커버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근거로 하는 관세나 수입제한의 부과는 모두 큰 소리지며 실행할 수 있게 되고, WTO체제는 뼈가 빠진 것이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사기업이 행하는 배타적 관행 등 민간관행에 의한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하여 WTO가 무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래의 과제로서는 WTO 안에 경쟁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이것을 WTO체제의 일환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XII. 美國通商法 301조에 관한 패널 報告書**

EU는 미국통상법 301조의 존재자체가 WTO협정의 일환인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SU)에 위반한다고 하여, WTO의 분쟁해결기간에 대하여 패널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 취지는, 미국통상법 301조의 「강제적 조치」에 대하여서는 발동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기한은 WTO의 일환인 DSU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의 기간보다도 짧을 수가 있으므로, 이 의미에서 미국통상법 301조는 DSU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패널은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보고서<sup>14)</sup>에 있어서 E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통상법 301조의 절

14) United States-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Report of the



차와 그에 따르는 강제적 조치의 발동의 타이밍은 WTO의 분쟁해결기간보다도 짧을 수가 있으므로, 그 한에서는 동규정은 WTO의 DSU 위반이지만, 미국정부가 우르과이 라운드(UR)를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회에 제출한 실시법에 의하면 미국 통상법 301조는 WTO협정에 整合하는 형태로 시행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한에서는 WTO협정과의 부정합(不整合)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실시법 규정이 폐지되고 또는 변경되면 WTO와의 부정합은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제2절 EU 貿易障害規則

「유럽공동체」에 있어서는 종래 ‘신상업 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미국 통상법 301조와 유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1995년에 WTO가 신설됨과 동시에 동년 1월 1일부터 EU는 ‘무역장해규칙’<sup>15)</sup>(Trade Barriers Rule)(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며, 현재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

이 규칙은 타국이 무역장해를 설치하여 이것이 EU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인(私人)(EU산업 및 기업)이 EU기관에 대하여 이것에 대응

---

Panel, 22 December 1999, WT/DS152/R.

15) 이 규칙의 상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Marco Bronckers,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Enforcement of WTO Law : The New EC Trade Barriers Regulation,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3(1996), p. 299 et seq. : Petros Mavroidis & Werner Zdouc, Legal Means to Protect Private Parties' Interests in the WTO,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998, p.407 et seq.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장해」란, 타국이 행하는 국제무역 룰(WTO를 등)에 위반하는 또는 적합하지 않은 무역관행이다. 적합하지 않은 관행이란 엄밀하게는 협정등의 룰위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유해할 것(예를 들면 갓트에 있어서의 「무효화·침해」와 유사한 개념)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룰위반이란 WTO와 같은 다각적 룰뿐만 아니라, 2국간 협정에 근거한 룰도 포함된다(다만 EC기업은 2국간 협정위반을 근거로 하여 제소할 수 없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물품 및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무역장해이다. 또한 지적소유권도 그것이 물건(物件)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된다.

이 규칙에 근거하여 EU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WTO등 국제협정상의 의무 및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사항이 WTO 협정위반인 경우에는, EU 당국은 WTO에 정하는 분쟁해결절차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WTO협정 위반 이외의 안건으로 문제가 되는 외국의 조치가 기타의 협정위반인 경우, 또는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무효화·침해」를 구성하는 경우에, EU당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지에 관하여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 규칙에 근거하여 사인(私人)(EU 産業등) 또는 가맹국 정부는 EU 당국에 제소할 수 있다. 사인의 제소로서는,

- (1) EC산업에 의한 제소 및
- (2) EC기업에 의한 제소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EC산업」이란, 공동체총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비율을 점하는 생산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반덤핑 규칙에서 말하는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보다는 넓고, 동종제품과 직접 경합품 생산자를 포함한다. 또한 「EC기업」을 당해무역

장해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직접 관계하는 기업으로 EU역내법을 증거법으로 하여 설립되고 있는 기업이다.

우선 「EC산업」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는, EC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해로부터 손해를 입는 EC산업은 문서에 의하여 EC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당해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단체(업계단체)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의 손해란 「실질적 손해」(반덤핑등과 같다)로 되어 있다. 신고를 하는 EC산업은 무역장해 및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C기업」에 의한 신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이지만, EC기업은 제3국시장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해에 의하여 무역상의 악영향을 입은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EC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당해국의 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보조를 주고, 이로 인하여 EC기업의 수출기회를 잃은 경우, EC기업이 부품등의 수입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과하여져 수출이 불리하게 된 경우, EC기업의 자회사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당한 법률에 의하여 제소가 행하여져서, 이로 인하여 당해기업이 수출 등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EC기업은 2국간 협정위반을 이유로 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다. EC기업에의 「악영향」이란 손해보다도 가벼운 요건으로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고는 EC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위원회가 신고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있고, 심사개시가 공동체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개시를 한다. 피조사국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통지를 한다.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고, 관계자에게는 입증, 반증의 기회가 부여된다. 심사종료후,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절차개시로부터 5개월 이내,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7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심사의 결과, 공동체이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조치에는 문제가 되는 장애의 철폐에 관하여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와 절충을 하고, 그 장애를 철폐시킬 것, 당해 장애가 WTO 위반이며 또는 그것의 무효화·침해인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는 것, 기타의 협정인 경우에 거기에 구제조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WTO제소가 행하여지고, WTO의 시정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해국이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EC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특정 다수결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보복조치(양허의 철회 등)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이것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WTO의 허가를 받는 등 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EC산업 또는 기업이 신고를 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EC위원회가 심사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EC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EC 제1심 법원 및 공동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규칙의 개요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WTO의 패널 및 상급위원회에서 심사된 미국 1916년 반덤핑법사건, 아르헨티나 신발 사건, 미국저작권 사건은 어느 것이나 EC제소에 관련된 것인데, 모두 이 절차를 거쳐 EC나 WTO 제소를 행한 것이다.

## 제 5 장 韓國의 對外通商法

### 1. 概 觀

한국헌법상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73조). 따라서 대통령은 대외통상에 관한 협상을 하고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통상관련법규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동 법규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에게 대외통상정책의 수행과 집행에 관해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다.

한국헌법은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외통상협정을 포함한 조약을 국내법질서 속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집행력이 있는 행정협정과 달리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과 같이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요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조약들은 자기집행력이 없으므로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WTO에의 가입을 전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WTO 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국내법을 정비한 바 있다.

대외통상에 관련된 국내법에는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수출검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수출보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이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세계 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대외무역법, 관세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1. 世界貿易機構協定履行에 관한 特別法

1995년 1월 3일에 공포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부는 WTO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제3조 1항). 예컨대 회원국이 WTO협정이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정부는 WTO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제3조 2항은 WTO협정의 이행으로 특정품목의 국내피해가 클 경우에는 협정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의무를 행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WTO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주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국내법 규정이 WTO협정에 저촉될 경우 국내적으로는 WTO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남북한의 거래를 WTO협정상외의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한거래에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원용할 수 있긴 하나, 대외적으로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남한과 북한과의

거래에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최혜국대우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제3국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sup>1)</sup>

이 밖에도 동 법은 농림수산물의 수입금지 또는 국제가격하락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제6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입제한 조치(제8조, 제9조), 국내지원정책의 시행(제11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사업의 실시(제13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WTO협정의 관련규정과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 규정되지 않는 WTO협정의 기타 분야들에 대해서는 관련국내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제의무위반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2. 對外貿易法

### (1) 연혁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의 경우 무역 또는 통상은 국내산업의 성장과 외화획득 및 국민생활의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은 1957년에 최초로 국제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동 법은 1967년 1월 무역거래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1967년 무역거래법은 수출입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수출규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무역거래법은 그 후 세 차례의 개정에도

---

1) 남북한거래에 따른 국제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 박노형, “남북한 직교역과 GATT법”, 「국회법학회논총」(제38권 1호, 1993. 6), pp. 109~122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울곡출판사, 1994), pp. 430~461 ; 제성호, “통상법에 비추어 본 남북경제교류”, 「국제거래법연구」(제3집, 1994) ; 경제기획원, 「남북거래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 검토」(1993. 4).

불구하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으로 기존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1987년에 무역거래법이 폐지되고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1986년 12월 제정)이 시행되었다. 동 대외무역법은 그간 국내외의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1994년 12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정되었는데, 1994년 12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WTO 체제 출범에 대한 대비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무역규제의 강화 등 최근의 국제무역질서를 적극 반영하였다. 2000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대외무역법은 199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일곱 차례 개정한 것이다.<sup>2)</sup>

## (2) 주요 특징과 내용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 대외무역법은 8개장 총 6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성과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대외무역법은 복잡다양하고 유동적인 국제무역활동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한 무역에 관한 모든 활동에 동 법이 적용된다.

둘째, 국제성이 반영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제3조 1항에서 무역에 관련

---

2) 1996년 12월 30일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와 무역자유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승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무역에 관련된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무역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위임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하고 매우 유동적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규제행정부으로서의 대외무역법은 무역정책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률위임에 따른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고시, 공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된다.

넷째,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에 모두 신고제로 하고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섯째, 수출입승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다만 국제법상의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13조, 제14조).

여섯째,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출입제도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산업자원부장관은 교역상대국이 ① 국제법에서 정한 한국의 권익을 부인할 경우, ② 한국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③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5조).

일곱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21조). 국가 안보상의 통상규제는 GATT 및 WTO 협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sup>3)</sup>

여덟째, 무역업체간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무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제39조).

이 밖에도 대외무역법은 통상진흥지원,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전자무역의 촉진과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전자교환문서체제 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 원산지표시 및 판정,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關稅法

#### (1) 연혁

관세법은 관세부과의 기본법으로서 1949년에 제정되어 1967년 전면 개정된 이후 2000년 12월까지 모두 2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수출입허가와 수출입제한 등 국제무역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관세법은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에는 별표인 관세율표가 부속되어 있으며, 관세법의 시행법규로서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

3)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崔昇煥, 國際經濟法 제13장 제4절 참조.

이 있다.

## (2) 주요 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 관세법은 전문 12개장 총 24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관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관세법상의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따라 부과되나, 예외적으로 행정부는 탄력관세와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의 과세기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제7조, 제9조). 탄력관세(flexible tariff)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관세제도이다. 또한 관세법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관세협상에 따라 행정부가 양허하는 관세를 국제협력관세라 한다.<sup>4)</sup>

둘째,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제10조~제16조).<sup>5)</sup>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4) 다만 국제협력관세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제43조의 8).

5) 여기서 편익관세는 조약비당사국에 대해 조약국에 부여하는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관세, 물가평형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조절활동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세,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현격한 가격차이가 있는 물품에 대해 국내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할당관세는 일정수량을 초과한 수입물품에

에 대하여 i)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 관세 또는 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ii)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내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1조). 또한 관세법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정관세제도를 1984년부터 도입하였다.

셋째, 국제관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하여 관세를 양허·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43조의 8).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수정·철회 및 기타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서 대항조치를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관세 이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3조의 10). 또한 관세법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GSP)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43조의 17).

넷째, 이 밖에도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의 감면과 환급 및 징수유예, 심사와 심판, 국제관세협력, 운송기관, 보세구역, 통관절차, 세관 공무원의 직권, 벌칙, 조사와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대해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 참 고 문 헌

## I. 著 書

- 崔昇煥, 國際經濟法 2판, 法英社, 2001. 3. 967 p  
徐憲濟, 國際經濟法, 을곡출판사, 1998. 9.  
松下滿雄, 國際經濟法 3판, 有斐閣, 2001. 11. 418 p.  
櫻井雅夫, 國際經濟法 - 國際投資, 新版, 成文堂, 1997. 11. 646 p.  
波光巖, 國際經濟法入門, 게이소 書房, 2001. 2. 271 p.  
Herdegen, Matthias 저, 國際經濟法, 中央大 出版部, 1999. 9. 315 p.

다음은 「通商法律」 法務部 발간 창간호부터 2000. 12 (통권 36호)까지  
중 참고할 필요가 있는 논문을 든다.

## II. 論 文

### 1. 일 반

- 金性準, GATT 條文協定(上), 95. 2.(創刊號).  
\_\_\_\_\_, GATT 條文協定(中), 95. 4.(제2호).  
朴魯馨, WTO體制的 紛爭解決制度 : 패널절차, 95. 4.(제2호).  
安德根, WTO體制的 紛爭解決制度 : 履行, 2000. 8.(34), 62면.  
具本敏, 中國對外經濟關係法の의 構造, 95. 4.(제2호).

崔洛均, WTO體制的 産業被害救濟制度, 95. 8.(제4호)

## 2. 세이프가드 措置

申有均, WTO세이프가드協約에 대한 分析, 97. 4.(제14호).

申有均, 主要國 세이프가드制度에 대한 考察, 97. 10.(제17호).

趙泳俊, 韓國의 輸入混合粉乳 세이프가드 措置에 關한 패널 및 上訴機構 報告書 檢討, 2000. 2(31), 121면.

趙福衍, 유제품 세이프가드조치에 關한 WTO 분쟁사례 고찰, 2000. 6.(33), 166면.

趙福衍, 긴급수입제한제도에 關한 고찰(上), 2000. 8.(34), 105면.

趙福衍, 緊急輸入制限制度運用에 關한 考察(下), 2000. 10.(35), 99면.

## 3. 반덤핑

趙大衍, 우루과이라운드履行法을 통해 본 美國과 유럽聯合의 反덤핑法 改正方向, 95. 2.(創刊號).

金斗植, 多者間造船協定上의 被害價格 課徵金制度(上) - UR 反덤핑協定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95. 4.(제2호).

金斗植, 多者間造船協定上의 被害價格 課徵金制度(下) - GATT 反덤핑協定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95. 6.(제3호).

金成俊, 美國-스웨덴產 스테인레스鋼板 輸入에 대한 反덤핑關稅, 95. 10.(제5호).

張勝和, 反덤핑措置와 競爭政策, 96. 2.(제7호).

- 蔡旭 反덤핑制度的 經濟學的 考察 - 競爭政策的 觀點을 中心으로 -, 96. 8.(제10호).
- Edwin Vermulst(朴魯馨 譯), 아시아에 대한 EC의 反덤핑 政策 - 누구에 대한 가시인가?, 96. 8.( 10호).
- 諸康鎬, UR體制下的 美國 反덤핑法上的 産業被害制度 - 우루과이라운드 協定 履行法에 의한 修正, 97. 4.(제14호).
- 李斗炯, 韓國産 칼라TV관련 美·日 反덤핑紛爭 事例研究 - 美國의 反덤핑法과 그 適用에 대한 WTO 提訴可能性 檢討 -, 97. 6.(제15호).
- 洪性禾·鄭永珍, WTO體制下에서 EU의 改正反덤핑法(上), 97. 6.(제15호).
- 洪性禾·鄭永珍, WTO體制下에서 EU의 改正反덤핑法(下), 97. 8.(제16호).
- 李鍵炯, 日本·獨逸·네덜란드 및 中國産 男性用 전기면도기 덤핑률 決定 內容 檢討, 97. 8.(제16호).
- 蔡炯福,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98. 2.(제19호).
- 李春三, 美國 反덤핑法上로 國內産業被害의 範圍와 基準에 관한 解釋論 (上), 98. 10.(제23호).
- 李春三, 美國 反덤핑法上로 國內産業被害의 範圍와 基準에 관한 解釋論 (下), 98. 12.(제24호).
- 金炯辰, 우리 덤핑防止措置의 再審査, 98. 10.(제23호).
- 金京鍾·尹承俊, 反덤핑 Case에서 産業被害指標와 貿易委員會 判定結果와의 關係, 1999. 10.(29), 32면.
- 蔡炯福, EU 反덤핑規範의 法的 性格, 2000. 2.(31), 22면.
- 南光, 브라질-필리핀産 코코넛粉末 輸入에 대한 相計關稅賦 事件, 97. 2.(제13호).

#### 4. 相計關稅 · 補助金

- 金圭泰, 수출보조금의 '보조금 철회'의미에 대한 고찰, 2000. 6.(33), 7면.
- 李仁圭, 美國의 相計關稅法上 補助金의 概念 및 特定性, 96. 2.(제7호).
- 高俊誠, EEC-오일시드 加工業者 및 生産者에게 支給된 交付金 및 補助金 事件 패널報告書에 관한 後續審査, 95. 12.(제6호).
- 李成德, WTO協定上의 補助金 規制 - 農業協定과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の 比較, 96. 8.(제10호).
- 蔡炯福, EU 通商法上의 補助金의 概念, 98. 12.(제24호).

#### 5. 美 通商法 301조

- 徐憲濟, 아직도 301條인가 - WTO 體制의 出帆과 一方的措置로서의 美國 1974년 通商法 301條, 95. 2.(創刊號).
- 張勝和, 美國通商法 第301條와 WTO 紛爭解決節次, 95. 8.(제4호).
- 金圭泰, UR履行法을 통하여 본 美通商法 301條, 95. 12.(제6호).
- 張勝和 · 鄭永珍, 1995 美國-日本 자동차분쟁 연구사례 - 通商法 301條에 의한 報復措置 威脅의 WTO 適合性, 96. 12.(제12호).
- 朴魯馨, 美國의 1974년 貿易法 301條의 分析과 發動狀況, 97. 12.(제18호).
- 沈錫兌, WTO 紛爭解決制度下에서의 美國 通商法 301條 研究(上), 1999. 4.(26), 58면.
- 沈錫兌, WTO 紛爭解決制度下에서의 美國 通商法 301條 研究(下), 1999. 6.(27), 73면
- 金圭泰, 美通商法 301條의 DSU 規定과의 合致性에 관한 考察, 2000. 10. (35).



## 通商關聯法 國際比較研究

발행일 : 2002년 7월 4일

### 韓國農業法學會

---

會長 : 黃迪仁 (대한민국 학술회 회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실 전화 : (02) 880-7562

H·P : 017-288-4800

Fax : (02) 871-7408(교수실)

(02) 887-6602(연구실)

E-mail : sihuang@snu.ac.kr

學會幹事 : 金炳文 辯護士(김병문법률사무소)

전화 : (02) 533-7744

H·P : 011-330-1117

Fax : (02) 591-1117

---

<비매품>